

충청북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방안 연구



연 구 진

최인수(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김필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양은경(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객원연구원)

연구 요약

1. 연구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도시화 및 농촌 과소화 등의 도시집중현상과 산업구조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역공동체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가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으로써 자리매김함에 따라 지역공동체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음
- 전국적으로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지역공동체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행정에서는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자립·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충북 지역공동체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충북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확산을 위한 기반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함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충북의 지역적 특성과 가치를 반영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추진방안을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이에 충북의 특성과 주변여건에 대한 이해와 진단을 통해 지역특성 및 환경변화를 반영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또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요인 분석을 통해 요인별 로드맵을 제시하고 체계화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제언

□ 지역공동체 개념 및 필요성

- 지역공동체는 생활기반이 되는 지역 혹은 마을이라는 물리적 공간의 범주에서 구성원들이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신뢰, 호혜성, 친밀성을 가지고 유대감과 소속감을 공유하면서 주민 스스로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최소 단위의 지역사회집단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한 지역공동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지역공동체는 ① 사람과 공동체 가치를 복원하고 ② 지역사회 활력제공, ③ 지역사회 문제해결 주체, ④ 지역공동체 주도의 내발적 발전, ⑤ 지역공동체를 통한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 ⑥ 주민자치 실현, ⑦ 주민수요에 기반한 지역경제 발전 등에 기여하고 있음

□ 지역공동체 정책 동향 시사점

- 지역공동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① 지역공동체의 역량과 이해를 고려한 장기적 관점과, ② 지역공동체의 공동체성과 공익성, 사업성, 지역성을 기준으로 지역공동체의 성장단계에 맞는 지원, ③ 농촌과 도시공동체의 차별성, 자조조직과 행정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공동체 등 공동체 형성요건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방향 설정, ④ 관에서 민을 지원하는 일방적인 방식이 아닌 지역공동체에 의한 마을의제 발굴 및 사업추진 지향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임

□ 지역공동체 관련 제도분석

- 지역공동체 사업추진의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역공동체 지원조례는 전국 평균 64%의 제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충북 기초자치단체 지원조례의 제정율은 45%로 낮은 수준을 나타냄
- 전담부서는 지역공동체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지역공동체 행정체계를 확립하여 지역공동체 사업을 통합하고 총괄·지원할 수 있으며, 광역 자치단체에서는 전담부서를 9개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고 있음

- 지역공동체 중간지원조직은 지역공동체 사업을 수행하는 일반주민에게 접근방법이나 추진방법, 사업 수행 중 전문적인 안내자 혹은 중간 매개자 역할을 하며, 네트워크 형성지원, 필요자원 코디네이터, 주민역량강화 등 지역공동체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수행하고 있음

□ 충북도 지역공동체 현황

- 충북은 3개 시와 8개 군, 4개의 일반구로 이루어진 국토의 중심지로서 고령화·저출산 위기로 핵심생산가능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권역간·지역간 격차문제의 심화, 높은 도시 쇠퇴율 등을 보이고 있음
 - 반면 대도시권과 근접하고 청정한 환경 등으로 이주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해결방안 모색 필요
- 충북 지역공동체의 수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자생적 지역공동체에 비해 중앙부처 지원을 받는 지역공동체 수의 비율이 월등히 높음
 - 또한 충북 지역공동체는 농촌관련 사업과 생활밀착형 사업 등을 선호하고 있어,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 주민과 공동체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업을 발굴·확산할 필요가 있음
- 충북은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2016년에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행정국에 민간협력공동체과를 신설하여 공동체정책팀, 민간협력팀, 경제공동체팀, 자원봉사팀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 타 시도 지원제도 및 지원체계 분석을 통한 시사점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의 기본구성요소는 ① 지역공동체 관련 조례 제정, ② 광역집행기관으로써 전담부서 신설 및 역할 제고, ③ 기초집행기관으로서 자치 시·군·구 관계부서(전담부서), ④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 ⑤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 ⑥ 민·관 협치기구 등임

- 충북은 지역간 편차가 매우 크며, 지역공동체의 특성 및 형성정도도 매우 상이한 특성을 고려할 때 단계별 맞춤형 지원방식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며, 주민주도 활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프로그램과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지원 등이 요구됨

□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

- 충북의 지역적 특성과 지역공동체 여건을 반영한 충북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공동체 생태계 기반을 조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① 법·제도적 기반마련, ② 지원체계의 체계화, ③ 협력적 거버넌스, ④ 자치역량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지역공동체 지원사업을 접근해야 할 것임
 - (법·제도적 기반마련 : 조례 제·개정) 충북 지역공동체 사업 추진의 행·재정적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하며,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하며,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조례를 보완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할 것임
 - (지원체계의 체계화 : 충북 지역공동체 지원체계 구축) 충북 지역공동체 지원체계는 지역공동체가 주민주도적 지역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하게 유지·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① 협력적 네트워크, ② 주민참여 여건 조성, ③ 사업 전과정 상담·컨설팅 및 교육·학습 지원, ④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⑤ 차별화된 공모방식 등을 추진방향으로 함
 - (협력적 거버넌스 : 중간지원조직 설립 및 역할제고) 충북 중간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전략은 ① 주민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주민주도 촉진, ② 거버넌스 체계 확립, ③ 지역 맞춤형 전문성 제고를 주요 전략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민간 주도형태(위탁방식)의 조직이 바람직할 것임

- (자치역량 강화 : 주민참여 및 역량강화) 충북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및 역량강화 방안은 ① 주민인식개선 및 주민참여 극대화, ② 다양한 기관과의 연대를 통해 교육과 학습의 전문성 도모, ③ 모든 지원사업 전 과정에 교육과 학습프로그램 연계, ④ 일방적인 교육 프로그램 탈피하여 지역공동체를 통한 주민주도적 학습공동체 형성 등을 기본원칙으로 함

□ 정책제언

- 충북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은 지역공동체가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자립·발전하여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내실있는 정책추진이 시급함
- 이에 지역공동체 활동의 근거가 되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며, 지역공동체의 교육지원 등을 통해 학습공동체로의 발전을 통해 지역공동체에 의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충북도내 지역공동체 전담부서 공무원 등의 이해관계자들의 인식개선과 교육지원을 통해 주민주도적 지역공동체 형성 및 발전을 위한 내실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단기적 성과에서 장기적 관점으로 전환하여 행정과 지역공동체, 지역사회, 전문가, 중간지원센터 등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소통, 상생을 바탕으로 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수준과 역량에 따른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차 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8
제2장 지역공동체 이론적 논의 및 정책 동향	9
제1절 지역공동체 개념 및 필요성	11
1. 지역공동체의 개념	11
2. 지역공동체의 배경 및 필요성	16
제2절 지역공동체 정책동향	19
1. 지역공동체 정책흐름과 배경	19
2. 지역공동체 정책 추진원칙	21
제3절 지역공동체 제도분석	26
1. 지역공동체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	26
2. 지역공동체 전담부서	42
3. 지역공동체 중간지원조직	45



제3장 충북 현황 및 지역공동체관련 사업 분석 … 69

- 제1절 충북 현황 …………… 71
 - 1. 충북 현황 및 여건 …………… 71
 - 2. 충북 지역공동체 현황 …………… 75
 - 3. 충북 지역공동체관련 제도 …………… 80
- 제2절 지방자치단체 지역공동체관련 제도 및
지원체계 분석 …………… 92
 - 1. 서울시 지역공동체관련 제도 및
지원체계 분석 …………… 92
 - 2. 경기도 지역공동체관련 제도 및
지원체계 분석 …………… 104
 - 3. 전라남도 지역공동체관련 제도 및
지원체계 분석 …………… 112
- 제3절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전략도출 …… 123
 - 1. 충북 여건 및 지역공동체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 123
 - 2. 지역공동체관련 제도 및
지원체계 시사점 …………… 126





제4장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방안	131
제1절 기본방향	133
제2절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방안	136
1. 법·제도적 기반마련 : 조례 제·개정	136
2. 지원체계의 체계화 :	
충북 지역공동체 지원체계 구축	144
3. 협력적 거버넌스 :	
중간지원조직 설립 및 역할제고	151
4. 자치역량강화 : 주민참여 및 역량강화	158
제5장 결 론	163
【참고문헌】	173
【부 록】	176

표 차례

<표 2-1> 지역공동체의 개념 정의	13
<표 2-2> 충청북도 마을공동체관련 조례의 마을공동체 정의	14
<표 2-3> 자치법규 상 지역공동체 혹은 마을공동체 정의	15
<표 2-4> 지방자치단체 지역공동체 관련 조례현황	27
<표 2-5> 지방자치단체 지역공동체 관련 조례 구성현황	30
<표 2-6> 지방자치단체 지역공동체 관련 조례 구성- 기본계획	31
<표 2-7> 지방자치단체 지역공동체 관련 조례 구성- 전담부서	32
<표 2-8> 지방자치단체 지역공동체 관련 조례 구성- 주민협의회	33
<표 2-9> 지방자치단체 지역공동체 관련 조례 구성- 마을발전계획 수립·운영	34
<표 2-10> 지방자치단체 지역공동체 관련 조례 구성- 지원신청 등	34
<표 2-11> 지방자치단체 지역공동체 관련 조례 구성- 사업선정 심의회	35
<표 2-12> 지방자치단체 지역공동체 관련 조례 구성- 평가 및 포상	36
<표 2-13> 지방자치단체 지역공동체 관련 조례 구성- 지역공동체 위원회 심의·자문 사항	36
<표 2-14> 지방자치단체 지역공동체 관련 조례 구성- 지역공동체 위원회 구성	37
<표 2-15> 지방자치단체 지역공동체 관련 조례 구성- 지원센터의 기능	38





<표 2-16> 광역자치단체 지역공동체관련 조례상 사업 및 지원에 대한 규정현황	40
<표 2-17> 광역자치단체 지역공동체 전담부서 현황 ..	43
<표 2-18> 광역자치단체 지역공동체 담당부서 및 업무 현황	43
<표 2-19> 중간지원조직과 행정기관의 비교	47
<표 2-20> 중간지원조직 기능 및 역할	49
<표 2-21> 국내 중간지원센터 현황	51
<표 2-22> 지역공동체관련 중간지원조직 광역지자체별 현황	55
<표 2-23> 서울시 중간지원센터 현황	60
<표 2-24> 경기도 파북공동체 지원센터 사업추진방향 세부내용	64
<표 2-25> 경기도 파북공동체 지원사업 현황	66
<표 2-26> 전라남도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사업 추진방침	68
<표 3-1> 충북 행정구역별 세대 및 인구추이	73
<표 3-2> 충북 도시쇠퇴현황	75
<표 3-3> 충북 시·군별 지역공동체 사업 추진현황 ..	77
<표 3-4> 충북 협동조합 현황	79
<표 3-5> 충북 행정국 민간협력공동체과 업무내용 ..	81
<표 3-6> 충북 시·군 지역공동체 관련 전담부서 현황	82
<표 3-7> 충북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구성요소	84
<표 3-8>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 총칙 내용	85
<표 3-9>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내용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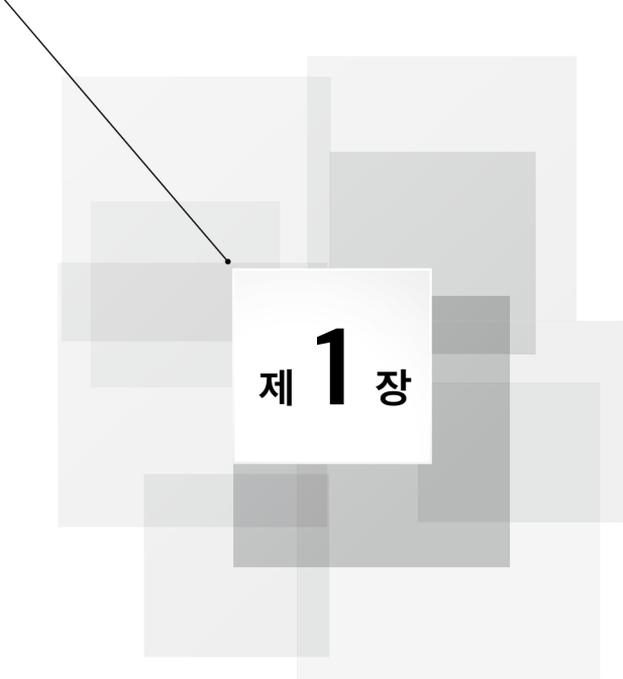
<표 3-31>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추진절차	120
<표 3-32> 전라남도 지역공동체 사업 주체별 역할	122
<표 3-33> 충북 여건 및 지역공동체 SWOT 분석	123
<표 3-34> 충북 여건 및 지역공동체 SWOT 분석을 통한 전략	125
<표 4-1> 충북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개정(안)- 개요	137
<표 4-2> 충북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개정(안)- 기본계획	138
<표 4-3> 충북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개정(안)- 전담부서	138
<표 4-4> 충북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 주민협의회	139
<표 4-5> 충북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 마을발전계획	140
<표 4-6> 충북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 사업지원	140
<표 4-7> 충북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 지원사업 선정	141
<표 4-8> 충북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 평가 및 포상	141
<표 4-9> 충북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 모니터링단	142
<표 4-10> 충북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 구성	142
<표 4-11> 충북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 중간지원센터	143
<표 4-12> 충북 지역공동체 지원사업 공모유형	146

<표 4-13> 충북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관별 역할제고	147
<표 4-14> 충북 지역공동체관련 사업 추진절차	149
<표 4-15> 충북 지역공동체 중간지원센터 업무 분장 ..	156
<표 4-16> 충북 지역공동체 지원조례 개정(안) 중간지원센터 역할 및 기능	156
<표 4-17> 충북 지역공동체 활성화 시·군 마을넷 지원사업	157
<표 4-18> 충북 주민참여 및 역량강화 방안 : 인식개선 및 주민참여 극대화	159
<표 4-19> 충북 주민참여 및 역량강화 방안 : 교육·학습 전문화	159
<표 4-20> 충북 주민참여 및 역량강화 방안 : 전과정 교육·학습 연계지원	160
<표 4-21> 충북 주민참여 및 역량강화 방안 : 주민주도적 학습공동체 형성	161
<표 4-22> 충북 지역공동체관련 사업 절차에 따른 주민참여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161
<표 5-1> 충북 여건 및 지역공동체 SWOT 분석을 통한 전략 : <표 3-34>와 동일	168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 흐름도	7
<그림 2-1> 지역공동체의 필요성	17
<그림 2-2> 지역공동체 운동의 시대적 흐름	21
<그림 2-3> 지역공동체 정책 의사결정 기준	22
<그림 2-4> 지역공동체 정책 추진원칙	23
<그림 2-5> 지역공동체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	25
<그림 2-6> 기초자치단체 지역공동체 관련 조례 제정율	27
<그림 2-7> 중간지원조직 기능 및 역할	46
<그림 2-8> 국내 중간지원센터 현황	51
<그림 2-9>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체계도 ..	61
<그림 2-10> 경기도 따복공동체 지원센터 사업추진방향	64
<그림 2-11>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비전 및 목표	67
<그림 3-1> 충청북도 행정도	71
<그림 3-2> 지방자치단체별 지역공동체 운영 현황	76
<그림 3-3> 전국 지역공동체 사업 운영 현황	78
<그림 3-4> 충북 협동조합 업종별 현황	79
<그림 3-5> 충북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2018-2022) 비전과 목표	89
<그림 3-6> 충북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안) 단계별 추진전략	91
<그림 3-7> 서울시 지역공동체 지원기관	92
<그림 3-8> 서울시 지역공동체 사업 지원절차	99
<그림 3-9> 경기도 지역공동체 행정지원체계	104
<그림 3-10> 경기도 따복공동체 비전 및 추진전략 ..	106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KRILA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도시화 및 농촌 과소화 등의 도시집중현상과 산업구조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역공동체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가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으로써 자리매김함에 따라 지역공동체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음
 - 과소화마을은 2005년 2,048개에서 2010년 3,091개로 51% 상승(2010, 농어촌의 과소화마을 실태와 정책과제)
- 또한 지역주민의 주민자치의식이 향상되고 지역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가주도 개발정책에 대한 성찰에서 비롯된 지역공동체관련 사업은 더 이상 단순한 지역재생의 차원을 넘어 지역현안문제를 해결하는 동력이 되고 있음
 - 지역공동체는 지역사회를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면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전국적으로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지역공동체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행정에서는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자립·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 조사에 따르면 마을공동체 사업수는 2015년 기준 전국 약 5,885개로 사업수 및 규모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충북은 타 시도에 비해 사업이 미흡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¹⁾

1)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따르면 2017년 현재 국가지원 공동체 3,540개, 지자체 지원 공동체 8,148개임

- 증가하고 있는 지역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사업에 대응하여 보다 내실있고 지속가능한 충북내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음
- 충북도는 지역공동체 사업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충북도 및 공공기관, 도민 등은 지역공동체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이 부족한 실정이며, 지역공동체 사업도 중앙정부의 지역공동체 공모사업 이외에는 그다지 보이지 않는 실정임
-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는 단순히 정책당국의 이해나 의지로만 성과가 달성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행·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전략이 요구
- 또한 충북은 지역여건 및 발전에 불균형이 심화되고,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지역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역공동체 추진방안이 필요한 시점임
- 이에 충북 지역공동체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충북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확산을 위한 기반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함
- 충북은 지역공동체 사업추진을 위해 조례제정을 비롯하여, 기본계획 수립, 주민제안공모사업 등 본격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 및 추진체계의 확보가 필요함
- 또한 지역공동체 사업의 방향성을 설정하여, 지역주민이 배제된 관주도의 정책이 아닌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바탕으로 충북도내 지역공동체가 정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함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에서는 충청북도 지역공동체 현황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충북 11개 시·군의 지역적 특성과 가치를 반영한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추진방안을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음

- 충북의 특성 및 주변여건에 대한 이해와 진단을 통해 지역특성 및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전문성을 확보하여, 차별화된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지역공동체 활성화 요인을 정리하고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체계화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대상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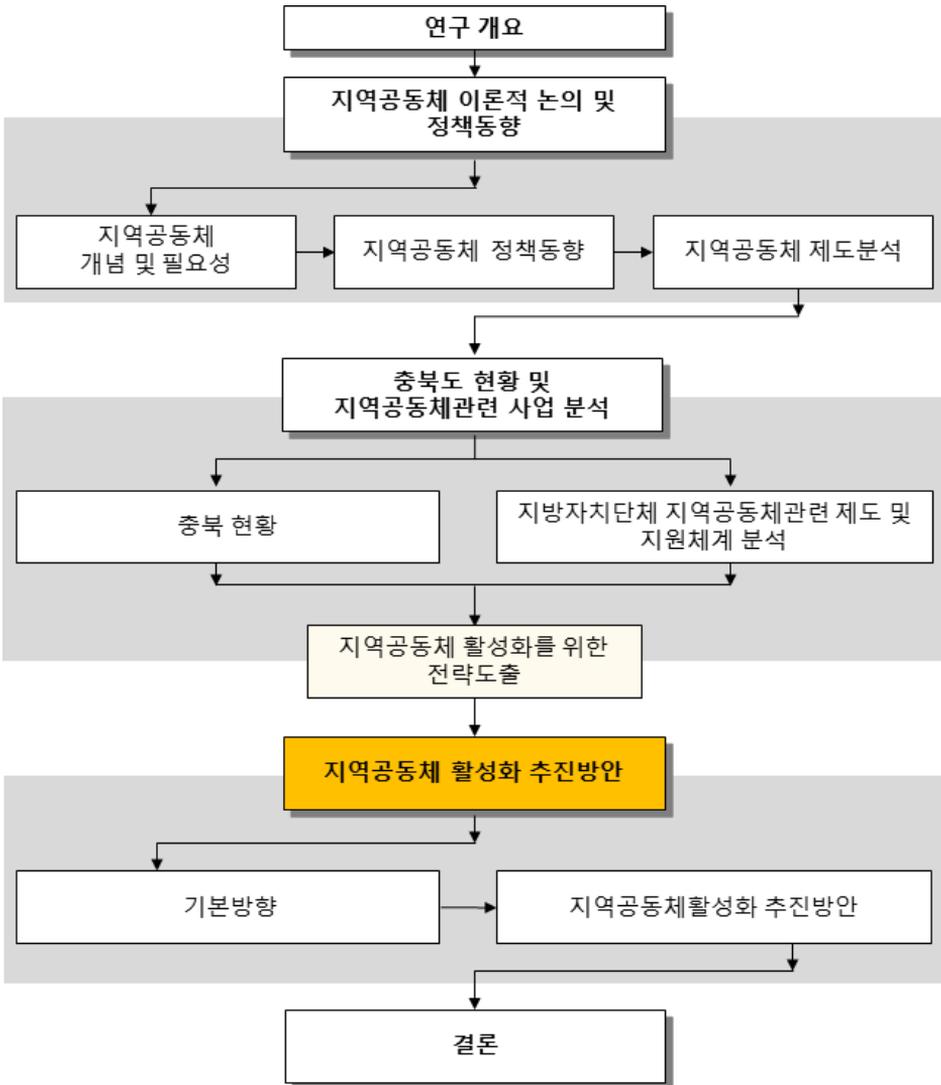
- 충청북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분석대상 범위는 국내 지역공동체관련 제도를 바탕으로 충청북도를 주요 대상으로 함

시간적 범위

- 충청북도 지역공동체 및 관련 제도의 현황분석을 위한 기준시점은 2018년(단기계획)으로 설정하며, 지역공동체 추진방안 적용을 위한 목표연도는 2018년 이후(중·장기 계획)로 탄력적 적용을 검토함

내용적 범위

- (지역공동체 이론적 논의 및 제도분석) 지역공동체의 개념을 살펴보고 지역공동체 정책동향 및 추진원칙을 바탕으로 지역공동체 제도를 분석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지원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충북도내 지역공동체 추진방안을 도출
- (충북 현황 및 여건분석) 충북도의 지역적 특성 및 주변여건에 대한 이해와 진단을 통해 충북 지역공동체 현황·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전략도출
- (지역공동체관련 제도 및 지원체계 분석)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사업의 제도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현황 조사·분석을 실시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요인을 도출
-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방안) 지역공동체 현황 및 여건분석을 토대로 충북 지역공동체를 위한 정책추진 전략 및 로드맵을 제시하고,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체계화된 추진방안 제시



<그림 1-1> 연구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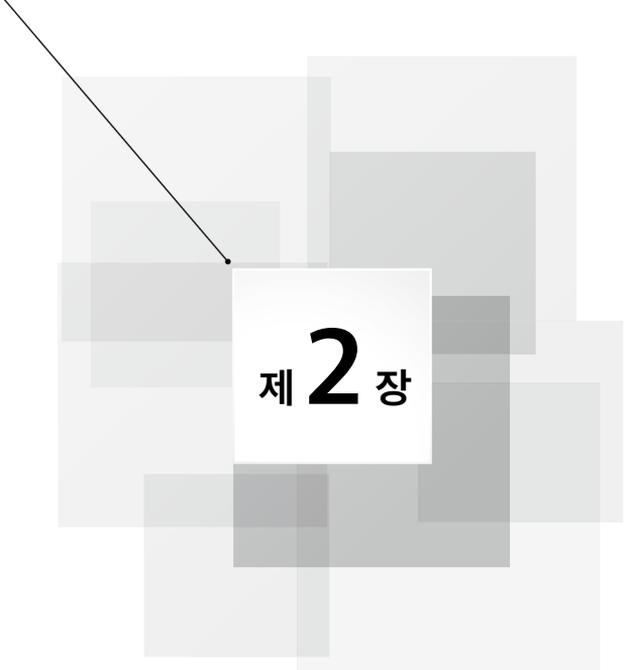
2. 연구의 방법

문헌연구 및 정책자료 조사·분석

- 정책 및 제도관련 국내외 학술논문, 보고서 등 선행연구 분석
- 관련 법과 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지원체계, 관련 계획 등 직접적인 정책자료에 대한 리뷰 및 분석
- 지역공동체 관련 추진사례 및 지원체계 관련 기타 정책자료 및 사례분석 등을 위한 보도자료 및 관련 퍼블리케이션, 멀티미디어 자료 등에 관한 미디어 서베이(media survey) 수행

사례연구 및 면담조사

- 문헌연구 및 정책자료 조사·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국내외 벤치마킹 사례들의 심층적 분석 및 충북와의 비교분석 수행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지역공동체 관련 담당공무원, 활동가 및 주민 등 시민사회, 기타 중앙 및 지역 이해당사자 등 대면인터뷰 및 설문조사(필요시 실시)



제 2 장

지역공동체 이론적 논의 및 정책 동향

제1절 지역공동체 개념 및 필요성

제2절 지역공동체 정책동향

제3절 지역공동체 제도분석

KRILA

제 2 장

지역공동체 이론적 논의 및 정책 동향

제1절 지역공동체 개념 및 필요성

1. 지역공동체의 개념

- 공동체(community, 共同體)는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에서 꼭 필요한 관계집단으로 일반적으로 공통의 생활공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상호작용을 하며, 유대감을 갖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음
 - 문학비평용어사전에서는 공동체를 단순한 결속보다는 더 질적으로 강하고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조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공동체는 상호의무감, 정서적 유대, 공동의 이해관계와 공유된 이해력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관계망으로 정의하고 있음(문학비평용어사전)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 공동체는 특정한 사회적 공간에서 공통의 가치와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으로, 일반적으로 공통의 생활공간에서 상호작용하며, 유대감을 공유하는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음(한국민족문화대백과)
- 그러한 공동체의 근원은 촌락이나 두레, 계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그 구성원들이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심리적 유대감이나 공동의식을 가진 일정한 지역(지리적 영역)을 공유하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지역과 공동체를 결합하여 사용하였음(최인수, 2015)
 - 즉 공동체는 지역성(locality)과 사회적 상호작용(interaction), 공동의 유대(common bonds)를 바탕으로 신뢰 및 호혜성, 친밀성 등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함
 - 지역사회라는 생활의 장에서 시민으로서 자주성과 주체성, 책임감을 갖는 주민에 의해 귀속의식과 공통의 목표, 역할의식을 갖고 공통의 행동을 하도록 하는 생활태도에서 나오는 것임(마쓰하라 지로, 松原治郎, 1978)

- 공동체는 지리적 제한을 넘어 다양한 상호작용과 공동의 연대를 모색하는 다양한 공간에서의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공간적인 범위를 초월해 발전하는 지역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고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산업화 및 교통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의 경제활동이 주거지역에 국한되지 않으며, 생활공간이 지리적 영역과 관계없이 광범위해지고 있음
 - 지리적 근접성에 대한 중요성이 약화되면서 지역적 특성보다는 개인적 친밀감, 사회적 응집력, 정신적 관여, 감정적 깊이 등이 지역공동체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음(정남수 외, 2010)
 - 또한 정보통신의 발달과 미디어의 증가 등으로 온라인 혹은 사이버라는 가상공간에서의 상호작용 증가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적 집단이 증가하고 있음
- 지역공동체는 1990년대 중반 마을만들기에서 비롯되었으며, 일본의 마찌즈 구리에서 유래되어 마을공동체 혹은 지역공동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
 - 마을만들기는 마을의 의미를 공동체로 인식하고, 마을 환경의 물리적 개선 뿐만 아니라, 마을이 공동체를 이루고 만들어가는 소프트웨어적 의미까지 포괄하여,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간다는 적극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최인수, 2015)
 -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작으로 지역공동체에 의한 마을 활성화, 지역재생, 지역발전, 농촌지역의 재창조 작업 등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 일부에서는 주민이 없는 하향식 물리적개선이라는 비판이 있었으나, 시행착오와 다양한 고찰을 통해 현재에는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공동체 지원부서가 등장하였으며, 하나의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선행연구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개념을 살펴보면 학자에 따라 다소 다르게 정의하고 있지만 지역성을 기반으로 유대관계를 가지며, 공통의 가치와 목표를 강조하고 있음

<표 2-1> 지역공동체의 개념 정의

구분	내용
서울시 (2012)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과 활동을 공유하고 공통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지역
지남석 외 (2016)	일정 장소 또는 지역에 대한 애착과 소속감을 기반으로 하고 공동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집단
마쓰하라 지로 (1978)	지역사회라는 생활의 장에서 시민으로서 자주성과 주체성, 책임감을 갖는 주민에 의해 공통의 지역에서 귀속의식과 공통의 목표, 역할의식을 갖고 공통의 행동을 하도록 하는 생활태도
박병춘 (2012)	지역사회학인 관점에서 지역공동체를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일정한 지역을 주요 기반으로 하며, 지역주민과 생활전반에 걸쳐 서로 긴밀하게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고 공동의 가치와 목표라는 정서인 유대감을 공유 하는 사회적 조직 단위
곽현근 (2012)	일정한 지리적 경계안에서 살면서 주민들 상호간에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장소에 대해 심리적 유대를 가진 사람들
김현호 (2013)	마을이나 동네 등 지리적으로 근접한 일정한 공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공동의 목표나 가치를 추구하는 유대감을 가진 집단

-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에서 마을공동체는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사람없이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지역사회로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고유한 문화를 형성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공동체로 정의하고 있음(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충청북도조례 제3991호, 2016.12.30., 제정)
- 충청북도 11개 시·군 중에서 지역공동체와 관련된 조례는 충북 청주시, 충주시, 음성군, 증평군, 영동군 등 5곳이며, 충청북도 조례와 동일하게 마을공동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음성군 조례의 경우 마을공동체를 마을의 발전을 위해 10명 이상의 주민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조직체로 정의하고 있음
- 증평군과 청주시, 충주시의 조례의 경우 마을공동체를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 혹은 주민주도의 단체로 정의하고 있음

<표 2-2> 충청북도 마을공동체관련 조례의 마을공동체 정의

구분	내용	비고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마을공동체”란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지역사회로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고유한 문화를 형성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공동체	충청북도조례 제3991호, 2016.12.30., 제정
청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공동 협력하여 추진하는 주민 주도의 단체	충청북도청주시조례 제750호, 2018.3.30., 제정
충주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	충청북도충주시조례 제1191호, 2013.11.29., 제정
음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마을공동체”란 마을의 발전을 위해 10명 이상의 주민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조직체	충청북도음성군조례 제2431호, 2018.3.26., 제정
증평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	충청북도증평군조례 제771호, 2017.11.3., 제정
영동군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충청북도영동군조례 제2627호, 2017.10.30., 제정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

- 서울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자체 조례에서 마을공동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로 정의하고 있음
-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조례에서의 마을공동체 정의는 대부분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는 마을단위 주민자치 공동체(혹은 집단, 조직체)를 강조하고 있음

<표 2-3> 자치법규 상 지역공동체 혹은 마을공동체 정의

구분	내용	비고
서울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자체
경기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 내 관계망을 활성화하고, 사람 중심의 사회적경제를 실현하는 공동체	경기도조례 제4860호, 2015.3.3., 전부개정
경기도 가평	“공동체”란 특정한 사회적 공간에서 공통의 가치와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	경기도가평군조례 제2617호, 2017.5.15., 전부개정
경기 파주	“마을공동체”란 마을의 발전을 위해 10명 이상의 주민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조직체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292호, 2016.9.23., 제정
전남 담양	“지역공동체”란 주민이 스스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하여 단절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공동체와 지역의 다양한 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사업 및 생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공동체들의 나눔과 연대의 공동체	전라남도담양군조례 제2313호, 2016.12.30., 전부개정
전북 완주군	“마을공동체”란 주민이 스스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하여 단절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공동체를 형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마을 단위 공동체	전라북도완주군조례 제2627호, 2018.4.12., 일부개정
전북 정읍시	“지역공동체”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조직 또는 마을 집단 개념	전라북도정읍시조례 제1527호, 2018.5.4., 일부개정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

- 따라서 지역공동체는 생활기반이 되는 지역 혹은 마을이라는 물리적 공간의 범주에서 구성원들이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신뢰, 호혜성, 친밀성을 가지고 유대감과 소속감을 공유하면서 주민 스스로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최소 단위의 지역사회집단이라고 할 수 있음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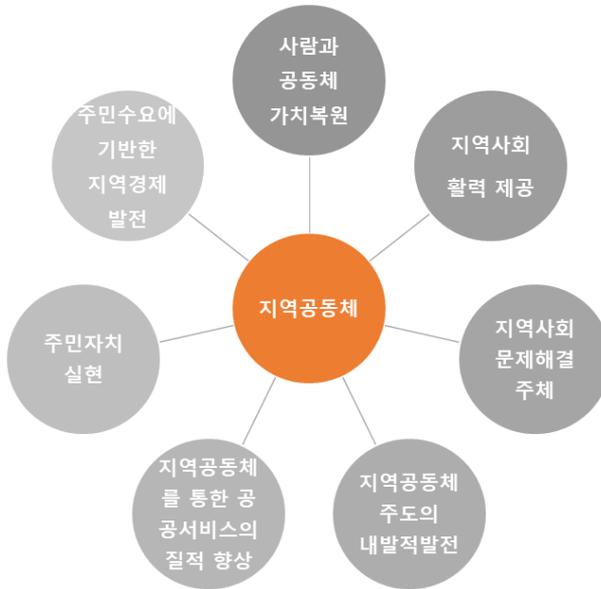
2)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연구문헌에 의하면 지역공동체는 공동체, 지역공동체, 마을공동체 등으로 혼재 사용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가급적 지역공동체로 표현함

- 공동체가 공간적인 범위를 초월하여 발전하고 있으나, 마을만들기 사업, 지역공동체 지원사업 등이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할 때 지역공동체는 물리적 공간으로 한정지을 필요가 있음
- 또한 생활환경이 비슷하고 이러한 생활환경을 중심으로 생활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이해관계가 일치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지역집단 활동의 체계가 지역공동체의 발현형태라고 할 수 있음(최인수, 2014)

2. 지역공동체의 배경 및 필요성

- 유럽의 만성적 경제부진과 고실업 사태로 인한 재정위기는 지방재정을 축소시켰으며 정부의 실패를 초래하였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작은 정부론(small government)이 등장함(전대욱, 2018)
 - 또한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의 민영화로 인해 소득 및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음
 - 그러한 시대적 배경은 제3섹터를 등장시켰으며 지역공동체의 사회혁신으로 이어져서 소지역주의(Localism)를 지향하게 되면서 유럽의 협동조합 전통에 기반하는 지역공동체이익회사(CICs) 등 국정의 주민주체가 등장함
- 일본은 1980년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면서 발생한 버블경제(Bubble economy)와 하향식 지역발전은 1990년 초반 버블경제가 붕괴한 이후 장기불황을 경험하게 됨(전대욱, 2018)
 - 또한 사회가 고령화되고 고령자의 연금생활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격차 및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면서 지방재정이 축소되었고 정부의 실패를 초래하였음
 - 그러한 위기의식은 내발적 발전론이 등장한 배경이 되었으며, 이후 비영리 활동(NPO) 및 마을공동체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일본은 지역재생과 지방창생전략을 채택하였음

- 한국의 국가주도 고도성장은 지역간·계층간 사회경제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시장실패를 야기하였으며, 이후 저성장시대에 돌입하면서 경제의 글로벌화 정책으로 변환하였으나, 지역경제는 쇠퇴하고 고령화 문제가 더해짐에 따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였음(전대욱, 2018)
- 저성장기,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른 정부의 실패는 복지국가의 모델과 지역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정책이 대두되는 배경이 되고 있음



<그림 2-1> 지역공동체의 필요성

- 이렇듯 지역공동체관련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또한 지역공동체의 필요성은 ① 사람과 공동체 가치복원과 ② 지역사회 활력제공, ③ 지역사회 문제해결 주체, ④ 지역공동체 주도의 내발적 발전, ⑤ 지역공동체를 통한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 ⑥ 주민자치 실현, ⑦ 주민수요에 기반한 지역경제 발전 등으로 설명할 수 있음

- (사람과 공동체 가치 복원)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과소화현상과 성장·개발 위주 정책으로 인한 사회간·계층간 격차는 이웃과의 단절을 초래하는 등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람과 지역공동체의 가치를 복원해야 함
- (지역사회 활력 제공) 본격적인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저출산 증가와 생산인구 감소,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지역사회는 쇠퇴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활력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 주민간의 신뢰자본을 증진시키기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필요함
- (지역사회 문제 해결주체) 사회경제적 격차가 심화되고 실업률 증가, 사회적 갈등 등 국가와 시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체로써 지역공동체가 필요함
- (지역공동체 주도의 내발적 발전) 정부주도의 하향식 외생적 발전과 달리 지역발전의 동력을 지역내부에서 찾아내는 지역공동체 주도의 내발적 발전으로 자체역량을 극대화시켜 지역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지역공동체를 통한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증대되는 근린단위 주민 자치 수요에 현장중심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역공동체를 통한 능동적인 참여를 통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민현정, 2014)
- (주민자치 실현) 주민자치 실현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는 민주주의 실천의 실질적 행위임
- (주민수요에 기반한 지역경제 발전) 주민의 공동체적 접근은 도심을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지역재생과 환경개선차원을 넘어 마을 특성화, 일자리 창출 등 주민수요에 기반한 지역경제발전의 원동력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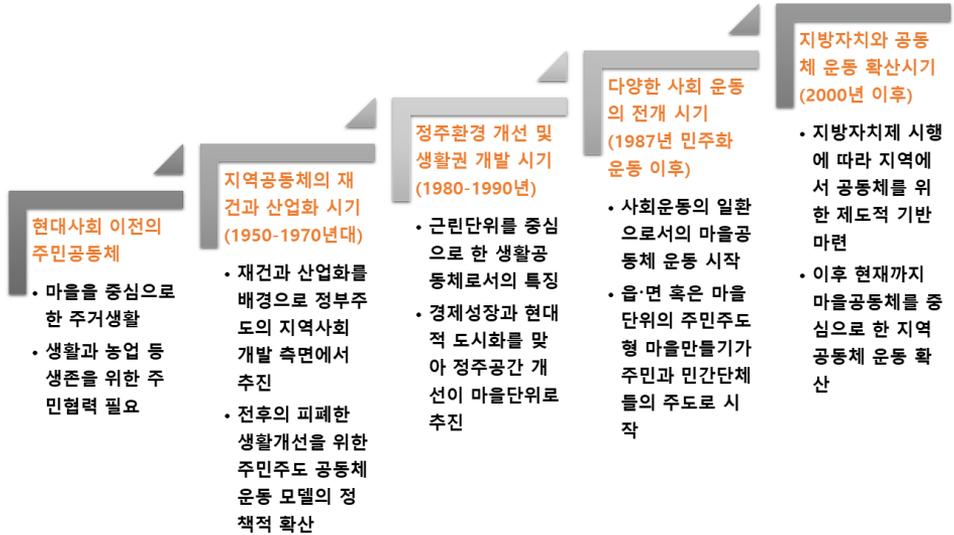
제2절 지역공동체 정책동향³⁾

1. 지역공동체 정책흐름과 배경

- 1950년 현대사회 이전의 주민공동체는 마을을 중심으로 생활과 농업 등을 위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이 자연스럽게 유지되었으며, 1950년부터 1970년대는 재건과 산업화를 배경으로 정부주도의 지역사회 개발측면에서 지역공동체가 재건되었음
 - 전쟁후의 피폐한 생활개선을 위한 주민주도 공동체 운동 모델의 정책적 확산시기라고 볼 수 있음
- 1980년대에는 근린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생활공동체로써 경제성장과 현대적 도시화를 맞아 정주환경 개선 및 생활권을 개발하기 위해 마을단위로 추진되었음
- 1987년 민주화운동과 1990년 리우회의 이후 시민단체 또는 NGO가 등장하면서 민간부문에서의 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으며, 이후 풀뿌리주민조직이 생겨나면서 주민주도적인 다양한 활동이 시작됨
 - 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요구에 대변하고 정부나 기업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평가·공론화하며 정부의 한계를 극복하고 등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함
 - 1990년대 이후 공동육아, 교육, 먹거리 등에 주민들의 직접적 참여에 관심이 증대되면서 풀뿌리주민조직으로 생성되었으며, 주민 주도적 주거환경개선운동과 주민들의 요구에 기반한 운동이 시작되는 계기가 됨
- 풀뿌리주민조직의 생성과 함께 정부에서는 일반적인 국가의 원조로부터 마을 주민들의 자발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농어촌 등을 대상으로 마을관련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정보화마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등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발전하였음

3) 전대욱(2018) 지역공동체 활성화 포럼(2018.5.17.) 발췌자료를 요약 정리함

- 각종 마을만들기 정책은 공동체 활동과 마을단위 정책을 결합하여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고 지역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음
- 마을만들기 초기 정책은 물리적 환경개선에 초점이 맞춰진 환경개선, 지역개발(발전)이 주를 이루고 각 부처별로 추진되는 부처별 칸막이현상이 두드러진 양상을 보임
- 주민의 자치의식이 향상되면서 개발위주의 정부정책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지역공동체 활동으로 인해 지역공동체에 대한 관심은 고조되었음
 - 서울시 북촌가꾸기 사업의 경우 민간에서 시작하였으나 공공정책과 결합하면서 기존 도심 개발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을 강하게 표출함
 - 지역의 내발적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역공동체가 증가하고 지역공동체에 의한 활동이 정부의 한계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면서 정부 및 지자체, 지역주민의 지역공동체에 대한 관심은 증대되었음
- 지역공동체 활동은 2000년대 이후 주민자치에 실현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확산되었으며, 근린단위 주민참여에 따른 정책적 지원도 증가하였음
 - 도시재생 및 발전을 강조했던 마을만들기 운동은 점차 지역공동체의 가치 및 주민자치실현을 지향하였음
 - 하향식 계획수립과 예산지원방식에서 탈피하고자 상향식방식과 하향식방식을 결합한 통합적 모델이 제기되고, 중앙정부·지자체·주민·지역사회의 거버넌스가 강조되었음
 - 또한 각 부처별로 단발적·분산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공동체 관련 사업은 통합연계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그림 2-2> 지역공동체 운동의 시대적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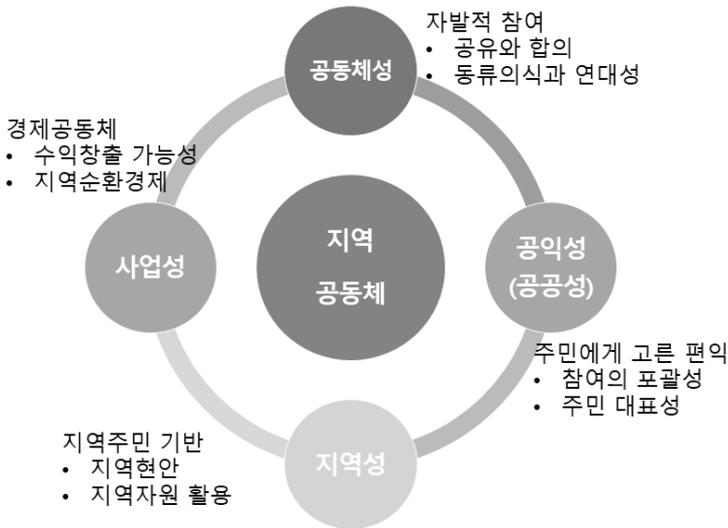
참고 : 지역공동체 활성화 포럼(2018.5.17. 전대육)

- 근래 지역공동체 관련 정책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자립 및 지속가능성을 중요한 요소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
 - 지역공동체를 위해 지역공동체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을 비롯하여 지원 시스템(중간지원조직 및 전담부서 등)을 구축하고 있음
 - 또한 흩어져있는 지역공동체 유사사업을 통합·연계하여 참여 주체간 네트워크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음
 -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한 자립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인재 양성과 역량강화 교육, 맞춤형 컨설팅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함

2. 지역공동체 정책 추진원칙

- 저성장과 장기불황, 경제위기 대응, 대의 민주주의의 극복과 제3섹터의 대두 등으로 등장한 지역공동체는 그 중요성으로 인해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운동으로의 정부정책으로 추진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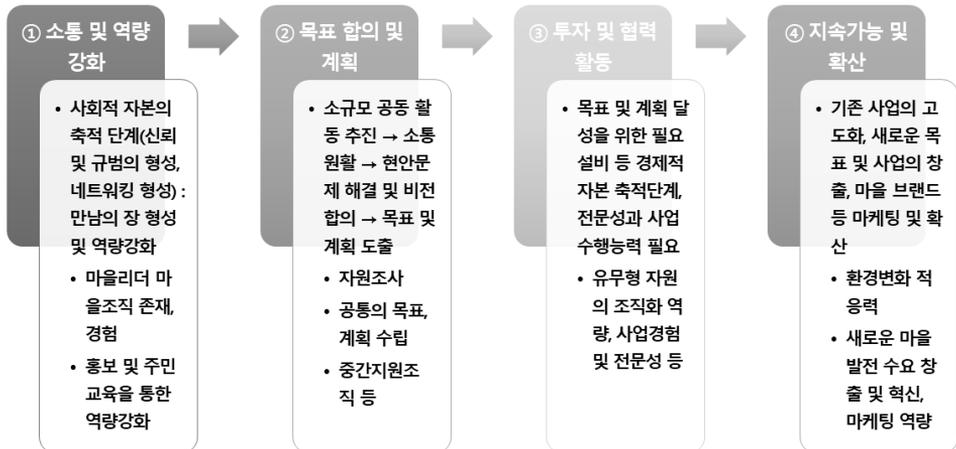
- 마을만들기 정책은 연대와 자조, 정주성과 지역성의 강화, 주민행복을 바탕으로 성과(outcome)을 지향하며 추진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예산사업으로 변질되어 산출(output)에 집착함
 - 특히 지역공동체의 역량과 이해가 고려되지 않은 단년도 투자예산 분배의 한계는 지역공동체의 장기 성과와 파급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마을만들기 혹은 지역공동체 사업이 정책의 일회성 부산물(by-output)로 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 지역공동체 사업은 초기 단계의 주민참여 및 조직화 역량형성부터 마을단위의 비전·목표 설정, 사업계획 수립, 사업에 필요한 물리적 자산의 투자까지 길게는 몇 년이 소요되는 긴 과정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그림 2-3> 지역공동체 정책 의사결정 기준

참고 : 지역공동체 활성화 포럼(2018.5.17, 전대욱)

- 지역공동체 정책 추진의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지역공동체의 공동체성과 공익성, 사업성, 지역성을 기준으로 하며 지역공동체의 성장단계에 맞는 지원이 요구됨
 - 첫째, 사회적 자본의 축적단계로서 소통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신뢰 및 규범을 형성하고 네트워크링 해야 함
 - 둘째, 목표 및 계획 도출단계로서, 소규모 공동 활동을 추진하여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현안문제 해결 및 비전 합의를 통해 목표 및 계획을 도출해야 함
 - 셋째, 투자 및 협력활동단계로서, 목표 및 계획 달성을 위한 필요설비 등 경제적 자본을 축적하고,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이 요구되는데 이는 유무형의 자원의 조직화 역량 및 사업경험, 전문성으로 설명할 수 있음
 - 넷째,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확산의 단계로서, 기존 사업의 고도화, 새로운 목표 및 사업의 창출, 마을브랜드 등 마케팅 및 확산을 통해 환경변화 적응력을 높이고 새로운 마을발전 수요를 창출, 혁신, 마케팅 역량을 제고하여 지속가능 및 확산을 도모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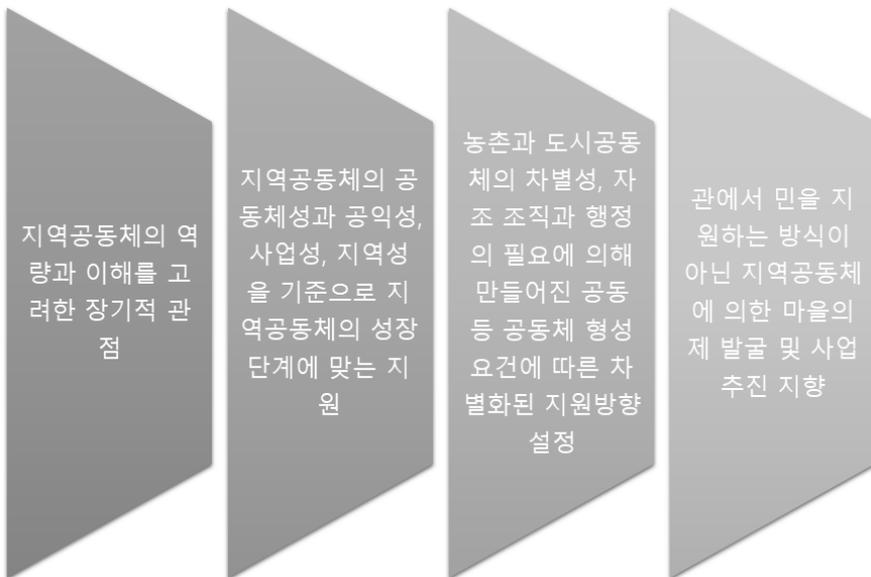
<그림 2-4> 지역공동체 정책 추진원칙

참고 : 지역공동체 활성화 포럼(2018.5.17, 전대욱)

- 지역공동체 정책의 공동체 형성 조건에 있어 농촌과 도시 공동체의 차별성, 행정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주민조직과 공동체간 관계 설정, 공동체 형성 요건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자연부락이 뚜렷한 농촌의 경제공동체와 달리 경제권생활권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이주가 잦은 도시의 생활공동체는 거주지 중심이 아닌 처한 입장이나 환경이 동일한 계층 중심의 모임임
 - 행정의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는 관변조직이라고 불리는 주민조직에 대한 관계설정 미흡으로 지역내 마찰과 경쟁관계가 형성됨
 - 공동체 모임의 형성에 집착한 정책은 3인 이상의 주민모임 혹은 5인 이상의 주민모임이라는 사업초기 쉬운 지원형성 조건들은 공동체성 형성과 지역성·공익성 강화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지역공동체 정책의 목적을 주민공동체 형성지원과 활성화라고 할 때 비교적 용이한 공동체 형성조건을 갖는 주민조직과 사적결사체, 법적·공식적 주민조직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 방향 설정을 고려해야 할 것임
 - 주민조직은 주민동호회 및 봉사모임, 친목모임 등의 임의 단체에서 시작하여 경제적 수익이나 사회적 편익을 위한 사적 결사체(ex 마을기업, 생협, 지역기반 NPO 등)로의 발전을 도모해야 함
 - 또한 법적·공식적 주민조직⁴⁾은 주민대표성이 상이하며, 지역공동체 중심조직(Anchor Community Organization)의 육성과 발전이 필요함
- 지역공동체 정책을 집행할 때 기존 지원방식은 관에서 민을 지원하는 전통적 방식으로써 공급자 중심적인 특징으로 마을의제보다 관의 사업취지가 중요하게 되고 보조금 사냥 등 도덕적 해이와 주민갈등을 촉발함
 - 일부에서는 지역공동체 발전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원액수의 차등만 존재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4) 반상회 및 이·통장(협의회), 산하 청년회, 부녀회, 노인회 등, 주민자치 위원회, 아파트 부녀회, 지역발전 협의회, 국민운동단체(새마을 지도자회, 부녀회, 바르게 살기운동본부, 한국자유총연맹).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생활안전협의회, 녹색어머니회 등

- 민간의 활동가나 전문가를 영입하며 중간지원조직에 배치함으로 마을현장에 있어야 할 활동가가 공무원이 되는 문제가 발생함
 - 정책 집행단계에서는 지원방식의 적절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며, 지역공동체의 구성부터 마을 의제 발굴과 사업추진까지 긴 정책적 고려가 요구됨
- 이에 지역공동체 정책 추진을 위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으며, 공급자 중심적 기존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공동체 단계에 따른 보조금의 차별성뿐만 아니라 공동체 발전단계에 따른 교육·컨설팅 지원, 네트워크 형성 지원, 마을계획 및 의제 발굴 지원, 학습공동체 육성 등 진정한 지역공동체 발전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발전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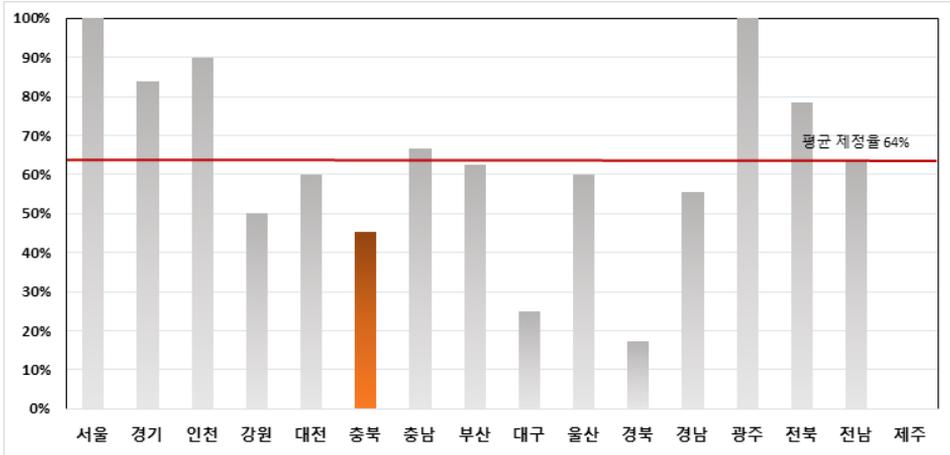


<그림 2-5> 지역공동체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

제3절 지역공동체 제도분석

1. 지역공동체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공동체 사업(활동) 추진의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우선적으로 제정하고 있으며, 2018년 7월 기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5개의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225개 기초자치단체 중 146개의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음
 - 지역공동체 관련 조례는 경북과 경남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기초자치단체(전체 228개)의 지역공동체 관련 지원조례는 64%(146개)의 제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대구와 경북, 충북을 제외하고는 50% 이상의 조례 제정율을 보이고 있음
 - 서울(25개 자치구)과 광주(5개 자치구)의 조례 제정율은 100%로 전체 자치구에서 지역공동체 관련 지원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 충북의 경우 11개 기초자치단체 중 5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율은 45%임



<그림 2-6> 기초자치단체 지역공동체 관련 조례 제정률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세종은 제외(2018년 7월 기준)

- 광역 지방자치단체 지역공동체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17개 이나, 충남과 광주는 지역공동체를 통합하는 지원조례는 존재하지 않으며 중앙부처 사업에 한정된 조례만 존재함
 - 충남은 희망마을 사업에 한정된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가 있으며, 광주는 「광주시 농촌문화마을 조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광주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등 중앙부처의 개별사업에 한정하여 조례를 시행하고 있음

<표 2-4> 지방자치단체 지역공동체 관련 조례현황

순번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1	서울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5(25) ⁵⁾	100% ⁶⁾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순번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2	경기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26(31)	84%	가평군,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평택시, 포천시, 성남시, 안양시, 안산시, 안성시, 양평군, 양주시, 여주시, 연천군, 용인시, 이천시, 파주시, 김포시, 부천시, 수원시, 의왕시, 의정부시, 하남시, 화성시
3	인천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9(10)	90%	옹진군, 부평구, 서구, 중구, 계양구,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4	강원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9(18)	50%	삼척시, 양양군, 원주시, 철원군, 강릉시, 고성군, 영월군, 인제군, 홍천군
5	대전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	3(5)	60%	대덕구, 동구, 유성구
6	충북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5(11)	45%	음성군, 증평군, 청주시, 영동군, 충주시
7	충남 ⁷⁾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10(15)	67%	공주시, 천안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예산군, 청양군, 홍성군, 보령시
8	부산	부산광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 등에 관한 조례	10(16)	63%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해운대구, 서구, 영도구
9	대구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8)	25%	동구, 북구
10	울산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3(5)	60%	동구, 북구, 울주군
11	경북	-	4(23)	17%	구미시, 울진군, 안동시, 영양군
12	경남	-	10(18)	56%	밀양시, 의령군, 거제시, 거창군, 김해시, 사천시, 산청군, 양산시, 창원시, 함안군

5) 조례가 존재하는 기초자치단체수(전체 기초자치단체수)

6) 조례가 존재하는 기초자치단체율

7) 충남은 지역공동체로 규정되는 지역공동체 통합지원 조례가 존재하지 않으나, 중앙부처의 희망마을 사업에 한정된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가 있음

순번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13	광주 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시 농촌문화마을 조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 광주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5(5)	100%	남구, 광산구, 동구, 북구, 서구
14	전북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11(14)	79%	고창군, 남원시, 무주군, 완주군, 전주시, 정읍시, 군산시, 순창군, 익산시, 장수군, 진안군
15	전남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4(22)	64%	곡성군, 광양시, 담양군, 목포시, 무안군, 보성군, 함평군, 화순군, 순천시, 완도군, 함흥군, 진도군, 강진군, 장흥군
16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	-	-
17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	0(2)	0%	-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 (2018년 7월 기준)

- 지역공동체를 육성·지원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목을 살펴보면 ① 기본계획(5년 단위) 및 시행계획(매년)의 수립과 ② 행정협의회 구성, ③ 전담부서 지정, ④ 주민협의회, ⑤ 마을단위 발전계획, ⑥ 위원회, ⑦ 중간지원센터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8) 광주의 경우 지역공동체와 관련하여 「광주시 농촌문화마을 조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광주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등 중앙부처의 개별사업에 한정하여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광주시 지역공동체를 통합하는 지원조례는 존재하지 않음

<표 2-5> 지방자치단체 지역공동체 관련 조례 구성현황

지자체	기본계획	시행계획	행정협의회	전담부서	주민협의회	마을단위발전계획	위원회	중간지원센터	기타
15	14 (93%)	15 (100%)	12 (80%)	9 (60%)	3 (20%)	3 (20%)	14 (93%)	13 (87%)	
서울	○	○	○				○	○	마을공간의 설치·운영
경기	○	○	○				○	○	
인천	○	○				○	○	○	
강원	○	○	○	○			○	○	
대전	○	○	○				○		
충북	○	○	○	○			○	○	
충남	○	○		○		○	○	○	인력지원, 역량별 사업유형 설정지원
부산	○	○	○					사무 위탁	
대구	○	○	○	○	○		○	○	
울산	○	○	○	○			○	○	
광주		○	마을 정책 플랫폼	○			○	○	
전북	○	○				○	○		
전남	○	○	○	○	○		○	○	
세종	○	○	○	○	○		○	○	
제주	○	○	○	○			○	○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 (2018년 7월 기준)

- (기본계획)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의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충북 지역공동체 지원조례의 경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① 지역공동체 정책방향, ② 종합발전계획, ③ 지원센터 설치·운영, ④ 협의회 구성·운영, ⑤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⑥ 그 밖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대부분의 다른 지자체 지역공동체 지원조례에서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부산의 경우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마을공동체 활성화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기본계획 수립 시 충북은 충청북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필요 시 전문가 자문이나 전문기관의 의뢰하도록 하고 있음

〈표 2-6〉 지방자치단체 지역공동체 관련 조례 구성-기본계획

구분	내용	충북	서울	인천	경기	전남	부산
기본계획 포함사항	지역공동체 정책방향	◎	◎	◎	◎	◎	
	종합발전계획	◎		◎			
	지원센터 설치·운영	◎	◎	◎	◎	◎	
	협의회 구성·운영	◎	◎	◎	◎	◎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	◎	◎	◎	◎	◎
	그 밖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	◎	◎	◎	◎	◎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	◎	◎	◎	◎
	마을공동체 활성화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기본계획	상임위원회에 보고	◎					

구분	내용	충북	서울	인천	경기	전남	부산
수립 시	주민의 의견 적극적 수렴		◎	◎	◎	◎	◎
	필요시 전문가 자문이나 전문기관의 의뢰			◎			◎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 (2018년 7월 기준)

- (지역공동체 전담부서) 지역공동체 전담부서 지정 및 역할은 9개 지자체에서 법적근거를 제시하고 있음
 - 전담부서의 지정 및 역할과 관련하여서는 충북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외에도 전남의 경우 전담부서의 사업 추진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표 2-7> 지방자치단체 지역공동체 관련 조례 구성-전담부서

충북	전남
제9조(마을공동체 활성화 전담부서 지정 및 역할) ① 도지사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충청북도 내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전담부서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관련 정책 수립 3. 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부서 간 협력 및 조정 4. 시·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부서와 협력 및 조정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③ 도지사는 전담부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공동체 만들기 업무 관련 전문직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 (2018년 7월 기준)

- (행정협의회와 주민협의회) 행정협의회는 15개 지자체 중 12개 지자체의 조례에서 법적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주민협의회에 대한 법적근거는 3개 지자체에서 규정하고 있음
- 충북은 행정협의회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협의회에 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음

<표 2-8> 지방자치단체 지역공동체 관련 조례 구성-주민협의회

인천	전남
<p>제8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추진협의회 구성·운영)</p> <p>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지구)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p> <p>② 협의회는 주민회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협의회장을 둔다.</p> <p>③ 협의회는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 사항은 사업마을(지구)별로 정한다.</p> <p>④ 협의회는 주민의견을 반영한 마을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한다.</p> <p>⑤ 시장은 제출한 발전계획에 대하여 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0조(마을공동체 만들기 마을별 주민협의회 구성·운영)</p> <p>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② 주민협의회는 주민회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협의회장을 둔다.</p> <p>③ 주민협의회는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 사항은 마을별로 정한다.</p> <p>④ 주민협의회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마을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한다.</p>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 (2018년 7월 기준)

- (마을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 주민에 의한 자율적인 마을단위 발전계획에 대한 법적근거는 3개 지자체(인천, 충남, 전북) 조례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충북에서는 존재하지 않음

<표 2-9> 지방자치단체 지역공동체 관련 조례 구성-마을발전계획 수립·운영

충북
제8조(마을단위 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 등) ① 마을주민은 마을만들기를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단위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발전계획 수립과 운영은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마을단위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마을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에서는 마을만들기 간사 또는 사무장을 채용 운영할 수 있다.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 (2018년 7월 기준)

- (지역공동체사업 지원 신청 등) 충북은 주민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고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도지사가 결정하고 있음
 - 반면 서울과 경기도는 시장(도시자) 또는 구청장(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시장(도시자) 또는 구청장(시장·군수)가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있음
 - 인천은 충북의 경우와 동일하게 시장 등에게 신청하고 있으나, 시장은 군수 및 구청장과 협의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전남의 경우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고 있으나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표 2-10> 지방자치단체 지역공동체 관련 조례 구성-지원신청 등

구분	내용	충북	서울	인천	경기	전남
지원 신청 등	지역공동체 사업 신청	도지사에게 신청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	시장 등에게 신청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제출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 결정	도지사	시장 또는 구청장	시장은 군수·구청장과 협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도지사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 (2018년 7월 기준)

- (지원사업 선정)서울은 지역공동체 사업을 신청한 경우 주민대표와 관련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된 “사업선정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공동체 지원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표 2-11> 지방자치단체 지역공동체 관련 조례 구성-사업선정 심의회

서울
제10조의2(지원사업 선정)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업선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선정심의회는 주민대표, 관련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세부적인 구성 및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 (2018년 7월 기준)

- (지원사업 평가 및 포상 등) 도지사(시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고, 필요시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서울과 부산 등은 평가 및 포상부분에서 필요시 시민 또는 관련단체 등을 평가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 그 외에도 전북의 경우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마을 만들기 사업 확산을 위해 사후관리가 잘되는 시·군과 마을에 인센티브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시 및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고 참가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표 2-12> 지방자치단체 지역공동체 관련 조례 구성·평가 및 포상

구분	내용	충북	서울	부산
평가 및 포상	도지사(시장)는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	◎	◎	◎
	필요시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 의뢰	◎	◎	◎
	필요시 시민 또는 관련 단체 등을 평가과정에 참여		◎	◎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포상	◎	◎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 (2018년 7월 기준)

- (지역공동체 위원회)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위원회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선정과 사업에 의해 형성된 재산을 타용도로 사용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자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2-13> 지방자치단체 지역공동체 관련 조례 구성-지역공동체 위원회 심의·자문 사항

구분	내용	충북	서울	전남
위원회 심의·자문 사항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	◎
	사업의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	
	관련 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	◎	◎	◎
	사업의 분석·평가	◎	◎	◎
	지원센터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
	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회에서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	◎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선정		◎	
사업에 의해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		◎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 (2018년 7월 기준)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당연직위원, 위촉직위원, 간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성원 수는 15명에서 25명 사이로 규정하고 있음

<표 2-14> 지방자치단체 지역공동체 관련 조례 구성-지역공동체 위원회 구성

내용	충북	서울	인천	경기	전남
구성원수	15명 이내	20명 내외	20명 이내	25명 이내	20명 이내
위원장	위원 중 호선	정무부시장 + 위촉직 위원 중 1명	행정부시장	도지사 + 위촉직 위원 중 1명	행정부지사
부위원장	마을공동체 활성화 업무담당국장	위원 중 호선	위원 중 호선	위원 중 호선	위촉직 위원 중 호선
당연직 위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업무담당과 장	혁신·주택·경제·복지·문 화·자치행정 분야 등 관련 부서 국장	업무담당국 장 및 마을공동체 관련업무 실·국장	다복공동체 업무담당 실·국장 및 다복공동체 만들기 사업 관련 실·국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부서 담당 국장
위촉직 위원	1.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마을공동 체 관련 전 문가 3. 주민대표 및 마을공동 체 활성화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1. 의회가 추천하는 의 원 2명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와 관련된 비영리민간단체 에서 그 임·직원으로 활 동한 경력이 있는 자 3. 대학이나 공공연구기 관의 비영리민간단체 및 행정학 관련분야에서 부 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 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 고 있는 자 4.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하여 경험 과 식견을 갖춘 주민	1. 의회가 추 천하는 의회 의원 2. 주민대표, 전문가 및 마 을공동체 만 들기에 대해 여 풍부한 경 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1. 의회 의장 이 추천하는 의원 2. 관련 분야 에 대한 학식 과 경험이 풍 부한 전문가 3. 관련 분야 에 대한 경험 과 식견을 갖 춘 민간활동 가 및 주민	1. 도의회에 서 추천하는 해당 전문가 2. 주민대표, 전문가 및 마 을공동체 만 들기 사업에 대하여 경험 과 식견을 갖 춘 사람

내용	충북	서울	인천	경기	전남
간사	-	지역공동체 담당관	마을공동체 만들기 담당부서장	따복공동체 업무담당 과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담당부서장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 (2018년 7월 기준)

- (중간지원센터) 광역자치단체 조례에서 중간지원센터에 대해 13개 지자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센터의 기능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 지원센터의 역할은 아래의 표와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충북과 달리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자원관리와 사업공모, 시·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중앙부처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의 유치·지원 등에 관한 기능을 규정하고 있음
- 부산시는 중간지원센터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중간지원센터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음

<표 2-15> 지방자치단체 지역공동체 관련 조례 구성-지원센터의 기능

구분	내용	충북	서울	인천	전남
지원 센터 기능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	◎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	◎	◎	◎
	주민 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		◎	◎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	◎	◎	◎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	◎	◎	◎
	교육·자문·연수·박람회·세미나·사례현장 국내외 견학 지원	◎	◎	◎	◎
	관련 교육·홍보·전파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	◎	◎
	일꾼 발굴 및 육성		◎	◎	
자원관리		◎	◎	◎	

구분	내용	충북	서울	인천	전남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공모			◎	
	시·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
	중앙부처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의 유치·지원				◎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 (2018년 7월 기준)

- 그 외에도 서울 지역공동체 지원을 위한 조례에서는 지원센터와 별개로 마을공간(마을활력소 및 마을배움터)⁹⁾의 설치·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충남 조례에서는 인력지원 및 역량별 사업유형 설정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제시하고 있음
 - 서울시는 마을배움터를 통해 마을배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네트워크의 구축, 사업 발굴, 참여프로그램 운영과 마을배움 활동가 양성, 마을학교의 거점공간운영 등을 수행하고자 하였음
 - 마을활력소는 지역주민 주도로 마을사업의 계획수립 및 실행, 지역주민 참여확대 및 소통, 마을공동체 활성화제안 및 실행 등을 수행하고자 함
 - 충남은 도움이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사업추진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의 효율성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마을의 유형을 구분하여 지원하고자 하였음
- 광역자치단체의 지역공동체관련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및 지원을 살펴보면 환경·경관·복지와 사회적경제, 중앙부처사업, 중간지원센터·관련단체·기관 지원, 교육·컨설팅·연구조사, 네트워크구축, 홍보지원, 지역공동체활동, 문화·예술·전통·역사, 자원관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지역주민이 가장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환경개선 및 경관조성, 복지분야의 사업 및 활동에 지원을 규정함으로 지역주민의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이고자 하였음

9) 제27조(마을공간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주민자치 및 공간공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배움터” 및 “마을활력소” 등의 마을공간을 자치구 또는 지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 또한 별도로 사회적경제 분야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의 경우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 사업을 유지하는 것을 규정하여 지원하고자 하였음
- 많은 자치단체에서 중간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광주와 전북의 경우 시·군·구의 중간지원센터 설립·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지역주민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활동가를 육성할 수 있는 역량 강화사업 지원의 근거를 많은 지자체에서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공동체와 관련된 연구·조사를 통해 지역공동체 사업 및 활동에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 광역자치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및 지원내용은 어떤 분야에 국한되지 않으며,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항목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자 하였음
- 충북의 경우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지역 환경보전 및 개선, 지역발전사업,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지역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주민역량강화사업 및 교육연구조사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표 2-16> 광역자치단체 지역공동체관련 조례상 사업 및 지원에 대한 규정현황

구분	지원 및 사업 내용	광역자치단체
환경·경관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마을공간 조성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북, 강원, 부산, 대구, 울산, 광주, 전남, 세종, 제주
	마을 환경·경관의 보전 및 개선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북, 강원, 울산, 광주, 전남, 세종, 제주
복지	주거 및 복지증진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북, 강원, 충남, 대구, 울산, 광주, 전남, 세종, 제주
사회적경제	공동체에 기반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강원, 대구, 울산, 광주, 전남, 세종
중앙부처사업지원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 사업 유지	경기

구분	지원 및 사업 내용	광역자치단체
중간지원 센터·단체· 기관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지원	서울, 인천, 강원, 충남, 울산, 전북, 전남, 세종, 제주
	중간지원센터 설치 운영	경기
	시군구 중간지원센터 지원	광주, 전북
교육· 건설팅· 연구조사	교육·건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인천, 충북, 강원, 충남, 부산, 대구, 울산, 광주, 전남, 세종, 제주
	마을학교 운영	서울
	마을공동체(자원발굴 포함)와 관련된 연 구·조사·교육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강원, 충북, 충남, 대구, 울산, 광주, 전북, 전남, 세종, 광주
	마을 활동가 전문가 및 재능기부자 발굴 육성	경기, 대전
네트워크	민·관 네트워크 구축	광주
홍보 및 활성화	호혜적 공동 협력활동	울산, 전남, 세종, 제주
	문화나눔 활동에 필요한 결연·후원·지원	울산, 세종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위 한 직업체험 및 문화체험 등 각종 교육과 문화 활동 지원 사업	서울
	박람회 세미나 등 행사 개최	광주
지역 공동체 활동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충남, 부산, 대구, 전북, 전남, 제주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사업	충북, 울산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활동, 형성, 활성 화 사업	경기, 대전, 부산, 대구, 광주
문화·예술· 전통·역사	문화·예술 및 전통·역사의 계승 보전 사업	서울, 경기, 인천, 충북, 강원, 부산, 대구, 울산, 광주, 전남, 세종, 제주
자원관리	자원관리 및 기록 보관	경기
기타	기본계획과 연도별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충남, 전북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	울산, 전북, 전남, 세종, 제주
	그 밖에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인천, 대전, 충북, 광주
	그 밖에 필요(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기, 강원, 충남, 부산, 대구, 울산, 전북, 전남, 세종, 제주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

[부록 1] 광역자치단체 지역공동체관련 조례의 사업 및 지원에 대한 규정현황

2. 지역공동체 전담부서

□ 전담부서 필요성

- 각 중앙부처에서 부처 성격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지역공동체 사업이 지자체에서 일부부서에 연관없는 집중 또는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수행됨에 따라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통합·지원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 사업이 중복 혹은 편중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행정의 효율성 저하를 야기하고 있음
 - 또한 지역 주민 및 공동체차원에서도 혼란과 불편을 야기할 수 있으며, 지자체 관련 부서 특성에 기인하여 지역공동체 사업이 활성화 혹은 지체되는 문제가 발생함
- 지역공동체 전담부서가 존재할 경우 지역공동체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으며, 지역공동체 행정체계를 확립하여 다양한 지역공동체 사업을 통합하고 총괄·지원할 수 있음
 - 지역공동체 전담부서를 통해 지자체의 지역공동체 시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간의 연계체계 형성 및 정보공유, 지원 프로그램의 통합·일원화, 현황 파악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해 지역공동체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 할 수 있음

□ 전담부서 설치 현황

- 지역공동체 전담부서는 지자체의 지역여건 혹은 비전·방향,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도 등에 따라 지역공동체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경우와 부처별 사업유형에 따라 유관과에서 분산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음
 - 광역자치단체의 지역공동체 전담부서를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 인천, 대전, 충북, 울산, 경남, 세종, 제주 등 9개 지자체에서 지역공동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으며, 이 중 서울과 인천, 대전에서는 지역공동체 업무만을 전담

하고, 경기와 충북, 충남, 경남은 지역공동체업무와 사회적경제 업무를 통합·처리하고 있음

- 지역공동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지 않는 지자체는 경북을 비롯하여 8개 지자체로써, 일자리경제과, 경제기획과, 사회적경제과,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등에서 하나의 팀단위로 주로 담당하고 있음
- 충북의 경우 행정국에 지역공동체과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업무와 사회적경제 업무를 통합·처리하고 있음

<표 2-17> 광역자치단체 지역공동체 전담부서 현황

구분(관련 업무)	전담부서	비전담부서 ¹⁰⁾
지역공동체	서울, 인천, 대전	
지역공동체 + 사회적경제	경기, 충북, 울산, 경남	경북
지역공동체 + 기타 (지역개발, 농촌개발, 자치인권, 청사관리, 귀농귀촌, 농촌개발, 경제유통, 일자리정책, 갈등조정, 협치정책, 사회혁신, 국가선도사업, 접경지역발전 등)	세종, 제주	광주, 부산, 대구, 충남 강원, 전북, 전남

참고 : 각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2018년 7월 기준)

<표 2-18> 광역자치단체 지역공동체 담당부서 및 업무 현황

순번	광역	지역공동체부문 담당부서	지역공동체 담당부서 업무	사회적경제부문 담당부서
1	서울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지역기획, 지역생태계, 마을협력, 공동체공간조성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2	경기	따복공동체지원과	따복정책, 따복협력, 공동체사업, 사회적경제 육성, 협동경제	따복공동체지원과

10) 균형발전과, 공동체새마을정책과, 도시재생과, 시민소통과, 사회적경제과, 일자리경제과, 농촌활력과, 자치행정과 등

순번	광역시	지역공동체부문 담당부서	지역공동체 담당부서 업무	사회적경제부문 담당부서
3	인천	행정관리국 지역공동체과	주민공동체, 자원봉사, 마을공동체	일자리경제국 사회적경제과
4	강원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과	지역개발, 접경지역발전, 지역협력, 지역공동체	경제진흥국 사회적경제과
5	대전	자치행정국 민관협력공동체과	공동체정책, 민관협력, 경제공동체, 자원봉사	과학경제국 일자리정책과
6	충북	행정국 지역공동체과	공동체정책, 마을공동체, 경제공동체	행정국 지역공동체과
7	충남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공동체 기획, 사회혁신, 협치정책, 갈등정책	경제정책과 경제정책과
8	부산	창조도시국 도시재생과	창조도시정책(마을만들기 포함), 도시활력재생, 피란유산등재, 산복도로르네상스, 국가선도사업	일자리경제본부 경제기획과
9	대구	시민행복교육국 시민소통과	지역공동체, 사회혁신 공유문화, 자원봉사, 갈등조정, 시민협력	시민행복교육국 사회적경제과
10	울산	행정지원국 지역공동체과	공동체 기획 조정, 공동체 활성화, 자원봉사,	행정지원국 지역공동체과
11	경북	일자리경제산업실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정책, 사회적기업육성, 지역공동체	일자리경제산업실 사회적경제과
12	경남	경제통상국 지역공동체과	공동체기획, 공동체조성, 사회적기업, 행복생활권	경제통상국 지역공동체과
13	광주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 지역공동체(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경제유통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
14	전북	농축수산식품국 농촌활력과	생생마을(마을만들기), 귀농귀촌, 농식품6차산업, 농촌개발	일자리경제정책관
15	전남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행정, 조직관리, 자치인권, 마을공동체, 청사관리	일자리정책지원관
16	세종	균형발전국 지역공동체과	도농공동체, 사회적경제, 지역개발, 농촌개발	지역공동체과
17	제주	특별자치행정국 지역공동체발전과	지역균형발전, 마을발전지원, 가파도 마을만들기	경제통상일자리국 경제일자리정책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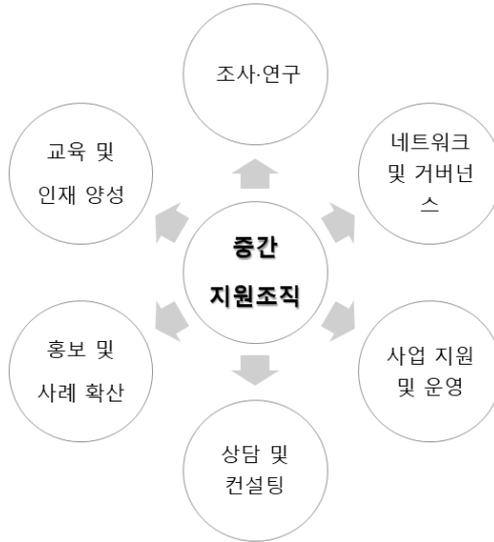
참고 : 각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2018년 7월 기준)

3. 지역공동체 중간지원조직

□ 중간지원조직 개념 및 역할

- 과거에는 제도나 정책이 정부 주도적이고 행정과 함께 해결해가는 방식이었으나, 점차 사회가 변화·발전하면서 정부의 역량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하였음
 - 또한 시민사회가 성장하고 다양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지역사회문제를 유연성 있게 대응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급을 효율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써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됨
 - 지역과 공동체의 다양한 특성과 형태에 따라 지역의 문제나 해결법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분야 및 영역에서 필요한 자원을 중개 및 연계해 줄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며, 행정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조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함
- 중간지원조직¹¹⁾은 지역공동체 사업을 수행하는 일반주민에게는 접근방법이나 추진방법, 사업 수행 중 전문적인 안내자 혹은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역할을 수행함
 - 중간지원조직은 주민과 주민조직 간의 중간 매개자의 역할과 네트워크 형성지원, 필요자원의 코디네이터, 주민역량강화 등 지역공동체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수행하는 기관임(최인수·전대욱, 2014)
- 중간지원조직은 지역공동체의 역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공동체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며, 주민과 공동체의 의견수렴을 비롯한 수요를 파악하여 적시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 중간지원조직은 기획력과 전문성 등을 갖춘 에이전시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 및 연구 등을 통해 활동기반 및 지식을 구축하고, 공동의 목표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협력과 정보제공, 인재육성 등을 실행하는 기관임(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센터, 2011)

11) 본 연구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을 중간지원센터와 중간지원조직, 중간지원기관 등으로 혼재 사용하였음



<그림 2-7> 중간지원조직 기능 및 역할

- 중간지원기관은 행정의 잦은 공무원 교체 등으로 인한 업무 지속성의 어려움과 부서 칸막이현상, 업무 세분화로 인한 다양한 관점 부족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지역주민과 공동체에 집중된 전문성을 갖고 주민접촉의 지속성을 향상시켜 장기적·지속적인 관점에서 지원이 가능함
- 지역을 잘 아는 중간지원조직은 지역사회 내 주민, 행정, 대학, 시민단체, 주민조직, 마을활동가, 전문가 등의 상생과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이 용이하며, 지역특성을 고려한 역량강화지원이 가능함
- 지역공동체 사업의 지원예산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한 연계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표 2-19> 중간지원조직과 행정기관의 비교

구분	행정기관	중간지원조직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잦은 공무원 교체로 업무의 지속성 유지 어려움 • 예산지원 후 사업에 관심 저하 • 본 업무 외 다른 업무로 인한 본 업무의 집중 방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과 공동체에 집중된 전문화된 업무지원 • 예산지원 종료 후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한 연계방안 제시가능
성과에 대한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적·지속적 성과보다는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에 집중 • 주민소득, 방문객수 등 정량적 성과 위주 • 주민과 공동체의 참여와 이해, 갈등해소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시설 성과 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속적인 컨설팅 제공 • 시설에 대한 성과를 기반으로 지역공동체를 포함하는 민간단체의 역량강화에 초점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서간막이 현상 등으로 인한 타 부서와의 협력 어려움 • 지역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일률적지원과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 시너지 창출의 문제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을 잘 아는 중간지원조직은 지역사회내 주민, 행정, 대학, 시민단체, 주민조직, 마을활동가, 전문가 등의 상생과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 용이

- 중간지원조직은 지역공동체가 사업초기 계획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크게 ① 사업지원 및 운영, ② 상담 및 컨설팅, ③ 홍보 및 사례 확산, ④ 교육 및 인재 양성, ⑤ 조사연구, ⑥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로 구분할 수 있음
- (사업지원 및 운영) 중간지원조직은 지역공동체에게 특성에 맞는 중앙부처 혹은 자치단체의 사업을 연계하고, 지역공동체가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접수 혹은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함
 - 중간지원조직에서는 지역공동체 특화사업을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으며, 시·군구 중간지원조직을 통합·관리·지원함

- (상담 및 컨설팅) 중간지원조직은 발전정도가 상이한 지역 및 단체에 맞춤형 상담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공동체가 스스로 계획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관련정보 및 기술, 전문적 지식 제공, 사무적 지원 등을 포함함
 - 지역공동체가 형성되고 활동을 추진하는 전과정을 모니터링하여 지속가능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며, 지역공동체 및 마을을 진단하고 컨설팅을 통한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수행함
- (홍보 및 사례 확산)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발전시키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설명회 및 심포지엄, 한마당대잔치와 같은 다양한 행사를 적극 홍보해야 함
- (교육 및 인재 양성) 지자체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역주민과 공동체는 상호 이해관계의 유기적 협력의 기제 하에 학습 조직화되었을 때 상호 수평적인 소통과 협력이 발생하며, 공동체의 역량은 사업운영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음
 - 중간지원조직은 지역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활동가를 육성하기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함
- (조사 및 연구) 중간지원조직은 지역공동체 및 마을 전반에 대한 연구 및 조사를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역량을 제고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음
-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지역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자금, 인재, 기술 등을 지원받게 하거나 지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제공자와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각종 이해당사자 및 관련자들(주민, 행정, 전문가) 간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함
 - 이 과정에서 다양한 견해를 조정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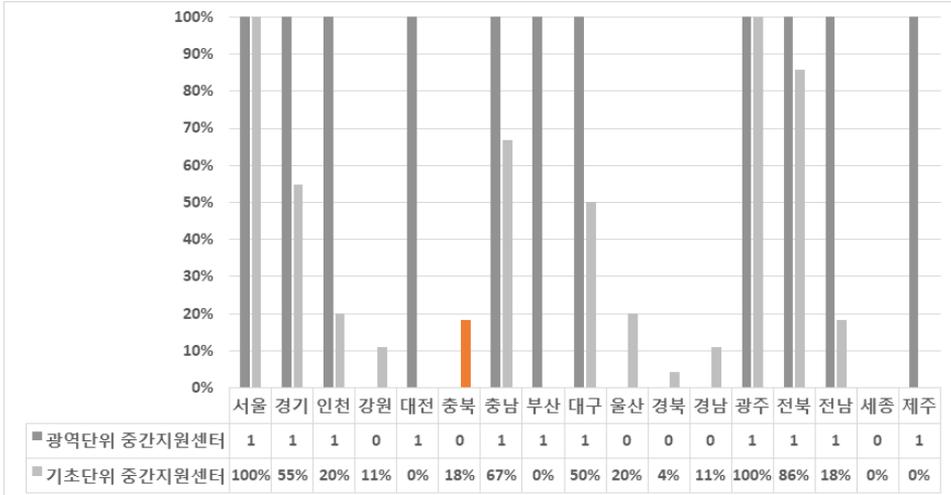
<표 2-20> 중간지원조직 기능 및 역할

구분	역할
조사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공동체관련 연구 및 유사정책 조사 다양한 공동체 사례 발굴 지역자원 조사 및 발굴, 데이터베이스화 공동체 현황 및 수요 조사 마을활동가 및 전문가 현황조사 및 데이터베이스화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자금, 인재, 기술 등을 지원하거나 제공해줄 수 있는 제공자와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 중간지원조직 간 네트워크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코디네이터 지역사회내 행정, 대학 및 지역 언론, 기업, 시민단체 및 주민조직 등과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다양한 견해를 조정하고 부가가치를 창출
사업 지원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모사업 지원 지역공동체 특화사업 운영 시·군구 중간지원조직 지원
상담 및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찾아가는 마을 상담 지역공동체 모니터링 관리체계 구축 지역공동체 및 마을 진단 지역공동체 사업 제안 및 발굴 퍼실레이터 역할 및 컨설팅 제공
홍보 및 사례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뉴스레터 발간, 정보자료실 운영, 매체 홍보, 설명회, 캠페인 및 박람회 운영, 공동체 한마당, 벤치마킹 주민과 공동체 참여 유도를 위한 행사, 포럼, 심포지엄 등 개최
교육 및 인재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활동가 교육(마을활동가 양성과정, 워크숍 등) 자치 시·군구 중간지원조직 실무자 교육 사업별 핵심주체 역량강화 교육 지역자원의 발굴 및 마케팅 아카데미, 훈련과정 개설 등 인재양성

□ 중간지원조직 현황

- 지역공동체관련 중간지원조직은 광역지원센터, 기초지원센터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지원센터 간 역할정립 및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

- 국내 중간지원조직은 대략 96개소가 존재하며,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은 12개,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은 84개소가 설치·운영 중에 있음
-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은 강원, 울산, 경북, 경남, 세종을 제외한 12개 시·도에서 운영 중이며,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은 대전과 부산, 세종, 제주를 제외한 13개 시·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음
- 서울(25개구)과 광주(5개구) 자치구의 중간지원센터 운영률은 100%로 전체 자치구에서 중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광역단위 중간지원센터에서 기초단위 중간지원센터를 지원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경기와 충남, 대구, 전북에서는 50% 이상의 기초단위 중간지원센터 운영률을 보이고 있으며, 대전과 부산, 세종, 제주의 시·군·구에서는 기초단위 중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
- 대전과 부산, 제주의 경우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은 존재하나,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이 없으며, 기초단위에서의 역할과 기능을 광역 중간지원조직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강원과 울산, 경북, 경남의 경우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은 운영 중에 있으나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을 통합·관리하고 체계적인 역할과 기능을 위한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이 없음
- 충북의 경우 별도의 광역단위 지역공동체 중간지원조직은 없으나, 설립을 계획 중에 있으며, 현재는 충북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에서 농촌의 개발과 발전에 한정하여 주민주도형 지역발전 및 지자체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음
- 충북의 기초단위 지역공동체 중간지원조직은 청주시와 증평군에서 운영 중에 있으나, 지역공동체보다는 도시재생에 초점에 맞춰져 있음
- 이에 광역단위 중간지원센터를 비롯하여 기초단위 중간지원센터 설립운영을 통한 역할정립 및 체계화가 요구됨



<그림 2-8> 국내 중간지원센터 현황

참고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표 2-21> 국내 중간지원센터 현황

광역	중간지원조직	기초	중간지원조직
서울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25(25)	종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마을봄
			중구 중구마을공동체지원단
			중랑구 중랑마을지원센터 '너랑나랑중랑'
			성동구 성동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광진구 광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성북구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송파구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강북구 강북구 마을생태계조성지원단
			도봉구 도봉구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동작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동대문구 동대문구 마을공동체지원단
			노원구 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은평구 은평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광역	중간지원조직	기초	중간지원조직
		용산구	용산구 마을생태계조성사업지원단
		서대문구	서대문구 사회적경제마을센터
		마포구	마포마을지원단
		양천구	양천구 마을생태계조성지원단
		강서구	강서구 마을생태계조성지원단
		강남구	강남구 마을생태계조성지원사업단
		구로구	구로구 마을생태계조성지원단
		금천구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영등포구	영등포마을지원센터
		관악구	관악마을지원센터
		서초구	서초구 마을생태계조성지원단
		강동구	강동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경기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안산시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		
고양시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		
부천시	부천시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김포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의왕시	통합도시재생지원센터		
화성시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		
고양시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남양주시	남양주시시민참여센터		
안성시	안성시따복공동체지원센터		
안양시	안양시도시재생지원센터		
평택시	평택시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포천시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		
가평군	마을공동체통합지원센터		
오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의정부시	의정부시 마을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인천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남구	학산마을협력센터
		부평구	나눔과 더함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

광역시	중간지원조직	기초		중간지원조직
강원	-	2(18)	원주시	원주시 읍면권역발전협의회
			강릉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대전	사회적자본지원센터	(5)	-	-
충북	-	2(11)	청주시	청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증평군	증평군행복마을만들기지원센터
충남	충청남도 마을만들기지원센터	10(15)	공주시	공주5도2촌센터
			아산시	아산시공동체지원센터
			천안시	천안시공동체지원센터
			논산시	논산시 희망마을지원센터
			보령시	보령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서천군	서천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
			예산군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
			청양군	청양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
			홍성군	홍성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
태안군	농어촌마을지원센터			
부산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16)	-	-
대구	마을공동체 만들기지원센터	4(8)	중구	도시재생지원센터
			남구	도시만들기지원센터
			북구	북구 도시재생센터
			수성구	수성구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울산	-	1(5)	북구	북구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
경북	-	1(23)	상주시	상주공동체귀농지원센터
경남	-	2(18)	창원시	녹색창원21실천협의회
			통영시	푸른통영21추진협의회
광주	마을만들기지원센터	5(5)	동구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
			남구	마을공동체협력센터
			광산구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
			북구	광주북구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서구	광주시서구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전북	전라북도	12(14)	정읍시	정읍시공동체활성화센터

광역	중간지원조직	기초		중간지원조직
	농어촌종합지원센터		고창군	공동체지원센터
			완주군	완주 공동체지원센터
			진안군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임실군	마을가꾸기 협의회
			무주군	무주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
			남원시	(사)남원시공동체지원센터
			순창군	순창군마을공동체지원센터
			익산시	익산시마을만들기협의회
			진안군	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
			장수군	장수군지역활력센터
			전주시	전주도시혁신센터
전남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만들기지원센터	4(22)	순천시	순천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담양군	담양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
			곡성군	행복마을만들기지원센터
			나주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이음
세종	-	-	-	-
제주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2)	-	-

참고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 중간지원센터는 지역공동체와 관련된 부분만 지원하는 형태와 지역공동체를 포함한 사회적경제 혹은 도시재생, 농촌개발을 통합하여 지원하는 형태로 구분할 수 있음
- 광역단위 중간지원센터 중 서울과 인천, 충남, 대구, 전남, 제주의 경우 지역공동체와 관련된 부분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반면, 경기와 대전은 지역공동체와 사회적경제 부분을 통합 지원하고, 부산과 광주, 전북은 도시재생 등과 통합 지원하고 있음

<표 2-22> 지역공동체관련 중간지원조직 광역지자체별 현황

광역	중간지원 조직	구분	목표 및 역할, 비전 등	사업내용
서울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 센터	지역 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의 필요에 따라 계획하고 직접 만드는 마을공동체 실현 • 주민주도와 민·관 협치로 마을공동체회복과 주민자치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전문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원 및 운영(공모사업 지원,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 운영, 마을공동체 특화사업 운영, 중간지원조직 네트워크 운영) • 교육(마을지원 활동가교육, 자치구 마을중간지원조직 실무자 교육, 사업별 핵심주체 역량강화 교육, 마을활동가 상호교육) • 상담(찾아가는 마을상담, 내방상담, 기관단체 방문) • 연구(정책과제연구, 마을살이 작은연구, 마을공동체사업성과측성, 유사정책조사) • 홍보 및 사례확산(뉴스레터 발간, 정보자료실 운영, 매체 홍보, 캠페인 및 박람회 운영)
경기	경기도 다복공동체 지원센터	지역 공동체 + 사회적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과 마을, 사회적경제를 잇는 통합적 대안모델로써, 상향식활동을 위한 주민조직화를 지향하고 주민요구에 따른 맞춤형 활동을 추진하며, 주민역량에 맞춘 단계별 활동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과 사회적경제를 통합 지원(모델정립, 특화유형 설정, 정보허브) • 맞춤형 솔루션 원스톱 지원(공동체 활성화, 마을계획 수립, 사회적경제/인큐베이팅/공간조성/주민교육/지역자원조사/상담 및 컨설팅) • 행정과 마을을 잇는 가교역할
인천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지역 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인프라 구축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주체 육성 • 인천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소통과 화합 • 주민자치에 기반한 마을공동체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상담소 운영 • 교육지원(주민자치인문대학, 마을학교, 맞춤형 마을컨설팅) • 교류협력지원(마을집담회, 마을학습네트워크, 원도심네트워크, 공무원네트워크, 인천마을포럼) • 마을활동가 지원(마을활동가 양성과정, 마을활동가 워크숍, 오픈컨퍼런스)

광역	중간지원 조직	구분	목표 및 역할, 비전 등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사업지원(공모사업 컨설팅) • 홍보지원, 아카이브(공동체현황, 마을자원, 사업자료, 강사현황 등) 및 웹진
대전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지원센터	지역 공동체 + 사회적 경제	사회적자본의 확충을 위한 다양한 시민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프라 구축과 지원(마을포털, 마을교육, 마을미디어, 마을일꾼, 커뮤니티맵핑, 네트워크 활성화 등) • 마을일꾼 발굴육성 •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 평생학습지원 및 민·관협력 사업 • 공유경제 활성화 • 마을공동체 박람회, 시민참여 활성화사업
충북	충북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농촌개발과 발전으로 한정	주민주도형 지역발전 및 지자체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 정보교류, 인적자원 육성, 마을진단 및 현장포럼 운영지원으로 마을권역사업의 효과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현장포럼(주민교육 마을테마발굴, 선진지견학, 마을 발전과제 발굴) • 현장활동가교육 • 마을리더교육(마을만들기학교운영, 마을리더교육과정 운영 등) •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충남	충남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지역 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밀착형 지역인재 양성과 신규 확보 지원 • 다양한 정보의 공유와 행정사업 지원체계 정비 • 마을과 행정, 광역과 기초의 협력 관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통과 홍보(웹진, 보고서 등 발간, 충남 마을넷 운영) • 조사와 분석(마을만들기 행정사업 db구축과 아틀란스 지도 제작, 학술행사 개최, 관련 도서 및 보고서 수집 분석) • 역량강화(시·군 순회교육 및 정책설명회, 핵심리더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 신규활동가 채용설명회, 시·군지원센터 강사초청 및 파견지원) • 협력과 연대(네트워크 구축 포럼 개최, 마을만들기 인재뱅크 구축 및 지원, 대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광역	중간지원 조직	구분	목표 및 역할, 비전 등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마을동아리(동아리 육성 공모, 사회적 경제와 연계협력을 통한 지원시스템 구축) • 연구용역 수행(시·군단위 마을만들기 지원시스템 구축 관련 연구용역, 마을만들기 대화마당, 워크숍, 주민교육 매뉴얼 개발 등)
부산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지역 공동체 (도시 재생)	지속가능한 공동체 활성화 실현 도시재생 기반조성 시민소통 및 창의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공동체 활성화사업(행복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주민역량강화사업, 마을활동가 운영 및 컨설팅) • 도시재생 기반조성(찾아가는 이동 마을지기 다복동 마차 운영, 다복동 안심마을 조성사업, 공공기관 사공헌 활동 도시재생 연계추진, 도시재생 거점시설 활용도 제고 시범사업, 다복동 마을공동체 경제활성화를 위한 마케팅개선 시범사업) • 시민소통 및 역량강화(부산도시재생 박람회 개최, 도시재생 서포터즈 영상 홍보단 운영, 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 도시재생 전문역량 강화 지속추진) • 도시재생 아카이브
대구	대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지역 공동체	주민이 주도하고 만들어가는 대구형 마을공동체 생태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단계별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사업 • 주민모임사업(만나자, 해보자) • 마을의제사업(마을넷, 마을계획단, 마을나눔터) • 찾아가는 컨설팅 • 마을공동체 지도, 소식
광주	광주 도시재생	도시재생 + 마을	다양한 도시재생 공동체 사업을 발굴하고 도시재생, 마을정책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 마을코디네이터 및 청년활동가 운영 등 협력사업 관련 교육업무

광역	중간지원 조직	구분	목표 및 역할, 비전 등	사업내용
	공동체센터	공동체	및 전략을 만들어 해당지역의 주민의견 수렴과 조정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마을공동체복지를 위한 정책개발·조사연구 • 도시재생·마을공동체복지를 위한 네트워크 교류·지원연계활동 협력, • 도시재생·마을공동체복지 모델 개발·지원 • 도시재생·마을공동체복지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일자리 창출
전북	전라북도 농어촌종합 지원센터	마을만들기 +귀농귀촌 +농촌관광 지원+6차 산업지원 +농촌유학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지역의 활력을 위한 통합 지원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생마을 통합지원(마을주민교육, 현장활동가 교육, 지원기관 연계교육) • 생생마을 모니터링(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컨설팅 지원, 정책기반 마련, 모니터링 관리체계 구축) • 생생마을 네트워크(민간네트워크를 통합 마을만들기 인프라 구축, 통합지원체계를 통한 공동사업화 추진기반 마련, 마을홍보, 마을상품 판로 등) • 생생마을 홍보 마케팅(공식페이스북, 소식지, 뉴스레터 등)
전남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지역 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이 참여하고 주관하는 마을공동체 육성 • 주민주도의 공동체 사업을 이끌고 갈 인력육성 •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함께 참여하는 주민참여제 도입 • 공동체 단계(씨앗·새싹·열매) 별 지원 • 거버넌스와 네트워크를 통한 융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홍보(찾아가는 마을학교, 마을공동체리더교육, 공동체활동가교육, 지원기관 공유워크숍, 설명회, 홍보활동, 홍보물품제작, 벤치마킹, 워크숍, 소식지발간, 공동체한마당, 아카이빙) • 사업지원(민·관 및 광역·청년 네트워크, 풀뿌리학교, 컨설팅모니터링, 토론, MOU체결, 시·군 마을공동체지원)

광역	중간지원 조직	구분	목표 및 역할, 비전 등	사업내용
			<p>합 지원체계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유사센터 등과의 상호협력관계 형성 	
제주	제주 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 종합지원 센터	지역 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을 위해, 민·관 협력으로 도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마을산업의 체계적 지원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설립(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 2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다들영사업(주민제안공모사업과 그에 따른 체험, 축제, 전시, 교육 등 지원) • 수놓음사업(건설팅 지원, 단계별 맞춤형 건설팅 지원, 마을자원 등 현황조사) • 하간디사업(시설물조사, 및 그에 따른 보고서, 설문지 등) • 혼뒤모영사업(맞춤형교육지원, 역량강화교육, 마을활동가 교육 등)

참고 : 지방자치단체 중간지원센터 홈페이지(2018년 7월 기준)

□ 중간지원센터 운영 사례 : 서울시

- 서울은 광역단위의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와 25개 자치구에서 중간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 25개 자치구의 중간지원조직은 센터형(민간위탁 or 직영)과 네트워크형(마을생태계 조성사업단)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음
 - 서울시는 광역 중간지원센터는 25개 자치구와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치구 중간지원조직의 마을중간지원조직 실무자 교육을 비롯하여 25개 자치구 중간지원조직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음

<표 2-23> 서울시 중간지원센터 현황

구분		자치구	
센터형	민간위탁	7	성북, 도봉, 노원, 은평, 금천, 성동, 강동
	직영	3	서대문, 종로, 동작
네트워크형	마을생태계 조성사업단	15	강서, 구로, 양천, 마포, 영등포, 강북, 광진, 관악, 송파, 중랑, 서초, 용산, 동대문, 중구, 강남

참고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백서(2012-17)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① 주민의 필요에 따라 계획하고 직접 만드는 마을공동체 실현과 ② 주민주도의 민·관 협치로 마을공동체 회복과 주민자치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목표로 하고 있음



<그림 2-11>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체계도

참고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백서(2012-17)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2011년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풀뿌리 시민주체들의 자발적인 집담회’를 통해 탄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례를 제정, 서울시 마을공동체 담당관 신설되었음
 - 서울시 지원센터는 광역형 마을사업을 발굴해 실행하고 자치구 마을센터를 통해 주민밀착형 지역공동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지원 및 사업 모니터링, 마을공동체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사업을 병행하고 있음
- 서울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는 풀뿌리 집담회와 마을넷, 자치구 마을생태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주민자치 등을 통한 주민주도의 지역공동체를 위한 사업을 펼치고 광역단위에서 직접 마을 상담원을 뽑아 교육하고 일반 주민대상 교육프로그램도 진행함

- (자치구 마을생태계) 자치구 마을생태계는 자치구단위로 주민모임을 발굴·지원할 수 있는 주민모임 육성을 통해 자치구 중심으로 주민의 발굴과 성장을 돕고 네트워킹을 통해 지역에서 스스로 온전한 마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지원시스템임
 - 광역단위 지역공동체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주민모임을 전부 상담하고 밀착지원 하는 것이 어려워짐에 따라, 적시적소에 주민모임을 지원하여 마을이 안정적인 구조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치구 단위의 접근을 논의함
 - 이에 자치구 단위로 행정과 먼저 마을활동을 시작한 주민들이 팀워크를 이뤄 지역의 주민모임을 발굴·지원할 수 있는 주민모임을 육성하는 ‘자치구 마을생태계 기반 조성사업’을 실시함
 - ‘자치구 마을생태계 기반 조성사업’은 광역과 자치구의 역할을 세분하고 자치구를 중심으로 주민의 발굴과 성장을 돕고 네트워킹을 통해 지역에서 스스로 온전한 마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지원시스템을 구축함
 - 서울시 주도로 시작된 마을공동체 정책과 사업이 ‘자치구’, ‘주민주도’로 바뀌면서 지역의 특성과 현황에 맞춰 자치구 안에서 주민들이 마을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밀착지원을 하면서 주민지향, 마을지향의 지원 및 행정체제로 변환
- (마을넷) 민과 관, 민과 민을 연결하는 자유로운 네트워크인 마을넷 형성을 지원하고 있음
 - 마을넷은 지역에서 마을활동을 하던 이들이 중심이 되어 모인 주민네트워크로써, 마을사업지기(지역공동체 또는 주민모임)에서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으며 많은 자치구에서 마을넷이 자치구 마을센터(마을생태계)을 운영하고 있음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주요 사업은 ① 사업지원 및 운영과 ② 교육, ③ 상담, ④ 연구, ⑤ 홍보 및 사례 확산 등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사업지원 및 운영 : 공모사업 지원,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 운영, 마을 공동체 특화사업 운영, 중간지원조직 네트워크 운영
 - 교육 : 마을지원 활동가교육, 자치구 마을중간지원조직 실무자 교육, 사업별 핵심주체 역량강화 교육, 마을활동가 상호교육
 - 상담 : 찾아가는 마을상담, 내방상담, 기관단체 방문
 - 연구 : 정책 과제연구, 마을살이 작은 연구, 마을 공동체 사업 성과측성, 유사정책조사
 - 홍보 및 사례 확산 : 뉴스레터 발간, 정보자료실 운영, 매체 홍보, 캠페인 및 박람회 운영
- 특히 서울시 중간지원센터는 지역공동체와 관련된 정책과제연구를 비롯하여 마을살이 작은연구, 찾동연구, 기획연구, 유사정책조사 등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중간지원센터 운영 사례 : 경기

- 경기도는 광역단위의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와 17개 자치시·군에서 중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에서는 따뜻한 사람양성, 협력시스템과 네트워크 구축, 통합적 대안모델로서 따복공동체 정립 및 확산을 3대 목표로 상향식 활동을 통한 주민조직화를 지향하고, 주민요구에 따른 맞춤형 활동과 주민역량에 맞춘 단계별 활동을 추진함
-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는 경기도에서 설립하였으며, 재단법인 지속가능경영재단이 수탁·운영하는 마을과 사회적경제 통합·지원기관임

상그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다복공동체 정책의 현장중심적 실행 모델 개발연구 추진
주체별 성장지원 및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모임 형성 및 자체적인 마을계획 수립지원, 역량강화 교육
전략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만들기와 사회적경제 활성화 전략 의제발굴 및 실행지원
관계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당사자간 중간지원조직 간의 네트워크 연대 협력
활성화기반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주체 대상 다복공동체 활동지원 및 당사자간 조직대상 활동기반 확대지원
공감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다복공동체 사례조사, 기록 관리 및 활용

<그림 2-12> 경기도 다복공동체 지원센터 사업추진방향

참고 : 2016, 경기도 다복공동체 지원센터의 역할과 활동

<표 2-24> 경기도 다복공동체 지원센터 사업추진방향 세부내용

구분	내용
상그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복공동체 중장기 정책연구를 위한 기본연구사업 • 다복공동체 단기 정책연구를 위한 기획연구사업 • 도민참여형 작은 연구사업 • 열린 정책연구회 구성 및 정책연구포럼 • 국제교류협력사업 한일 국제 심포지엄 • 다복공동체 백서 발간
주체별 성장지원 및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복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주도 마을계획 수립 지원 • 찾아가는 마을학교, 마을공동체 탐방 공동체 주민학교 • 공동체 교육/주체모임/네트워크 지원 등 공동체 심화학교 • 퍼실리테이션 교육, 소통 학습워크숍 참여형 학습촉진자 교육 • 공유경제 교육과정 운영지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교육공모지원사업 •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통합성장을 위한 조직가 및 활동가 양성교육 터 무니 학교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사회적기업 설립교육 및 상담/컨설팅을 위한 사회적기업 설립 및 지원 • 마을기업 설립교육 및 상담/컨설팅을 위한 마을기업 경영지원 • 협동조합 설립교육 및 상담/컨설팅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및 지원 • 베이비부머, 청년 등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 스타기업 선정 및 컨설팅/판로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 스타기업 지원
전략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제 수립지원을 위한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활성화 전략사업 •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동화사업 지원 • 마을 거점공간 리모델링을 위한 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관계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단위 다복 관계망 형성사업 올림 • 영역별 네트워크 기반구축 사업 • 전국단위 네트워크 연대협력사업 방방곡곡 • 사회적경제기업 전체 워크숍 운영 • 시·군 민간단위 네트워크 역량강화사업 어울림
활성화 기반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주체 대상 상담원, 사례조사원, 컨설턴트 활동을 위한 다복지기 활동지 원 사업 •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판매촉진을 위한 생협점포 입점 지원사업 다복가게 • 대형마트 입점 상품꾸리기, 공공/다복공동체 장터 지원 사회적경제 판로지 원사업 •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전시/판매를 위한 복합지원공간 다복품마루 조성 및 운영사업 • 사회적경제 기업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위한 사회적경제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 공공구매 자문단/지원단 운영을 통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
공감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및 사회적경제 등 DB구축을 위한 다복공동체 맵핑 사업 • 지역기반 기록화 작업을 위한 다복공동체 기록물 관리 및 활용사업 • 지역공동체 및 정책 사례조사를 위한 사례조사 사업 • 사회적경제기업 공식성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한 사회적경제 콘텐츠 개발 보급 • 사회적경제 국제포럼

참고 : 2016. 경기도 다복공동체 지원센터의 역할과 활동

- 경기도 다복공동체 지원센터는 사업을 센터 지원사업과 경기도 다복공동체 지원과 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음

<표 2-25> 경기도 따복공동체 지원사업 현황

구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경기도 따복공동체 지원센터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복공동체 정책 촉진 및 지역중심 실행지원 • 지속가능한 공동체 활동지원 및 마을지원사업 • 지역문제 해결 및 따복공동체 생태계 조성 지원 • 따복공동체 가치 확산과 소통 강화를 위한 홍보정보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복공동체 주민제안사업 • 따복 사랑방 조성사업 • 청년 따복공동체 활동지원사업 • 따복공동체 융합협력 사업추진 • 역량강화지원 • 전문인력지원
경기도 따복공동체 지원과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지원 및 운영기반 구축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성장단계별 맞춤지원 및 경영역량 강화 • 사회적경제기업 판로개척 및 상호거래시장 조성 •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및 조직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기업 지정인증 • 사회적경제기업 재정경영지원 • 사회적경제 성장지원 인프라 구축 •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및 유통 활성화

참고 :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ddabok.or.kr>

□ 중간지원센터 운영 사례 : 전남

- 전남은 지원센터를 통해, 도와 센터와의 역할분담으로 사업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체 성장을 위한 단계별 지원책을 마련하며, 지역공동체 사업에 대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음
 - 지원센터는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단체로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연구에 경험이 있거나, 마을공동체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를 통해 위탁·운영하고 있음
- 전남은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풀뿌리 주민자치 마을공동체와 주민이 주인되는 마을공동체 서로 돕고 배우는 마을공동체를 전략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그림 2-13>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비전 및 목표

참고 :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jnmaeul.kr>

-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추진방침으로는 ① 주민이 참여하고 주관하는 마을공동체를 육성하고, ② 주민주도의 공동체 사업을 이끌고 갈 인력육성, ③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함께 참여하는 주민참여제 도입, ④ 공동체 단계(씨앗·새싹·열매) 별 지원, ⑤ 거버넌스와 네트워크를 통한 융·복합 지원체계 마련, ⑥ 기존 유사센터 등과의 상호협력관계 형성임

<표 2-26> 전라남도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사업 추진방침

구분	내용
주민이 참여하고 주관하는 마을공동체 육성	• 마을주민들이 함께 수립한 마을발전종합계획에 따른 공동체 형성
주민주도의 공동체 사업을 이끌고 갈 인력양성	• 마을활동가 양성교육 • 마을리더 양성 아카데미 운영 • 기존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함께 심사하는 주민참여제 도입	• 주민들이 마을에 필요한 공동체 사업을 구상하여 제안하는 상향식 공모 실시 • 주민참여 심사제를 도입하여 사업 선정의 투명성 제고
공동체 사업의 단계별 지원	• 씨앗, 새싹, 열매 단계로 구분하여 지원
거버넌스와 네트워크를 통한 융·복합 지원체계 마련	• 마을공동체 사업이 지속가능하도록 실과사업과 연계 추진 • 마을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 마을의 유관기관과 지원
기존 유사센터 등과의 상호 협력관계 형성	• 마을사업 종합 인큐베이터 기능을 수행하고 마을사업 성격에 따라 사회적경제 통합 지원센터 및 농촌활성화 지원센터 등과의 연계 협력방안 강구

참고 :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jnmaeul.kr>

- 주요 사업으로는 교육홍보와 사업지원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음
 - 교육홍보 : 찾아가는 마을학교, 마을공동체 리더 교육, 공동체 활동가교육, 지원기관 공유워크숍, 설명회, 홍보활동, 홍보 물품제작, 벤치마킹, 워크숍, 소식지발간, 공동체한마당, 아카이빙
 - 사업지원 : 민·관 및 광역·청년 네트워크, 플뿌리학교, 컨설팅·모니터링, 토론, MOU체결, 시·군 마을공동체지원

제 3 장

충북 현황 및 지역공동체관련 사업 분석

제1절 충북 현황

제2절 지방자치단체 지역공동체관련 제도 및
지원체계 분석

제3절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전략도출

KRILA

제 3 장

충북 현황 및 지역공동체관련 사업 분석

제1절 충북 현황

1. 충북 현황 및 여건

- 충청북도는 면적 7,407km²으로 위도 상으로는 중위도에 속하며 내륙도로, 3개의 시와 8개의 군, 4개의 일반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153개의 읍면동이 있음
- 충북은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이 있으며, 청주시는 상당구와 서원구, 흥덕구, 청원구로 이루어져 있음
- 153개의 읍면동은 15개의 읍과 87개의 면, 51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4,742개의 통리가 있음



<그림 3-1> 충청북도 행정도

- 충북은 국토의 중심지로서 높은 접근성과 교통물류의 중심지 등 탁월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어 충북경제의 성장거점을 확보하고 차세대 국가성장동력 산업의 허브화가 가능한 지역임
 - 북쪽으로는 경기도·강원도, 동쪽으로는 경상북도, 서쪽으로는 충청남도, 남쪽으로는 전라북도 사이에 위치하며, 이들 지역과 자연적으로 경계를 이루어 독립된 지역을 형성하고 있음
 - 충북은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당진영덕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평택제천고속도로 등이 있음
 - 고속철도인 오송역과 청주국제공항을 활용하여 인근 지역으로의 높은 접근성과 교통물류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 충북의 인구는 2017년 기준 1,593,577명이고 인구밀도는 215명/km²이며, 충북 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청주시가 인구 835,770명(52%)으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인구밀도 역시 청주시가 889명/km²로 타 지자체에 비해 상당히 높은 인구비율과 인구밀도를 갖고 있음
 - 청주시와 충주시(인구 208,163명, 인구비율 13%, 인구밀도 212명/km²), 제천시(인구 136,656명, 인구비율 9%, 인구밀도 155명/km²)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음
 - 남녀 성별 차이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세대당 인구는 평균 2.42명으로, 이는 독거노인 및 1인 가구의 증가 등의 요인에서 기인된 것으로 판단됨

<표 3-1> 충북 행정구역별 세대 및 인구추이

	인구(명)	인구비율(%)	인구(남)	인구(여)	세대수	세대당인구	면적(km ²)	인구밀도
계	1,593,577	100%	804,466	789,111	689,392	2.42	7,407	215
청주	835,770	52%	419,688	416,082	345,248	2.42	940	889
충주	208,163	13%	104,853	103,310	89,897	2.32	984	212
제천	136,656	9%	68,560	68,096	61,913	2.21	883	155
보은	34,073	2%	17,027	17,046	16,464	2.07	584	58.3
옥천	51,779	3%	26,025	25,754	23,158	2.24	537	96.4
영동	50,318	3%	25,021	25,297	24,087	2.09	846	59.5
증평	37,772	2%	19,427	18,345	16,624	2.27	82	461
진천	73,370	5%	38,135	35,235	32,651	2.25	407	180
괴산	38,083	2%	19,349	18,734	19,659	1.94	843	45.2
음성	97,250	6%	51,103	46,147	44,898	2.17	520	187
단양	30,343	2%	15,278	15,065	14,793	2.05	781	38.9

충북 통계정보시스템(<http://www.chungbuk.go.kr/stat/>), 2017년 기준

- 충북은 2016년 기준 인구의 위축세가 다소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고령화·저출산 위기에 처하면서 핵심생산가능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2021년부터는 인구성장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통계청, 2017, 장래인구 추계)
 - 충북은 인구 1,627,124명(2016년 기준)가 거주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인구 성장률은 0.6%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역별 균형발전의 편차가 상당히 크고, 매년 출생아울 저하와 노령화가 심화되고 있음(충북 통계연보)
 -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의하면 충북은 지속적인 저출산 영향으로 충북의 유소년 인구(0~14세)는 2016년 13.4%(213.8천명)에서 2035년에는 11.2%(194.5천명)로 하락을 예상하고 있음
 -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6년 14.7%(234만3000명)에서 2035년에는 31.1%(537만9000명)로 크게 증가할 전망하고 있음

-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시작되고 대도시권과 근접, 청정 환경이 비교적 잘 보전된 특징 등으로 인해 이주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최근 매년 10% 증가)하고 있으나,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가 가시화되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해결방안 모색 필요
- 충북은 청주 중심과 남부권 및 북부권 등의 상대적 저발전에 따른 권역간·지역간 격차문제가 매우 큰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영동군과 진천군, 음성군을 제외한 8개 시·군에서 도시쇠퇴기준¹²⁾에 부합하고 있음
 - 충북 153개 읍면동에서 93개 읍면동이 도시쇠퇴기준에 부합되고 있음
 - 최근 30년간의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대비 현재의 인구증감률(읍면동 평균) 이 가장 높은 시·군은 음성군(-8.59%)이며, 낮은 시·군은 단양군(-58.85%)과 보은군(-58.42%), 옥천군(-50.79%)순임
 - 최근 10년간 총 사업체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 대비 현재의 총 사업체수의 증감률(읍면동 평균)이 높은 시·군은 음성군(10.79%), 진천군(8.82%) 증평균(5.12%) 순이며, 낮은 시·군은 영동군(-0.24%)과 보은군(-5.76%)순임
 - 전체 건축물 중에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시·군은 단양군(65.76%), 옥천군(61.05%), 보은군(60.49%) 순이며, 가장 낮은 시·군은 영동군(34.95%)임

12) 도시 쇠퇴기준이란 도시재생 및 특별법에 의거하여 도시재생 뉴딜 대상지를 선정시 인구사회부문(인구감소율)과 산업경제부문(사업체수 감소율), 물리환경부문(노후 건축물 비율)으로 구분하여 3대 쇠퇴지수인 인구, 산업, 노후도 중 2가지 이상이 기준에 부합되는 지역을 도시재생활성화 진단 기준으로 함

<표 3-2> 충북 도시쇠퇴현황

시·군	도시쇠퇴 부합율 (%)	도시쇠퇴 부합 읍면동수	도시쇠퇴 비부합 읍면동수	인구사회 부문a) 읍면동수	산업경제 부문b) 읍면동수	물리환경 부문c) 읍면동수	과거대비 인구변화 평균(%)d)	과거대비 사업체변화 평균(%)e)	노후건축물 비율 평균(%)f)
충주시	68	17	8	20	4	18	-30.14	3.01	56.99
제천시	59	10	7	14	1	11	-31.91	4.46	56.83
청주시	51	22	21	33	12	24	-17.19	1.13	56.47
보은군	100	11	0	11	5	11	-58.42	-5.76	60.49
옥천군	100	9	0	9	4	9	-53.7	0.72	61.05
영동군	27	3	8	10	3	0	-50.79	-0.24	34.95
진천군	29	2	5	4	1	3	-16.86	8.82	49.78
괴산군	73	8	3	10	1	7	-51.3	3.88	52.22
음성군	22	2	7	6	0	2	-8.59	10.79	46.29
단양군	100	8	0	8	1	8	-58.85	1.82	65.76
증평군	50	1	1	1	0	2	-31.37	5.12	55.82
총계	62	93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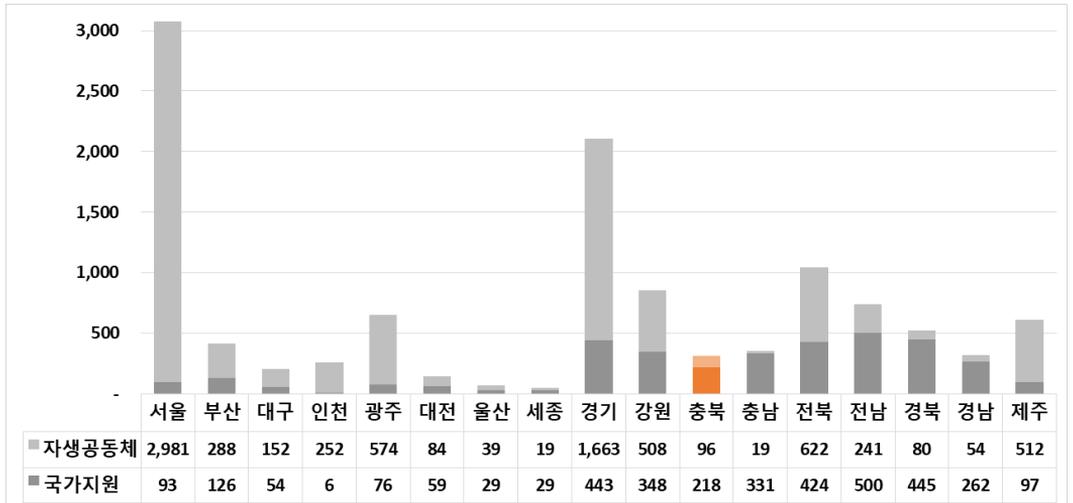
참고 : 도시쇠퇴현황(2017.4.28),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http://www.city.go.kr> (2016년 12월 기준)

- 최근 30년간의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대비 현재의 인구 증감률이 20%이상 감소지역(읍면동 수)
- 최근 10년간 총 사업체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 대비 현재의 총 사업체수의 증감률 5%이상 감소지역(읍면동 수)
- 전체 건축물 중에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 50%이상(읍면동 수)
- 최근 30년간의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대비 현재의 인구 증감률 읍면동 평균
- 최근 10년간 총 사업체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 대비 현재의 총 사업체수의 증감률 읍면동 평균
- 전체 건축물 중에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 읍면동 평균

2. 충북 지역공동체 현황

- 2016년 기준 행정자치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지역공동체 수는 대략 11,700여개로 중앙부처 지원을 받는 지역공동체 3,540개와 자생적으로 운영되는 지역공동체는 8,184개가 존재하며, 충북의 지역공동체는 314개(전체 12위¹³⁾, 전체 지역공동체의 3%)로 타 자치단체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 서울은 3,074개, 경기 2,106개, 전북 1,046개, 강원 856개 순으로 지역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서울과 경기, 광주, 제주, 인천 등은 중앙부처 지원을 받는 지역공동체보다 자생적으로 운영되는 지역공동체의 수가 월등히 높았으며, 경북과 충남, 전남, 경남, 충북 등은 자생적으로 운영되는 지역공동체의 수보다 중앙부처 지원을 받는 지역공동체 수가 많았음
- 충북은 중앙부처의 지원을 받은 지역공동체가 218개, 자생적으로 운영되는 지역공동체가 96개로 총 314개의 지역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자생적으로 운영되는 지역공동체보다 중앙부처 지원을 받는 지역공동체의 수가 두 배 이상 많았음



<그림 3-2> 지방자치단체별 지역공동체 운영 현황

참고 : 2016,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역공동체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2016년 기준)

13) 인구 및 면적을 고려하지 않음

- 2016년 기준 충북 지역공동체 314개 중 작은도서관사업(158개, 50%)으로 가장 많은 지역공동체에서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농촌중심지(40개, 13%), 녹색농촌체험마을(37개, 12%), 기타체험마을(22개, 7%) 순임
- 충북은 지역경제와 연계된 농촌관련 사업(농촌중심지 사업과 녹색농촌체험마을, 기타 체험마을 등)들과 생활밀착형 사업(작은 도서관 사업 등)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 주민과 공동체의 이해를 돕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사업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활동을 발굴·확산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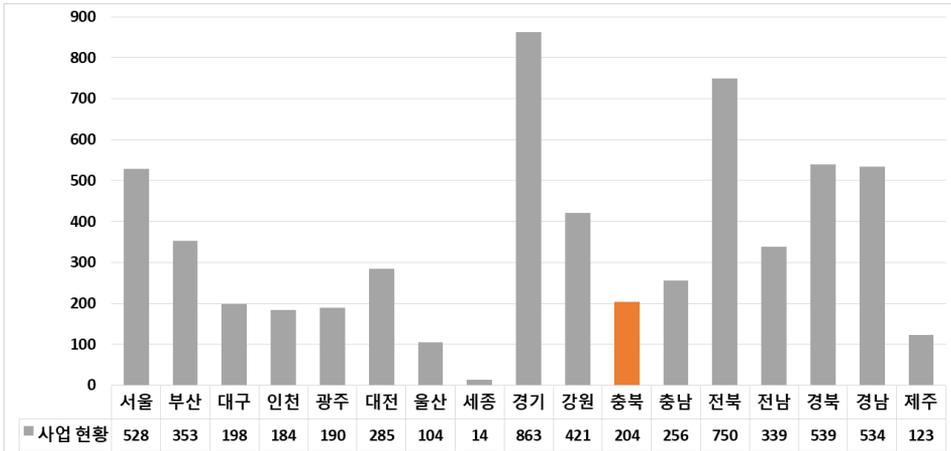
<표 3-3> 충북 시·군별 지역공동체 사업 추진현황

사업	계	구성비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계	314	100%	96	34	26	19	22	29	10	20	25	15	18
농촌중심지	40	13%	4	5	5	2	2	6	1	4	6	-	5
전원마을	13	4%	3	2	3	-	-	2	-	-	2	-	1
정보화마을	18	6%	3	-	2	1	1	3	2	2	2	-	2
희망마을	6	2%	-	1	-	-	-	-	-	-	3	1	1
도시활력증진	4	1%	4	-	-	-	-	-	-	-	-	-	-
시·군 역량	16	5%	-	2	1	2	6	2	-	-	-	1	2
녹색농촌체험마을	37	12%	7	5	1	7	2	7	1	1	1	2	3
기타 체험마을	22	7%	1	1	3	2	4	1	1	2	2	1	4
작은 도서관	158	50%	74	18	11	5	7	8	5	11	9	10	-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2018), 충청북도 협동조합 업종별 현황(2016년 기준)

- 2015년 기준 시·도별로 운영된 지역공동체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863개로 가장 많이 지역공동체 사업이 운영되었으며, 전북 750개, 경북 539개 순으로 운영되었고, 충북은 204개(11위¹⁴⁾)의 지역공동체 사업이 운영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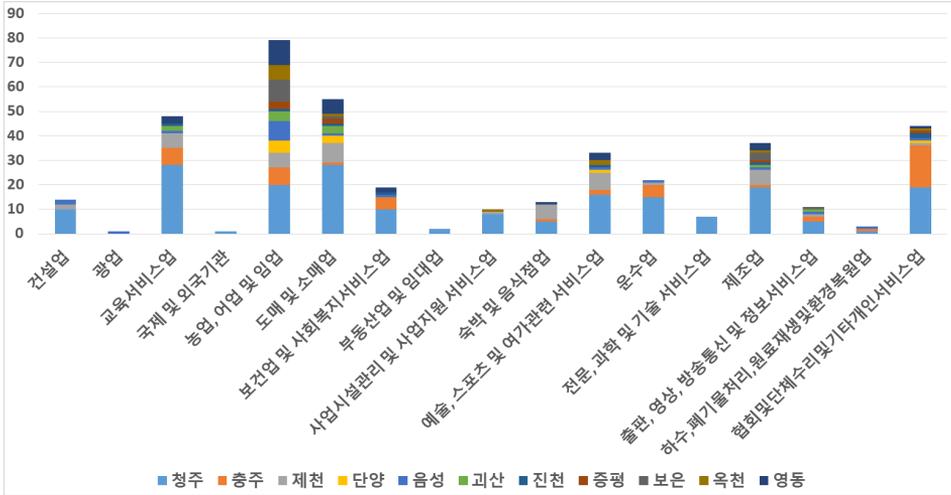
14) 인구 및 면적을 고려하지 않았음



<그림 3-3> 전국 지역공동체 사업 운영 현황

참고 : 2016,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역공동체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2016년 기준)

-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살펴보면 2017년 기준 399개의 협동조합과 84개 사회적기업, 79개 마을기업이 활동하고 있음
- 협동조합은 농업·어업 및 임업분야(79개소, 20%)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도매 및 소매업(55개소, 14%), 교육 서비스업(48개소, 12%),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44개소, 11%), 제조업(37개소, 9%) 순임



<그림 3-4> 충북 협동조합 업종별 현황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2018), 충청북도 협동조합 업종별 현황(2017년 기준)

<표 3-4> 충북 협동조합 현황

구분	총계	구성비	청주	충주	제천	단양	음성	괴산	진천	증평	보은	옥천	영동
총계	399	100%	194	49	45	10	20	11	8	7	14	12	29
건설업	14	4%	10	-	2	-	2	-	-	-	-	-	-
광업	1	0%	-	-	-	-	1	-	-	-	-	-	-
교육서비스업	48	12%	28	7	6	-	1	2	1	-	-	-	3
국제 및 외국기관	1	0%	1	-	-	-	-	-	-	-	-	-	-
농업, 어업 및 임업	79	20%	20	7	6	5	8	4	1	3	9	6	10
도매 및 소매업	55	14%	28	1	8	3	1	3	1	2	1	1	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9	5%	10	5	-	-	1	-	1	-	-	-	2
부동산업 및 임대업	2	1%	2	-	-	-	-	-	-	-	-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0	3%	8	-	1	-	-	-	-	-	-	1	-
숙박 및 음식점업	13	3%	5	1	6	-	-	-	-	-	-	-	1

구분	총계	구성비	청주	충주	제천	단양	음성	괴산	진천	증평	보은	옥천	영동
예술,스포츠및여가 관련서비스업	33	8%	16	2	7	1	1	-	1	-	-	2	3
운수업	22	6%	15	5	1	-	1	-	-	-	-	-	-
전문,과학및기술서 비스업	7	2%	7	-	-	-	-	-	-	-	-	-	-
제조업	37	9%	19	1	6	-	1	1	1	1	3	1	3
출판,영상,방송통신 및정보서비스업	11	3%	5	2	1	-	1	1	-	-	1	-	-
하수,폐기물처리,원 료재생및환경복원업	3	1%	1	1	-	-	1	-	-	-	-	-	-
협회및단체수리및 기타개인서비스업	44	11%	19	17	1	1	1	-	2	1		1	1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2018), 충청북도 협동조합 업종별 현황(2017년 기준)

3. 충북 지역공동체관련 제도

□ 전담부서

- 충북은 행정국에 민간협력공동체과를 신설하여 지역공동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업무는 공동체정책팀, 민간협력팀, 경제공동체팀, 자원봉사팀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지역공동체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를 포함하고 있음
 - 공동체정책팀에서는 지역공동체 정책을 총괄 기획 및 조정하고 활성화 계획을 수립, 조직기구관리, 기반 조성·확충 및 교육·역량 강화 등을 추진함
 - 민간협력팀은 민간협력 종합기획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과 충청북도 NGO 센터 설치 운영, 국민운동단체 활동지원, 주민참여형 공동체 사업 등을 추진함
 - 경제공동체팀에서는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을 육성관리하고, 향토자원 사업화 및 희망마을 만들기,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활성화 등을 지원함

- 자원봉사팀에서는 자원봉사활동 계획수립 및 시행, 도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생활공감정책 계획수립, 생활공감 모니터단 운영, 법질서 확립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함

<표 3-5> 충북 행정국 민간협력공동체과 업무내용

구분	업무내용
공동체정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공동체 정책 총괄·기획 및 조정 • 지역공동체 활성화 계획 수립 • 지역공동체 연계·조정 • 지역공동체 조직·기구 관리 • 지역공동체 기반 조성·확충 및 교육·역량 강화 • 우수사례 발굴·전파, 공동체 DB구축 등 • 아파트공동체·마을기업·마을공방사업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 활성화
민간협력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협력 종합기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충청북도NGO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국민운동단체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법인 허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주민참여형 공동체사업 추진
경제공동체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수립 추진 • 마을기업 육성·관리 • 향토자원 사업화 및 희망마을 만들기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인가 •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자원봉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활동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도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생활공감정책 계획수립 및 홍보 •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 • 법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참고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8조

- 충북 11개 시·군에는 지역공동체관련 전담부서는 없으나, 청주시와 보은군은 지역공동체 전담팀을 설치·운영하고 그 외에 자치단체에서는 농업 정책과 혹은 건축과, 행정과, 경제과 등에서 사업별로 추진하고 있음

<표 3-6> 충북 시·군 지역공동체 관련 전담부서 현황

시·군	부서	내용
청주시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지역공동체팀	주민자치위원회 관리, 지방분권 추진, 지역공동체 활성화계획 수립 및 시행,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사업(교육, 훈련, 표창), 지역공동체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정보화마을 활성화 사업, 주민자치, 자치분권, 읍면동 축제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경제공동체팀	사회적기업 발굴, 지정 및 육성,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적기업 홍보 및 제품구매 실적관리, 마을기업 발굴, 지정 및 육성, 기타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관련 일반,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및 사회보험료 지원, 사회적기업 지도점검 및 관리감독
충주시	농업경제국 산림녹지과 산림정책팀	산촌생태마을 조성 및 관리
	농업경제국 농정과 농촌활력팀	행복마을만들기, 지역역량강화, 현장포럼, 일반농산어촌개발
	경제건설국 건축디자인과 도시재생팀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사업 및 교육 추진, 마을만들기 조례, 도시활력증진 사업 후 관리
제천시	경제과 일자리공동체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건축디자인과 건축행정팀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농업정책과 농촌개발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시·군역량강화, 지역역량강화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
보은군	경제정책실 공동체개발팀	공동체개발, 군부대 이전업무 등, 지역행복생활권, 행복마을사업, 공동체 관련 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한옥마을 단지조성사업 추진
옥천군	경제정책실 지역기반팀	균형발전사업, 지역기반 업무,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역공동체육성사업, 협동조합

시·군	부서	내용
영동군	건설교통과 지역공동체팀	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기획, 지역공동체업무기획, 신규사업 발굴, 국도비 확보 업무,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시·군창의 사업, 지역공동체사업, 신활력 플러스 사업, 깨끗한 농업, 농촌만들기 캠페인,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경제과 일자리창출팀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사업 발굴, 마을 사회적기업 육성 종합관리
	행정과 민간협력팀	지역공동체활성화 사업
진천군	미래도시국 일자리경제과 공동체일자리팀	공동체 일자리 업무총괄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운영관리
	미래도시국 지역개발건축과 도시재생팀	도시재생 업무, 도시재생관련 정부공모사업, 일반농산어촌사업 정부공모사업
괴산군	농업정책실 농업정책팀	농촌활력증진사업추진
	농업정책실 농촌개발팀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경제과 일자리창출팀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마을기업 육성지원,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음성군	도시과 균형발전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 현장포럼, 시·군 역량강화사업, 창조적마을(권역단위) 만들기사업
단양군	균형개발과 농촌개발팀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새뜰마을사업
	기획감사실 기획팀	지역균형발전사업, 혁신역량강화사업, 행복마을사업
증평군	경제과 일자리공동체팀	지역공동체 현황관리 및 D/B 구축, 마을공동체 기반조성(교육 및 조직 지원), 지역공동체 행사, 유공자 포상 등,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 사회적기업 업무 추진, 마을기업 육성 업무 추진

□ 지원조례

- 충북은 지역공동체와 관련하여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2016년에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조례에는 제1장 총칙과 제2장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제3장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 제4장 다양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표 3-7> 충북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구성요소

제1장 총칙	제2장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제3장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	제4장 다양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등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본원칙)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5조(도지사의 책무)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기본계획)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 제9조(마을공동체 활성화 전담부서 지정 및 역할) 제10조(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제11조(사업 지원) 제12조(지원 신청 등) 제13조(평가·포상) 제14조(사업비의 환수) 제15조(준용)	제16조(설치 및 기능) 제17조(구성) 제18조(임기) 제19조(위원장의 직무) 제20조(위원의 해촉) 제21조(회의) 제2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3조(관계 부서 등의 협조) 제24조(수당과 여비)	제25조(지원센터의 설치) 제26조(지원센터의 기능) 제27조(관리 및 운영) 제28조(지도·감독) 제29조(위탁계약 해제 등) 제30조(시행규칙)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충북 지역공동체관련 지원조례의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 및 정의, 기본원칙, 주민의 권리와 책무, 도지사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마을공동체란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지역사회로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고유한 문화를 형성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공동체로 정의하고 있음
-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한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충청북도지사는 주민의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표 3-8>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 총칙 내용

구분	내용	
정의	마을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 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주민	도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마을공동체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지역사회로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고유한 문화를 형성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공동체를 말한다.
	마을만들기	주민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마을공동체 형성 및 복원을 위한 활동 나. 지역주민이 함께 생활환경을 개선해 가는 활동 다.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위한 활동 라.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
기본원칙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마을공동체 활성화는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마을공동체 활성화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마을공동체 활성화는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공동체 활성화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한다.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제2장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서는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전담부서 지정, 행정협의회, 사업지원, 지원신청, 평가보상, 사업비 환수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기본계획) 충북 지역공동체 지원조례에 도지사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 시 충청북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시행계획)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계획을 수립 시에는 기본계획 및 충청북도의 주요정책과 연계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전담부서) 도지사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지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행정협의회)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각종 사업을 담당하는 충청북도 및 시·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업 지원 및 지원신청) 도지사는 지역공동체관련 사업에 대해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지역공동체 사업을 충북도에 신청하고 충북도는 지원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평가 및 포상, 사업비 환수) 충북도는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며 필요시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표 3-9>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내용

구분	내용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1.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방향 2.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종합발전계획 3. 다양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운영 4. 마을공동체 활성화 협의회 구성·운영 5.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6. 그 밖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3. 그 밖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사업지원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지역 환경 보전 및 개선 3.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 사업 4. 마을공동체 복지 증진 5. 지역 문화예술 및 역사 보전 6.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교육·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및 교육·연구 조사 7.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제3장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 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관계 부서 등의 협조, 수당과 여비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위원회는 위원장(위원 중 호선)과 부위원장(마을공동체 활성화 업무담당 국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함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회 연임이 가능하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함

<표 3-10>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 내용

구분	내용	
위원회의 심의 자문사항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관련 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 4. 사업의 분석·평가 5. 지원센터의 지원 및 운영(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에서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위원회	당연직 위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업무 담당 과장
	위촉직 위원	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마을공동체 관련 전문가 3. 주민대표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회의소집	1. 도지사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제4장 다양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등에서는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관리 및 운영, 지도감독 위탁계약 해제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원센터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을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탁기관의 지도·감독, 위탁계약 해제 등에서도 규정하고 있음

<표 3-11>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 다양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내용

구분	내용
지원센터의 기능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만들기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3. 주민 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4. 마을만들기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5. 마을만들기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6. 마을만들기 관련 교육·자문·연수·박람회·세미나 사례현장 국내외 견학 지원 7.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기본계획

- 충북은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018년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음
- 충북은 마을특성에 부합하는 공동체사업개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추진으로 ① 소통으로 자치역량 강화, ② 공감으로 신뢰역량 강화, ③ 협력으로 복지역량강화를 3대 목표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 충북 기본계획의 핵심가치는 소통과 신뢰, 상생이며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자치공동체를 비전으로 추구하고 있음

-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와 생동감 있는 마을공동체, 공유하는 마을공동체를 추진전략으로 7개의 추진과제와 3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핵심가치	소통 + 신뢰 + 상생		
비전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자치공동체		
목표	소통으로 자치역량 강화	공감으로 신뢰역량 강화	협력으로 복지역량 강화
전략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생동감 있는 마을공동체	공유하는 마을공동체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1. 공공지원체계 구축 2. 공동체 역량강화 3. 네트워크 조성	1. 마을 맞춤형 지원 2. 마을 자생력 제고	1. 특화자원 발굴육성 2. 공동체 고도화 지원
	1-1.정보기반 구축 1-2.계획-평가체계 구축 1-3.협의회체계 구축 1-4.공동체 성장관리 2-1.마을공동체 인식확산 2-2.주민 역량강화 2-3.공공 역량강화 2-4.지역 역량강화 3-1.공동체 협의체계 구축 3-2.공동체 간 협력강화 3-3.마을과 마을 연결하기 (생생네트워크)	4-1.희망마을 조성 4-2.자연생태마을 만들기 4-3.반딧불이 가게 운영 4-4.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4-5.마을공동체 재능배분기 4-6.센트드 도입 5-1.공동체 활성화 의제 발굴 5-2.주민모임 활성화 5-3.보듬가족 5-4.아이뜨락 키즈카페 5-5.행복순찰대,우리마을 119운영	6-1.친환경 주거 행복마을 만들기 6-2.사회적경제 성장인프라 조성 6-3.우리마을 가꾸기 6-4.우리마을 살리기 6-5.마을기업 육성 6-6.마을 공유자원 활용하기 7-1.부자마을 만들기 7-2.우리마을 역사관 7-3.마을 갤러리 조성 7-4.마을공동체 축제 지원 7-5.마을공동체 한마당행사

<그림 3-5> 충북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2018-2022) 비전과 목표

참고 : 2018,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안)

- 기본계획(안)의 추진방향은 ① 마을공동체와 사회적 경제조직의 통합적 접근과 ② 민관협력에 기반한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③ 지역특성화 모델개발, ④ 계층별 지원 특화전략과 결합, ⑤ 지역균형, ⑥ 추진체계 구축 등임

<표 3-12> 충북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안) 추진방향

구분	내용
통합적 접근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 조직의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거버넌스 구축	민관협력에 기반한 정책개발과 사업추진
지역 특성화 모델 개발	도시형, 농촌형, 통합형 등 지역여건에 따른 모델 적용
계층별 지원 특화전략과 결합	노령자, 청년, 여성, 취약계층, 지역사회 결합 모색
지역균형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의 균형배치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버넌스 체제로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사업계획 심의 및 정책 자문 등을 수행 •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에서 수립한 사업의 세부계획을 수립·실행 • 행정협의체를 구성하여 부서별 사업의 통합 조정, 시·군과의 연계 협력강화

참고 : 2018,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안)

- 충북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형성단계에 따른 단계별 추진전략을 추진하고자 함

마을 형성 단계		세부과정
터 다지기		마을의 잠재가능성 파악 : 자원, 인력, 특화사업 발굴 마을의 현안 파악 마을 공동체 일꾼 양성, 주민의식 제고 마을공동체 인지도 높이기
관계맺기		지역 내 거점 설정 마을공동체 형성 : 공동체 결속력 및 유대강화 주민간의 화합증대 마을사업의 발굴 : 주민들의 참여, 사업의 확정
뜨락형성		마을사업 고도화 세부사업의 실행 특화부문의 마을 전문가 양성
뜨락 활성화		마을공동체 성공사례 발굴과 확산 성공한 마을공동체 내 연계 특화 발굴

<그림 3-6> 충북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안) 단계별 추진전략

참고 : 2018,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안)

- 충북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는 도 지원체계와 중간지원조직구축, 시·군 지원체제로 구분하며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음

<표 3-13> 충북 지역공동체 관련 지원체계

구분	내용
도 지원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관련 업무는 지역공동체과에서 총괄 조정·관리 • 역량강화 교육, 컨설팅 등은 설립되는 중간지원조직(충북다양한마을만들기지원센터)으로 일원화
중간지원조직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조직과 도민의 접점에서 정책연구와 주민역량강화, 네트워크 구축, 평가 등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할 중간지원조직 설립 • 필요한 지원업무를 직접 윈스톱으로 해결하거나 전문기관에 연계시켜주는 ‘플랫폼’ 형태의 서비스 구조로 설계
시·군 지원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및 전담조직(팀) 구성·운영 •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추진 거버넌스 구축 • 시·군 단위 중간지원조직을 구축 • 주민 및 도 중간지원조직과 사업 연계추진토록 지원(마을활동가 양성, 마을자원조사, 마을종합계획 수립·실행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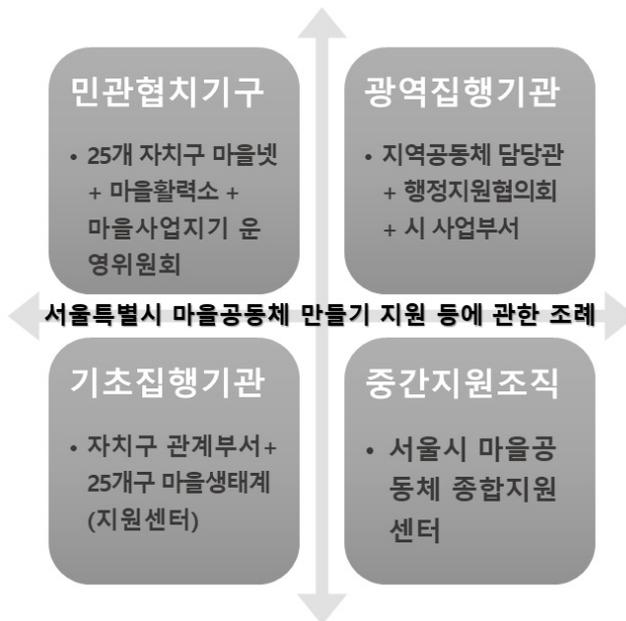
참고 : 2018,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안)

제2절 지방자치단체 지역공동체관련 제도 및 지원체계 분석

1. 서울시 지역공동체관련 제도 및 지원체계 분석

□ 지원체계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을 기본 근거로 서울시에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 담당관을 설치하고, 중간지원기관으로써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종합적인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공동체를 지원하고 있음
- 중간지원조직으로 광역단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25개 자치구에 자치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마을생태계)를 운영하고 있음
- 민간네트워크로써 25개 자치구에 마을넷과 마을활력소가 운영되고 있음



<그림 3-7> 서울시 지역공동체 지원기관

- 서울시 지역공동체 지원사업은 지역공동체의 형성정도 및 역량·특성 등에 따라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 사업의 주민제안제를 원칙으로 주민 네트워크 모임인 마을넷을 통한 자율적 주도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지원방식 단계는 씨앗기, 새싹기, 성장기로 구분하며, 씨앗기는 모임형성을 지원하고, 새싹기는 실행을 지원, 골목·공간 등을 지원, 성장기는 마을계획 수립 및 실행 등을 지원하고 있음

<표 3-14> 서울시 지역공동체 관련 지원체계

구분	내용	
조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8.3.22.] [서울특별시조례 제 6851호, 2018.3.22., 타법개정]
전담부서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중간지원조직	광역 중간지원조직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2012년 8월설립)
	기초 중간지원조직	25개 자치구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1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 2018년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민간네트워크	25개 자치구 마을넷	
지원방식	주민의 준비정도에 맞추어 주민모임 형성, 실행, 마을계획 수립 지원 등의 단계를 통해 맞춤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씨앗기(모임형성지원) • 새싹기(실행지원, 골목·공간 지원) • 성장기(마을계획 수립·실행 지원)
주요사업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계획 수립지원 • 공동체 사업을 이끌어갈 마을활동가 양성 • 10분 거리에 주민 커뮤니티 공간 구축(마을) • 주민이 주도하는 커뮤니티 활동 지원 • 마을경제 활성화 지원 	
주요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지원사업과 서울마을센터 지원사업, 자치구 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 • 지역공동체 사업의 주민제안제 원칙 • 市 주도방식에서 자치구 마을생태계(자율운영 체계) 조성을 위한 자치구 지원조직운영, 자치구공모사업, 소통체계마련 등을 위한 市지원 • 마을활력소(거점형 공동체 공간) • 주민 네트워크 모임인 마을넷을 통한 자율적 주도방식 채택 	

참고 : 제1기 서울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제2기 서울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서울시는 2012년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8년 제2기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지역공동체의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선두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2012년 기본계획에서는 “마을사람 키우기”와 “마을살이 함께하기”, “마을지향적인 민·관협력 만들기”를 전략과제로 지역공동체관련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18년 제2기 기본계획에서는 “마을공동체의 성장과 생활자치 활성화”를 목표로, ① 연대와 협력의 경험축적, ② 일상의 민주주의 실현, ③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 축적, ④ 주민중심 민·관 협력 체계구축을 전략과제로 선정하였음

<표 3-15> 서울시 지역공동체 기본계획 과제 및 전략

구분	과제	전략
2012년 1기 기본계획	마을사람 키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적 마을활동가 육성 • 청년의 활력과 역량 활용 • 여성의 활동과 역량 강화
	마을살이 함께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께 사는 재미가 있는 공동체 문화육성 • 이웃 돌봄 활성화 • 마을경제 활성화 • 에너지 절감마을 조성
	새로운 민·관협력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주도의 민·관협력체계 구축 • 현장밀착형 마을인프라 구축 • 마을지향 행정시스템 정착
2018년 2기 기본계획	연대와 협력의 경험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 참여자 확대 다양화 • 교육을 통한 정책 공감대 확산
	일상의 민주주의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회 설립 지원 • 주민자치회 권한책임 강화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 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 자원 확보·축적 촉진 • 공동체 전문가 양성배치 •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강화
	주민중심 민·관협력 체계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자치 통합지원체계 구축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연계 • 사회문제 해결형 모델 발굴·제시

- 서울시는 현장중심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市주도방식에서 자치구 자율운영 체제로 전환하였으며, 자치구 중간지원조직운영을 비롯하여 자치구 공모사업, 소통체계 마련 등 민·관 협력구조를 위해 최대 4억원을 자치구에 지원함(2018, 서울시,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운영은 자치구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회 사업을 지원하고 민간 위탁형으로 전환하여 인력을 확대함
 - 마을공동체 사업을 자치구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통·폐합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찾동 사업과 연계하여 동 단위 마을생태계 환경을 조성하였음
 - 자치구 운영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동 네트워크 기반을 조성·구축하여 소통체계를 마련함

□ 추진사업

- 서울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에 의하면 ①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계획 수립 지원, ② 공동체 사업을 이끌어갈 마을활동가 양성, ③ 10분 거리에 주민 커뮤니티 공간 구축, ④ 주민이 주도하는 커뮤니티 활동 지원, ⑤ 마을경제 활성화 지원으로 5개년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하였음
 -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계획수립 지원 : 주민 스스로 자신의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공적 의제 발굴)을 찾아내고 마을계획 수립에 필요한 컨설팅 및 비용을 지원, 마을계획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전문가 등 인력 지원
 - 공동체 사업을 이끌어갈 마을 활동가 양성 : 종합지원센터에 마을아카데미 과정(무료교육)을 신설하여 마을활동가를 양성하는데 청년 마을활동가, 여성은퇴시니어 마을활동가로 구분하여 추진함
 - 10분 거리에 주민 커뮤니티 공간 구축 : 주민들이 모이고 소통하기 위한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 지원(ex. 북카페, 마을예술 창작소, 청소년 休카페, 녹지 공간, 작은 도서관, 공공시설 유휴 공간 등)
 - 주민이 주도하는 커뮤니티 활동 지원 : 주민 스스로 육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돌봄 공동체를 위한 지역주민 재능기부와 돌봄 공간 인프라 구축 및 운영비 지원 (ex. 작은 공동체 활동지원, 부모커뮤니티 사업지원,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정책 추진)

- 마을경제 활성화 지원 :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협동 조합적 원리를 적용한 마을공동체 기업¹⁵⁾을 지원(씨앗기, 창업기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마을공동체기업 플랫폼 등록)
- 서울시 지역공동체 관련 사업은 ‘서울시 지원사업’과 ‘서울시 마을센터지원사업’, ‘자치구 자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지역공동체 사업은 주민제한제를 채택하고 있음
- 지원방식은 주민의 준비정도에 맞추어 ‘주민모임 형성’, ‘실행’, ‘마을계획 수립 지원’ 등의 단계를 통해 맞춤형 지원하고 있음

<표 3-16> 서울시 지역공동체 관련 지원방식 및 지원사업

구분	내용	
지원 방식	주민의 준비정도에 맞추어 주민모임 형성, 실행, 마을계획 수립 지원 등의 단계를 통해 맞춤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씨앗기(모임형성 지원) • 새싹기(실행지원, 골목·공간 지원) • 성장기(마을계획 수립·실행 지원)
지원 사업	서울시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새싹기) •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 마을예술 창작소 지원사업(새싹기) •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씨앗기) •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새싹기) •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새싹기) • 마을기업 육성사업(새싹기)
	서울마을센터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기금 사업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주민참여 지원사업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활력소 조성사업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계획 사업(성장기) • 마을과 학교 연계사업 상생지원 • 대학과 지역사회 연계사업
	자치구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공동체 주민제한 공모사업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계획 사업(市연계)

15) 마을공동체 기업 : 5인 이상의 출자와 협동조합적 정관을 가진 기업

- 행정의 파트너로서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행정과 주민이 지역의 문제와 해법을 고민하고 정책 설계 과정부터 공론장을 고민하던 마을공동체 사업을 결합하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사업’(이하 찾동 마을사업)을 실시함
- ‘찾동 마을사업’은 기초적인 주민참여의 경험을 쌓는 ‘주민참여 지원사업’과 ‘마을기금’을 실행하고 ‘마을계획’과 ‘마을활력소 사업’은 공동체 활동 경험과 의지가 높은 일부 동에서 실행함
 - ‘찾동 마을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마을공동체 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낮은 진입 통로의 역할을 했으며, 사업이 끝난 후에도 자생적으로 주민모임을 지속하거나 다음 마을 지원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가는 계기가 됨
 - 또한 ‘마을기금’사업을 통해 새로운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및 주민들이 모금의 방식과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와 결정을 통해 마을의 자산을 축적하는 경험을 쌓음
 - ‘마을계획’은 여러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마을의제를 발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마을활력소’는 동주민센터 공간을 주민들 마을공동체 활동의 거점공간으로 개선하게 되었으며, 공간 개선 후 주민주도로 자율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표 3-17>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사업

구분	내용
찾동 주민참여 지원사업	뜻이 같은 주민을 모으고 공동체 활동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쌓는 기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찾동 마을기금	발굴된 마을주민 가운데 주민운영위원회를 꾸리고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벌일 씨앗자금을 모으는 기금모금 사업
찾동 마을계획	두 사업을 통해 많은 경험과 네트워크를 쌓은 주민들이 골목을 벗어나 행정동이라는 더 큰 마을단위로 ‘마을 계획단’을 꾸리고 지역에 필요한 일과 문제를 발굴하고 시급성 등을 따져 마을의 중·단기 계획을 세우는 일
찾동 마을활력소	주민과 행정이 만나 ‘민·관참여단’을 꾸려, 마을활동을 마음껏 펼칠 지역의 사랑방을 찾아 꾸미고 운영하는 것

참고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백서(2012-17)

- 서울시 자치구 마을교육은 일반주민과 마을사업지기, 마을지원활동가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음
 - 일반주민 대상교육은 마을공동체 인식확산 및 마을사업 연결을 촉진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며, 찾아가는 마을학교 및 자치구 마을아카데미 교육 등이 있음
 - 마을사업지기(마을리더) 대상교육은 마을사업을 통한 주민과 모임의 성장과 모임에서 지역으로 인식과 활동범위 확장을 목표로 마을사업지기 선정자교육, 마을사업지기 역량강화교육 마을리더 교육 등이 있음
 - 마을지원 활동가 대상 교육은 마을사업지원을 위한 실무역량강화 및 지역 사회 활동가로서의 성장촉진을 목표로 마을지원 활동가 양성교육 및 마을지원 활동가 간담회 등이 있음

<표 3-18> 서울시 자치구 마을교육 주요내용

대상	목적과 목표	교육강좌 예시
일반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공동체 인식확산 • 마을사업 연결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마을학교 • 자치구 마을아카데미
마을사업지기 (마을리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사업을 통한 주민과 모임의 성장 • 모임에서 지역으로 인식과 활동범위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사업지기 선정자 교육 • 마을사업지기 역량강화교육 • 마을리더 교육
마을지원 활동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사업지원을 위한 실무역량강화 • 지역사회 활동가로서의 성장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지원활동가 양성교육 • 마을지원 활동가 간담회

참고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백서(2012-17)

□ 지원절차

- 지역 주민 누구나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 연중 주민제안방식 지원절차를 마련하고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받으며, “찾아가는 마을 상담”제도를 통해 제안서 작성·접수를 지원하고 있음
 - 주민들이 사업신청을 하면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실무자 및 시·구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통해 마을의 커뮤니티 정도, 필요한 지원 판단

지원절차	내 용	추진주체	
		서울시 사업	자치구 사업
I 사업계획 수립· 공고 ↓	1) 운영위원회 구성 및 간담회 2) 계획수립·공고	시 사업부서 마을사업지기 사업부서 중간지원조직	자치구 마을팀 구 중간지원조직
II 마을상담 ↓	1) 신청자에 대하여 상담, 교육, 사업계획 수립 등 지원	시 사업부서 사업부서 중간지원조직	자치구 마을팀 구 중간지원조직
III 제안서 접수 ↓	1) 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seoulmaeul.org) 일반 접수 2) 시/자치구 담당부서 담당자 접수 처리	- 접수 : 마을사업지기 - 접수 처리 : 시·자치구 마을팀 - 시스템관리 : 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IV 심사/선정 ↓	1) 심사계획 수립 및 심사선정심의회 구성 2) 선정심사 3) 선정결과 및 향후 추진일정 공고	시 사업부서 사업부서 중간지원조직	자치구 마을팀 운영위원회
V 협약 보조금 교부 ↓	1) 선정자 워크숍 2) 제안서 수정 및 검토 3) 협약 4) 보조금 교부	시 사업부서 자치구 사업부서 마을사업지기	자치구 마을팀 마을사업지기
VI 사업실행 ↓	1) 지원사업 추진 2) 현장 모니터링 및 실행 컨설팅	마을사업지기 시 사업부서 사업부서 중간지원조직	마을사업지기 자치구 마을팀 구 중간지원조직
VII 결과보고 평가	1) 정산 및 결과보고 2) 행정과 주민 상호평가	마을사업지기 시 사업부서 자치구 사업부서	마을사업지기 자치구 마을팀 구 중간지원조직

<그림 3-8> 서울시 지역공동체 사업 지원절차

참고 : 2018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2018)

- 서울시 지역공동체 사업 지원절차는 사업계획 수립·공고를 통해 마을상담, 제안서 접수, 심사·선정, 협약 보조금 교부, 사업실행, 결과보고평가 순으로 진행됨
 - (지원사업별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마을공동체 사업의 계획부터 평가까지 주민의 정책 결정권한을 강화하고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견인하기 위해 마을사업지기 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해 실제 마을사업지기가 사업을 수행한 경험을 정책으로 안착하기 위해 지원사업별 운영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
 -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사업별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 수립 발표
 - (마을상담 및 사업설명회) 사업 설명회¹⁶⁾를 통해 마을공동체 사업 관심자들이 현장에서 의제를 발전시키고, 마을 상담은 찾아가는 마을상담과 사전 컨설팅으로 구분되며, 지원사업 담당부서 및 실행주체(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사업부서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신청 가능하고, 함
 - (제안서 접수) 제안서는 씨앗기, 새싹기, 성장기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제한 자격은 거주지역 혹은 생활권역이 서울시인 주민모임 3인 이상 또는 단체
 - (심사 및 선정) 심사는 면접/현장/제안자 참여 심사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하는 1차 심사와 보조금심위원회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2차 심사로 진행되며, 심사기준은 사업의 타당성(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공익성),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사업 현실성, 자발적 주민참여, 예산 현실성, 민·관 파트너십)임

16) 공고문 보다 자세한 안내를 함으로 주민들의 이해도 제고

<표 3-19> 서울시 지역공동체 지원사업 심사방법

구분	1차 심사	2차 심사
방식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자율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 • 현장¹⁷⁾ • 제안자참여¹⁸⁾ 	보조금심의위원회 ¹⁹⁾
市 사업	서울시(사업부서)에서 진행하며 필요시 자치구 및 중간지원조직 협조	서울시(사업부서)에서 진행
區 사업	자치구에서 진행	자치구 단위 진행(예외적으로 서울시 사업부서 진행)

참고 : 2018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2018)

- (협약 및 보조금 교부) 제안서를 수정 및 검토²⁰⁾한 후 자치구(사업부서)와 마을사업지기 간 협약을 체결하고 선정자 워크숍개최 및 마을공동체 회계 교육, 보조금을 교부함
- (사업실행단계) 사업실행단계에서는 열린마을강좌를 수강하도록 하며, 컨설팅을 지원함

17) 공간골목 지원 사업의 경우 현장심사가 필수이며 현장 심사 후 최종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공간지원사업(신규)의 시설비는 건축사, 목수 등 전문가의 협력을 통해 지원금액 결정

18) 행정과 전문가의 일방적인 심사방식을 지양하고, 주민이 직접 심사에 참여하여 서면평가의 한계를 개선하고 선정심사의 객관성 제고하며, 사업에 참여한 주민 스스로 사업에 대해 결정함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학습하고 주민간 연대를 통해 지역 네트워크 형성. 제안자 50%와 전문심사위원 30%, 공무원 20%을 합산한 100점 만점 기준의 채점방식 적용

19) 자치구는 원칙적으로 구 보조금 조례에 따라 자체 운영

20) 마을사업지기는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제안서 수정하고 자치구 및 자치구 중간지원조직과 협의하여 열린마을강좌 방법을 구체화하며, 사업예산 비목조정 및 집행계획을 구체화

<표 3-20> 서울시 지역공동체 지원사업 사업 실행단계

구분	배경 및 취지	운영방식	교육내용
열린마을 강좌	주민모임의 마을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높여 협동의 가치 학습 사업지원조직은 주민모임의 필요에 맞는 교육 계획지원 기존의 마을공동체 이해 필수교육은 다양한 주민의 교육에 대한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기 어려움	교육필수 사업은 동일 하나 내용은 주민이 주제를 선정할 수 있음 일반 강의형, 토론형, 현장 탐방형 등 주민모임 및 마을공동체 성격에 맞게 진행	마을공동체 이해 제안사업 관련 분야 심화교육 마을탐방 및 마을공동체 체험 의제 발굴 워크숍 및 소규모 포럼 등 토론형
컨설팅 지원	사업별 목표 및 성과를 확인하고 사업실행의 안정성 확보 마을사업지기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개별사업의 공공성 지향	개별 컨설팅	컨설팅의 목적 공유 및 내용을 주민과 함께 결정하고, 모임평가로 진행하여 주민모임이 자체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촉진자 역할
		집합 컨설팅	정기적 마을사업지기 네트워크 운영(전체, 권역 등)

참고 : 2018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2018)

- (결과보고 및 평가) 센터시스템(홈페이지)를 통해 개별사업 결과보고를 실시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의 정보를 아카이빙(archiving)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주민 상호평가를 실시함

<표 3-21> 서울시 지역공동체 지원사업 사업 결과 보고 및 평가

구분	내용	
개별사업 결과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업로드를 통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의 정보 아카이빙 •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결과보고까지 경로 일원화 	
행정-주민 상호평가	마을공동체 사업 개별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 결과를 통해 개별사업의 성과 및 목표 달성 여부 확인 • 상호평가를 통해 주민으로부터 지원내용 및 정책 발의 될수 있도록 하고 행정은 이를 검토하여 개선사항 적용
	외부전문가 평가(사업부서가 구성한 외부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지원사업의 성과 및 효과성에 대하여 외부인의 관점에서 평가 • 개별사업 종료이전 현장방문 직접 평가 등

참고 : 2018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2018)

□ 주체별 역할

- 서울시 지역공동체 지원사업의 주체는 지역공동체 담당관(행정-전담부서)와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 시 사업연계부서, 자치구 사업연계부서, 자치구 중간지원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지역공동체 담당관에서는 부서별 지역공동체 사업을 연계·조정하며, 사업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 및 평가 등 컨트롤 타워 기능을 담당하고, 복합적인 주민제안사업을 지원함
 - 시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행·재정적 사업지원, 사업별 중간지원조직을 선정 관리함
 - 자치구 사업부서에서는 시 사업부서와 사업을 협력 및 전달체계 역할을 수행하며, 효율적인 사업집행 관리(모니터링 등)을 수행함
 - 광역 중간지원조직은 주민제안 접수창구로써, 서울시 부서별 지역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고, 사업 추진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함
 - 자치구 중간지원조직은 자치구 사업부서와 협력하여 공모사업을 상담·심사·모니터링을 하며, 마을지원 활동가 교육 및 관리를 수행함

<표 3-22> 서울시 지역공동체 지원사업 주체별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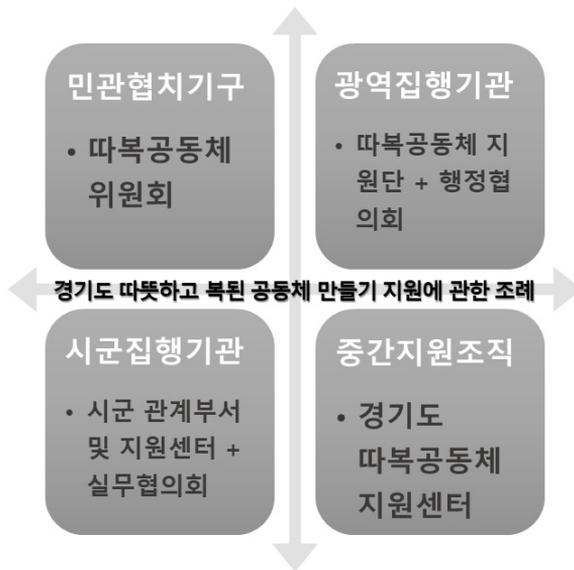
사업주체	주체별 역할
지역공동체 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서별 마을공동체 사업연계 조정 • 사업에 대한 수시모니터링 및 평가 등 컨트롤 타워 기능 • 복합적인 주민제안 지원(커뮤니티 공간, 주민활동)
광역중간지원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제안 접수창구 • 서울시 부서별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 사업추진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시 사업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별 사업계획 수립 • 행·재정적 사업 지원 • 사업별 중간지원조직 선정 관리
자치구 사업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사업부서와 사업협력과 전달체계 • 효율적인 사업 집행 관리(모니터링 등)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 사업부서와 협력 • 공모사업 상담, 심사, 모니터링 지원 • 마을지원 활동가 교육 및 관리

참고 : 2018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2018)

2. 경기도 지역공동체관련 제도 및 지원체계 분석

□ 지원체계

-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도적 기반으로 민·관 협치기구인 따복공동체 위원회와,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으로 “경기도 따복공동체 지원센터”을 설립하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거버넌스 체계로서 따복공동체 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사업계획 수립 및 정책협의 등을 수행함
- “경기도 따복공동체 지원센터”는 경기도에서 설립하고 민간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따복공동체 위원회에서 수립한 사업의 세부계획을 수립·실행하고 있음
- 광역집행기관인 따복공동체 지원단과 행정협의회에서는 시·군 집행기관을 지원하고 시·군 단위 중간지원조직의 육성하고 인큐베이터를 파견하여 지원하고 있음
-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은 17개 시·군에 설치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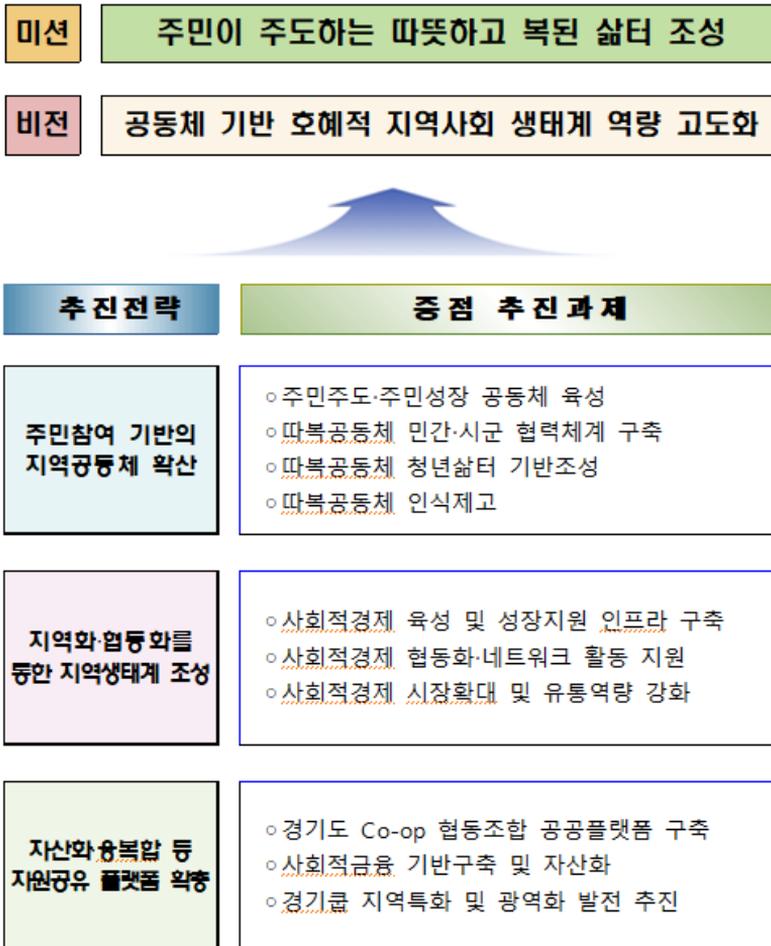
<그림 3-9> 경기도 지역공동체 행정지원체계

- 경기도는 주민(개인)이 자기 삶의 주체로서 등장하는 마을공동체 인큐베이팅 시스템으로서 주민제안공모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계획/마을의제 수립지원, 전략의제 지원, 시·군 단위 네트워크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음
- 또한 기존 풀뿌리 시민사회 활동가 이외의 마을활동가(주민리더)에 대한 지원과 인력풀을 넓히기 위한 각종 교육과 인력풀을 구축하고 있음

<표 3-23> 경기도 지역공동체 관련 지원체계

	내용	
조례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3.3.] [경기도조례 제4860호, 2015.3.3., 전부개정]
전담부서	따복공동체 지원단	
중간지원조직	광역 중간지원조직	경기도 따복공동체 지원센터
	기초 중간지원조직	17개 시·군 지원센터
기본계획	따복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민간네트워크	따복공동체 위원회	
지원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과 마을, 사회적경제를 잇는 통합적 대안모델로써, 상향식활동을 위한 주민조직화를 지향하고 주민요구에 따른 맞춤형 활동 지원 	
주요사업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 활성화 지원 : 실행계획 수립, 사업비 지원 • 컨설팅지원 : 참여 심사 및 사전 워크숍 통한 공동체 사전진단, 공동체 활동분야에 대한 전문 컨설팅 지원 등 • 교육지원 : 공동체 역량강화 위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한 공동체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희망분야 교육이 필요한 공동체를 대상으로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주요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제안 공모사업 운영 • 마을계획/마을의제 수립지원, 전략의제 지원, 시·군 단위 네트워크 사업 등 • 기존 풀뿌리 시민사회 활동가 이외의 마을활동가(주민리더)에 대한 지원과 인력풀을 넓히기 위한 각종 교육과 인력풀을 구축 • 중간지원센터에 의한 현장밀착형 컨설팅 지원 및 신청 공동체별 멘토 배정(1:1) • 공동체별 특성에 따른 지원방식 선택/병행지원(ex 컨설팅+교육+견학, 컨설팅+견학, 컨설팅+교육) • 사회적경제분야와 지역공동체 통합 운영 관리 	

- 경기도 기본계획에 의하면 “공동체 기반 호혜적 지역사회 생태계 역량 고도화”를 비전으로 ① 주민참여 기반의 지역공동체 확산, ② 지역화·협동화를 통한 지역생태계 조성, ③ 자산화·융복합 등 자원공유 플랫폼 확충을 추진전략으로 지역공동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림 3-10> 경기도 따복공동체 비전 및 추진전략

참고 : 2017, 경기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추진사업

- 경기도는 추진사업으로 ① 공동체 활성화(사업비지원 등)과 ② 컨설팅 지원, ③ 교육지원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음
 - 공동체 활성화사업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하며, 총괄책임자 및 전문가그룹 구성하여 진단 및 주민참여 실행계획 수립, 중간지원센터에 의한 최대 12회의 현장밀착형 컨설팅 지원하며, 컨설팅 및 활성화 계획 실행 지원함
 - 컨설팅 지원사업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하며 공동체 진단 및 지원분야를 선정하며, 공동체 수요에 따른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 분야 컨설팅을 지원함
 - 교육 지원사업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하며 수요파악 및 교육계획을 수립, 공동체 수요에 따른 다복지원센터 교육 및 희망교육을 지원함
- (공동체 활성화) 공동체 활성화 주민주도 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비 지원하는 것으로 기 확보된 주민편의 공간, 특화자원 등을 활용하여 공동체 활동21) 프로그램 운영 지원

<표 3-24> 경기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세부 추진내용

구분	내 용	
공동체 활성화 지원	실행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심사 및 사전워크숍을 통한 공동체 사전진단 및 제안서 작성 • 공간을 활용한 공동체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 • 현장방문 및 선진지 견학을 통한 아이템개발 확장 • 공동체별 특성에 따른 진행방식 선택/병행지원 - 예시) 컨설팅+교육+견학, 컨설팅+견학, 컨설팅+교육
	사업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립된 실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지원- 예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축제 기획 등, - 필요시 전문가멘토 지원 및 자원연계방안 제안

참고 : 2016, 다복공동체 응복합사업 시행계획

- (컨설팅지원) 공동체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단체는 컨설팅을 지원함

21) 커뮤니티 공간, 공동작업장 등을 활용하여 육아, 교육, 복지, 문화, 일자리, 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 사업 내용으로는 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조직진단 및 아이템 발굴 컨설팅, ② 사회적경제 진입을 위한 준비사항 및 전환절차 컨설팅, ③ 공동체 조직유형이 사회적경제기업인 경우 성장을 위한 컨설팅 등을 수행함

<표 3-25> 경기도 컨설팅 지원 세부 추진내용

구분	내 용	
컨설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심사 및 사전 워크숍 통한 공동체 사전진단 • 공동체 활성화 위한 조직진단 및 아이템 발굴 컨설팅 지원 • 공동체 활동분야에 대한 전문 컨설팅 지원 등 • 사회적경제 진입 위한 준비사항 및 전환절차 컨설팅 - 공동체 조직유형이 사회적경제기업인 경우 성장을 위한 컨설팅 	현장방문 컨설팅

참고 : 2016, 따북공동체 융복합사업 시행계획

- (교육지원) 공동체 역량강화 위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한 공동체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희망분야 교육이 필요한 공동체를 대상으로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공동체 운영 및 구성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원하며, 그 외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교육 등을 지원함

<표 3-26> 경기도 교육지원 세부 추진내용

구분	내 용	
전문가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통합 ‘터 무늬학교’ • 학습촉진자 교육인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 등 	
희망분야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육아· 작은 도서관 등 공동체 특성을 반영한 ‘맞춤교육’ 	

참고 : 2016, 따북공동체 융복합사업 시행계획

□ 지원절차

- 경기도는 경기도 및 시·군 홈페이지, 센터 홈페이지 사업신청 안내문 공지하고 따복공동체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받으며, 지원센터는 경기도 지원단에 신청한 공동체의 자격 검토를 요청하고, 지원공동체 오디션을 통해 선정함
- 지원사업을 신청한 지역공동체에게는 1:1 멘토를 배정하여 제안서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진단컨설팅을 지원함
- 지역공동체의 제안서 발표 심사방식은 주민참여심사와 전문가심사를 병행하고 지원대상 및 지원분야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함
- 선정된 공동체는 사전워크숍을 통해 공동체별 전문가를 1:1 매칭하여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지역공동체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전문가의 현장방문 원칙을 통한 컨설팅 및 교육·진행내용 점검 등을 지원하고, 지역공동체 지원 종료 후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및 교육 이후 활동계획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사업 종료 후 공동체별 현장네트워킹을 통한 자원공유 및 사업결과 공유, 연계자원 및 사후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파티(결과보고)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 전담 책임 컨설턴트는 사업 완료보고서를 지원센터에 제출함

<표 3-27> 경기도 따복공동체 지원사업 지원절차

사업절차	내 용
사업안내 ('16.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9개 실국 14개 사업 등을 통해 기 조성된 공동체(주민모임) 사업 신청 안내 • 시·군 관련부서 협조공문 및 공동체별 사업안내문 발송(지원단) • 경기도 및 시·군 홈페이지, 센터 홈페이지 사업신청 안내문 공지
신청공동체 신청·접수 ('16.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신청서 접수(공동체→지원센터(온라인)) • 신청한 공동체의 자격 검토 요청(지원센터→지원단) - 기 조성된 공동체 여부 및 '16년 신규지원 여부 확인
지원공동체 선정(오디션) ('16.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공동체 필참(미참석시 심사 및 선정배제) • 신청 공동체별 멘토 배정(1:1) 및 제안서 작성(신청공동체와 멘토 협의) • 제안서 발표 및 심사(주민참여심사+전문가심사 방식) • 지원대상 및 지원분야 선정(평가위원회) • 지원 미선정 공동체에게도 진단컨설팅 기회 제공
사전워크숍 ('16.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 공동체 참석(공동체별 최대 3명) • 공동체별 전문가 매칭(1:1) 통한 사업 추진계획 수립 - 선정 공동체가 주도하는 추진계획 수립을 코칭 지원 • 사업실행계획서 작성 및 공유
사업진행 ('16. 8~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별 사전워크숍 통해 수립된 사업추진(3개 분야) - 전문가 현장방문 원칙(컨설턴트 및 강사) • 지원 종료 후 지속적인 활동 위한 실행계획 수립 및 교육 이후 활동 계획 수립 등 • 사업 실행계획 변경시 사전승인(공동체→지원센터(평가위원회))
모니터링 ('16. 8~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추진 과정에 현장 점검(진행내용 점검 등) • 후속 사업 연계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결과보고 (네트워크파티) ('16.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결과 공유 • 공동체별 현장네트워킹을 통한 자원공유 • 연계자원 및 사후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결과보고 점검 ('16.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책임 컨설턴트→지원센터)
평가 ('16.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족도 조사 실시

참고 : 2016. 따복공동체 융복합사업 시행계획

□ 주체별 역할

- 경기도 지역공동체 지원사업의 주체는 도 따복공동체 지원단(행정·전담부서)와 따복공동체 지원센터(광역 중간지원조직), 도 사업연계부서, 시·군 사업연계부서, 시·군 중간지원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따복공동체지원단에서는 지역공동체 융·복합사업 계획 수립 및 행정지원을 담당하고 도 및 시·군 마을사업 연계 부서에 융·복합사업 홍보를 협조, 공동체에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함
 - 도 및 시·군 마을사업 관련부서에서는 부서별 지역공동체에 융·복합사업 홍보 및 공동체에 추천하고, 부서별 공동체 현황조사 등 자료를 협조함
 - 중간지원조직에서는 지역공동체 관련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를 담당하고, 신청자 접수 및 공동체 진단(오디션), 사업 추진, 모니터링, 분기별 실적보고, 정산 및 결과보고 등의 역할을 수행함

<표 3-28> 경기도 따복공동체 지원사업 주체별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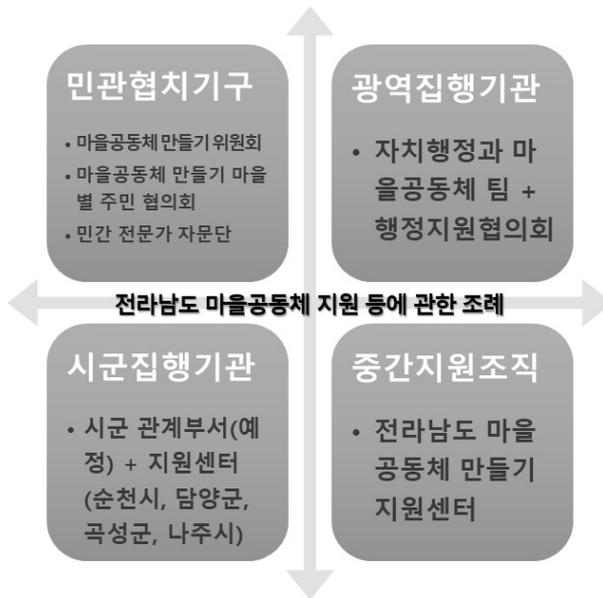
주체	역할	
도 따복공동체지원단	행정지원 및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복공동체 융·복합사업 계획 수립 및 행정지원 • 도 및 시·군 마을사업 연계 부서에 융·복합사업 홍보 협조, 공동체에 안내
도 및 시·군 마을사업 관련부서	홍보 및 자료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서별 ‘마을공동체’에 융·복합사업 홍보 및 공동체 추천 (도·시·군 관련부서) • 부서별 공동체 현황조사 등 자료협조(시·군 → 도 연계부서 → 도 따복지원단) • 융·복합사업 선정 공동체 현장 안내(시·군 연계부서)
중간지원조직	사업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신청자 접수 및 공동체 진단(오디션) • 사업 추진, 모니터링, 분기별 실적보고, 정산 및 결과보고 등

참고 : 2016, 경기도 따복공동체 지원센터의 역할과 활동

3. 전라남도 지역공동체관련 제도 및 지원체계 분석

□ 지원체계

- 전라남도 지역공동체 사업은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기본 근거로 전라남도에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내 마을공동체팀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행정지원협의회를 운영하고 중간지원조직으로써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원하고 있음
- 중간지원조직으로는 광역단위로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단위로는 순천시와 담양군, 곡성군, 나주시 등에서 지역공동체 지원을 하고 있음
- 민·관 네트워크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와 마을공동체 만들기 마을별 주민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음
- 시·군 집행기관으로는 시·군에 전담부서 신설과 중간지원센터 설립을 계획 중에 있음



<그림 3-11>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체계

- 지역공동체 형성초기 및 역량 등을 기준으로 단계별 지원하며, 마을활동가를 모집·양성하여 지역공동체 지원사업의 씨앗단계부터 참여시켜 지속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있음
 - 또한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심사하는 주민참여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마을 주민들이 함께 수립한 마을발전종합계획에 따라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민·관 협치 토론, 민·관 협력 MOU 체결 등 민·관 협업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
 - 전라남도 내 22개 시·군의 마을공동체 중간지원기관 개설을 위한 지원 및 교육, 홍보, 마을정책,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관련 지원함

<표 3-29> 전라남도 지역공동체 관련 지원체계

	내용	
조례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7.7.6.] [전라남도조례 제4270호, 2017.7.6., 일부개정]
전담부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마을공동체팀)	
중간지원조직	광역 중간지원조직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만들기지원센터
	기초 중간지원조직	(4개 자치구) • 순천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 담양군 담양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 • 곡성군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 나주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이음
기본계획	2016년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민간네트워크	마을공동체만들기 위원회	
지원방식	지역공동체 형성초기 및 역량 등을 기준으로 한 단계별로 지원하며, 마을활동가를 씨앗단계부터 참여시켜 지속적인 관리	• 씨앗단계(마을자원조사, 주민교육, 선진지 벤치마킹, 소규모 사업지원) • 새싹단계(중규모 사업지원) • 열매단계
주요사업계획	• 민·관네트워크(민·관 네트워크활동, 광역네트워크활동, 청년네트워크 활동 등) • 돌맹이와 풀뿌리학교 • 공모사업 컨설팅 & 모니터링 • 민·관 협치 100인 원탁토론 및 민·관협력 MOU체결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마을학교 • 전남마을공동체 리더교육 및 활동가교육 • 지원기관 공유워크숍 • 찾아가는 설명회, 홍보활동, 공동체 홍보물품 제작, 벤치마킹, 워크숍 • 전남 마을공동체 한마당
<p>주요 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함께 심사하는 주민 참여제 도입 • 마을활동가를 씨앗단계부터 참여시켜 지속적인 관리 • 마을주민들이 함께 수립한 마을발전종합계획에 따라 공동체를 형성하고, 행정은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 지원방안을 마련 • 공모를 통해 주민교육과 공동체 사업을 자문할 마을활동가를 모집양성하고 마을리더를 양성 • 전라남도 내 22개 시·군의 마을공동체 중간지원기관 개설을 위한 지원 및 교육, 홍보, 마을정책,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관련 지원활동 • 민·관 협치 토론, 민·관 협력 MOU체결 등 민·관협업을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참고 : 2016,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안),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jnmaeul.kr>

- 전라남도 기본계획은 ① 민·관 지원체계 구축, ② 우리마을 지킴이 양성, ③ 지속가능한 공동체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민·관 지원체계 구축으로는 시·군전담부서의 설치, 지원 조례 규칙 제정, 민·관 지원체계 구축, 중간지원조직 설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이 있음
- 우리 마을 지킴이 양성에는 마을공동체 붐을 조성하고 리더를 양성함
- 지속가능한 공동체 육성에는 중소규모 공동체 육성을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축, 우수마을 콘텐츠 발굴 및 홍보 등이 있음



<그림 3-12>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비전 및 목표

참고 : 2016.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안)

- 지역공동체 지원사업의 추진방침으로는 ① 주민이 참여하고 주관하는 마을 공동체 육성, ② 공동체를 이끌고 갈 마을사람 키우기, ③ 공동체 사업은 ‘씨앗 → 새싹 → 열매’ 단계로 추진, ④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함께 심사하는 주민 참여제 도입, ⑤ 행정지원협의회를 통한 융·복합 지원체계 마련, ⑥ 기존 유사 센터 등과의 상호 협력 관계 형성으로 하고 있음

- 전라남도에서는 마을주민들이 함께 수립한 마을발전종합계획에 따라 공동체를 형성하고, 행정은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공모를 통해 주민교육과 공동체 사업을 자문할 마을활동가를 모집양성하고 시·군 추천을 통해 공동체 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갈 마을리더를 양성하며, 기존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함
 - 공동체사업은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처음 시행하는 마을(씨앗단계)과 씨앗단계를 거친 마을 중 역량있는 마을, 중앙 또는 도 공모사업이 종료된 마을 중 사업성도가 우수한 마을 등 단계별 지원을 추진하고, 마을활동가를 씨앗단계부터 참여시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음
 - 공모사업의 세부적 형태를 정하지 않고 주민들이 마을에 필요한 공동체 사업을 구상하여 제안하는 상향식 공모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참여 심사제를 도입하여 사업선정의 투명성 제고
 - 마을 공동체 사업이 지속가능하도록 행정지원협의회를 통한 융·복합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마을사업 종합 인큐베이터 기능을 실행하고 시·군 센터와의 역할정립을 통해 네트워크 구축 및 시·군 마을공동체 관리,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함
- 전남 지역공동체 사업은 씨앗, 새싹, 열매 단계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처음 시행하는 마을은 씨앗단계로, 씨앗단계를 거친 마을 중 역량있는 마을, 중앙 또는 공모사업이 종료된 마을 중 사업성도가 우수한 마을은 새싹단계, 새싹단계를 거친 마을 중 역량있는 마을은 열매단계로 지원을 받고 있음
- 단계별 지원을 통해 지원 금액의 차이뿐만 아니라 교육과 마을자원조사, 발전계획 수립 등의 차별성을 두고 있음



<그림 3-13> 전남 마을공동체 사업 단계별 지원

참고 :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jnmaeu.kr>

□ 추진사업

- 전라남도 지역공동체 사업은 크게 ① 민·관 네트워크 활동 및 ② 공모사업 기반구축, ③ 시·군 마을공동체 지원, ④ 교육 ⑤ 홍보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모를 통한 지역공동체 사업 시 마을리더 양성,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수료한 마을을 우선 선정하고, 미수료 마을은 마을활동가를 통해 교육을 실시함
- 민·관 네트워크 활동으로는 각 주체별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비롯하여, 지역의 모델구축을 위한 거버넌스형 사업(돌멩이와 풀뿌리 학교), 민·관 협치 100인 원탁토론 및 민·관 협력 MOU 체결, 전남 광주 공동체 상생 등이 있음
- 공모사업 기반구축으로는 공모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전문가 점검 및 컨설팅, 모니터링, 향후 정책수립을 위한 기본 DB 구축 등이 있음
- 시·군 마을공동체 지원으로는 전라남도 22개 시·군의 마을공동체 중간지원 기관 개선을 위한 지원 및 교육·홍보 등을 지원함

- 교육지원으로는 찾아가는 마을학교, 전남 마을공동체 리더교육, 전남 마을공동체 활동가교육, 지원기관 공유 워크숍 등이 있음
- 홍보지원으로는 찾아가는 설명회, 공동체 홍보물품 제작, 전남 마을공동체 한마당, 벤치마킹, 소식지발간, 사례집 발간, 아카이빙 등이 있음

<표 3-30> 전라남도 지역공동체 지원 프로그램

	구분	내용
민·관 네트워크 활동	민·관네트워크	민·관 워크숍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마을공동체, 마을만들기의 정책 공유와 주민, 전문가, 공무원 거버넌스형 마을공동체 구축
	민·관네트워크 활동	전라남도 내의 마을활동가, 마을주민, 중간지원기관 등이 함께 마을공동체와 마을만들기에 대한 의견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네트워크 강화
	광역네트워크 활동	마을만들기 관련 전국적인 광역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마을관련 정책관련 정보와 흐름 습득, 전국 마을넷, 한마연, 공동체한마당
	청년네트워크 활동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의 취지에 맞게 청년들의 마을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돌맹이와 풀뿌리학교	전라남도의 지역적 특성, 문화, 환경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모델구축을 위한 프로젝트. 마을소멸은 학교소멸이라는 등식과 위기의식의 문제점을 반영한 거버넌스형 사업진행
	민·관협치 100인 원탁토론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바탕으로 전라남도 전역의 마을공동체 활동의 활성화 및 풀뿌리 주민자치활동과 마을만들기의 방향성 점검
	민·관협력 MOU체결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협업이 필요한 기관 및 단체들과 MOU체결을 통하여 마을공동체 지속적인 활동 지원
	전남광주 공동체 상생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마을공동체 상생프로젝트를 통해서 한뿌리인 지역공동체간 협업과 상생모델구축 및 상호 인적·물적 교류확대
공모사업 기반구축	공모사업 컨설팅 & 모니터링	전라남도의 2017년~2018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전문가 점검, 컨설팅과 모니터링, 향후 전남의 마을공동체 사업과 정책수립을 위한 기본DB 구축
시·군 마을공동체 지원	시·군 마을공동체 지원	전라남도 22개 시·군의 마을공동체 중간지원기관 개선을 위한 지원 및 교육, 홍보, 마을정책,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관련 지원 활동

	구분	내용
교육	찾아가는 마을학교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의 단계별 성장을 위한 찾아가는 마을교육, 각 시·군의 교육수요 맞춤형시스템 구축
	전남마을공동체 리더교육	전라남도의 각 마을별 지도자를 마을공동체의 리더로 양성하고 향후 마을활동가로 발전 할 수 있는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전남마을공동체 활동가교육	마을공동체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주민갈등해소를 위한 의사소통기법 및 기획실무 교육과 활동가를 위한 마을인문학 등 성찰교육
	지원기관 공유워크숍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를 비롯한 도내 중간지원조직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실시
홍보	찾아가는 설명회, 홍보활동	도내 마을공동체 리더들(기존 및 잠재적)이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주도하는 지역리더 역량 강화 및 인재 양성
	공동체 홍보물품 제작	전라남도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의 역할 및 지원사업 등의 정보를 담은 홍보물을 제작 배포해 도민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전남마을공동체 한마당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어울림마당을 통해 마을공동체사업의 인식확산과 우수 사례 발표를 통한 공동체 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벤치마킹, 워크숍	마을공동체 관련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하여 중간지원기관과 전남 마을공동체팀 지원인력의 체계적 발굴과 성장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8,000개의 꽃, 소식지발간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및 마을별 소식, 활동가 소식, 전남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의 활동, 마을만들기의 주제별 이슈 수록
	사례집발간, 아카이빙	전라남도의 마을공동체사업 사례를 조사, 발굴하여 마을공동체 운동의 확산 및 공감대 형성. 향후 사업을 위한 아카이빙 자료 구축

참고 : 전라남도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http://www.jnmaeul.kr>

지원절차

- 전라남도는 전라남도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를 통해 제안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상담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자치행정과(마을→시·군→도)에서 사업제안서를 접수받고 있음

- 지역공동체 사업의 심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2차 발표심사의 경우 주민참여 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대상마을을 선정하고 있음
- 지역공동체 지원사업의 집행 및 회계교육, 사업평가는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를 통해 추진하고 있음

<표 3-31>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추진절차

사업절차	내 용	담 당
연간 사업계획 발표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제안 방법, 제출서류, 심사선정 절차, 사업 평가 및 정산방법 등 • 도, 시·군 홈페이지, 신문 등에 홍보 	자치행정과
↓		
사업제안서 작성 및 상담 (2~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상담 • 제안서 작성에 관한 지원(사업 계획 수립, 사업비 산정 및 예산서 작성) 	지원센터
↓		
사업제안서 제출 및 접수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제안서 제출(마을→시·군→도) • 사업제안서 접수 	자치행정과
↓		
심사선정 및 회계 교육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서류 심사(제출서류 등 확인) • 2차 발표 심사(주민참여 심사제) • 대상 마을 선정(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심의) • 집행 및 회계교육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 만들기위원회 지원센터
↓		
사업비 지원 및 집행 (4~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교부(도→시·군→마을) • 민·관 협력체제 구축 • 집행과정 법적예산 절차 컨설팅 	도, 시·군 지원센터
↓		
사업 정산 및 평가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산서 제출 및 정산(마을→시·군→도) • 사업평가 	자치행정과 지원센터

참고 : 2016.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안)

- 전라남도는 지역주민이 지역공동체 지원사업을 위해 ① 공동체를 형성하고, ② 워크숍 또는 분야별 전문가 참여, 주민역량교육 등을 통한 공동체 학습, ③ 마을을 견학하여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한 현장학습, ④ 마을자원조사, ⑤ 마을계획수립, ⑥ 단체설립, ⑦ 사업시작의 순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 지역공동체 지원사업은 6단계인 단체설립 단계 후에 행정기관의 공모사업에 참여가 가능함
-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에서는 공동체 학습과 현장학습, 마을자원조사, 마을계획 수립 작성, 모니터링 등을 지원함



<그림 3-14>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절차

참고 : 2016,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안)

□ 주체별 역할

- 전라남도 지역공동체관련 사업의 주체별 역할을 전라남도 자치행정과와 지원센터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전라남도 자치행정과에서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고, 중소기업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에서는 교육·자문·민간네트워크 구축 등 사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함

<표 3-32> 전라남도 지역공동체 사업 주체별 역할

사업주체	주체별 역할
전라남도 자치행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마련 • 중소규모 공모사업 추진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과 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자문·민간네트워크 구축 등 • 지역공동체 사업의 인큐베이터 역할 수행 • 마을공동체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주민교육(주민설명회 등 포함) • 마을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및 마을리더 양성 아카데미 운영 •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컨설팅(활동가 연계, 마을자원조사, 주민 역량교육,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 지원 등) • 마을공동체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참고 : 2016.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안)

제3절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전략도출

1. 충북 여건 및 지역공동체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 충북 현황 및 여건을 분석하고, 지역공동체 현황을 바탕으로 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Opportunities(기회), Threats(위협)의 4가지 상황별, 요인별로 분석하여 전략을 수립하고자 함

<표 3-33> 충북 여건 및 지역공동체 SWOT 분석

<p>강점(Strength)</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중심지로서 높은 접근성과 교통물류의 중심지 등 탁월한 입지조건 • 차세대 국가 성장 동력 산업의 허브화가 가능 • 청정 환경이 비교적 잘 보전되어있으며, 다양한 자원분포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충북의 강한 의지 • 충북 행정국에 지역공동체과 신설을 통한 지역공동체 집중 지원 가능 	<p>약점(Weaknes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부처 지원을 받는 지역공동체수에 비해 자생적으로 운영되는 지역공동체수 미비 • 타 자치단체에 비해 매우 낮은 지역공동체 사업운영 • 마을의 구체적인 분포자료, 의식조사자료, 주민의견자료 조사체계 부재 • 지역공동체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미흡(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원기관 부재) • 지역공동체관련 교육·홍보 프로그램 미흡
<p>기회(Opportun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시작되고 대도시권과 근접, 청정 환경 등으로 인구 이주 증가 전망 • 생활밀착형 및 지역경제발전 지역공동체 활동에 주민의 높은 관심 • 지역공동체가 주도하는 풀뿌리 내생적 발전의 필요성 증가 • 지역공동체 및 사회적경제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 증가 • 지역공동체 사업의 전국적 확산일로 	<p>위협(Threa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아율 저하와 노령화 심화로 핵심생산가능인구 급격하게 감소 • 권역간·지역간 격차문제가 매우 큰 양상을 보이며 과소화 현상 • 도시쇠퇴 양상(노후 건축물, 사업체수 감소, 인구감소 등) • 마을리더 및 운영체, 네트워크 부족 • 지역공동체에 대한 주민의 참여, 인식 부족

- 충북 현황 및 지역공동체의 강점요인(S)을 부각시키고 기회요인(O)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고려해야 함
 - 첫 번째, 높은 접근성 등의 탁월한 입지조건을 살린 지역경제를 도모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와 사회적경제를 결합한 지역공동체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해서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 향상을 도모해야 함
 - 두 번째, 청정 환경과 다양한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여 차별화된 지역공동체 사업을 육성해서 지역공동체가 주도하는 내발적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임
 - 세 번째, 국내 지역공동체 성과창출로 인한 확산기반을 기반으로 충북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촉진함
- 약점요인(W) 및 위협요인(T)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고려해야 함
 - 첫 번째,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역공동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민·관 협치를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 두 번째, 지역공동체가 자립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립하고,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지역공동체 지원사업 종료 후의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 도모 필요
 - 세 번째,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식개선 교육 및 설명회 등을 마련하여 지역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역주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강점요인(S)을 부각시키고 약점요인(W)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 첫 번째,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충북의 강한의지와 지역공동체과를 통한 지역공동체에 집중 지원이 가능한 강점을 최대한 살려 주체 간 역할분담 제고 및 지원체계 조성 등 지역공동체+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것임
 - 두 번째, 지역공동체가 지역에 안착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정비하고,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원기관 확립, 마을활동가 육성으로 지역공동체 활동이 지역문제해결에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기반 조성 필요

- 세 번째, 지역주민·지역공동체와 협력을 통한 지역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공동체의 참여와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지원체계 플랫폼 구축
- 기회요인(O)을 적극 활용하고 위협요인(T)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 첫 번째, 권역간·지역간 격차해소를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공동체에 의한 마을조사 및 마을의제를 발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 및 지역공동체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 두 번째, 공무원 인식개선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확산일로에 있는 지역공동체 중앙정부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활용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세 번째, 지역공동체가 단기적 지원사업에서 탈피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시각의 접근이 요구됨

<표 3-34> 충북 여건 및 지역공동체 SWOT 분석을 통한 전략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e0e0e0;">SO</th> </tr> <tr> <td style="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와 사회적경제) 지역공동체 프로그램 개발·보급→지역주민 관심과 참여 향상 • 청정환경과 다양한 자원 활용 극대화→ 차별화된 지역공동체 사업 육성→지역공동체가 주도하는 내발적 발전 도모 •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주민의 이해와 참여 촉진 </td> </tr> </table>	S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와 사회적경제) 지역공동체 프로그램 개발·보급→지역주민 관심과 참여 향상 • 청정환경과 다양한 자원 활용 극대화→ 차별화된 지역공동체 사업 육성→지역공동체가 주도하는 내발적 발전 도모 •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주민의 이해와 참여 촉진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e0e0e0;">SW</th> </tr> <tr> <td style="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간 역할분담제고 및 지원체계 조성 → 지역공동체+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 법적 기반 정비,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원기관 확립, 마을활동가 육성→지역문제해결에 원동력 기반 조성 • 지역주민·지역공동체와 협력한 지역 인적·물적 자원 최대한 활용→지역공동체의 참여와 의견 적극 반영한 지역공동체 지원체계 플랫폼 구축 </td> </tr> </table>	S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간 역할분담제고 및 지원체계 조성 → 지역공동체+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 법적 기반 정비,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원기관 확립, 마을활동가 육성→지역문제해결에 원동력 기반 조성 • 지역주민·지역공동체와 협력한 지역 인적·물적 자원 최대한 활용→지역공동체의 참여와 의견 적극 반영한 지역공동체 지원체계 플랫폼 구축
S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와 사회적경제) 지역공동체 프로그램 개발·보급→지역주민 관심과 참여 향상 • 청정환경과 다양한 자원 활용 극대화→ 차별화된 지역공동체 사업 육성→지역공동체가 주도하는 내발적 발전 도모 •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주민의 이해와 참여 촉진 						
S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간 역할분담제고 및 지원체계 조성 → 지역공동체+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 법적 기반 정비,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원기관 확립, 마을활동가 육성→지역문제해결에 원동력 기반 조성 • 지역주민·지역공동체와 협력한 지역 인적·물적 자원 최대한 활용→지역공동체의 참여와 의견 적극 반영한 지역공동체 지원체계 플랫폼 구축 						
⇕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e0e0e0;">OT</th> </tr> <tr> <td style="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과 공동체에 의한 마을조사 및 마을의제를 발굴→지역 및 지역공동체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공무원 인식개선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지역공동체 중앙정부 사업을 적극 홍보·활용 • 단기적 지원사업에서 탈피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시각의 접근 </td> </tr> </table>	O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과 공동체에 의한 마을조사 및 마을의제를 발굴→지역 및 지역공동체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공무원 인식개선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지역공동체 중앙정부 사업을 적극 홍보·활용 • 단기적 지원사업에서 탈피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시각의 접근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e0e0e0;">WT</th> </tr> <tr> <td style="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과 지역공동체의 참여 기반의 지역공동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 거버넌스 구축→민·관 협치를 위한 체계마련 • 지역공동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확립→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 도모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식개선 교육 및 설명회→지역공동체 인식 제고→지역주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모색 </td> </tr> </table>	W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과 지역공동체의 참여 기반의 지역공동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 거버넌스 구축→민·관 협치를 위한 체계마련 • 지역공동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확립→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 도모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식개선 교육 및 설명회→지역공동체 인식 제고→지역주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모색
O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과 공동체에 의한 마을조사 및 마을의제를 발굴→지역 및 지역공동체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공무원 인식개선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지역공동체 중앙정부 사업을 적극 홍보·활용 • 단기적 지원사업에서 탈피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시각의 접근 						
W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과 지역공동체의 참여 기반의 지역공동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 거버넌스 구축→민·관 협치를 위한 체계마련 • 지역공동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확립→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 도모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식개선 교육 및 설명회→지역공동체 인식 제고→지역주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모색 						

2. 지역공동체관련 제도 및 지원체계 시사점

□ 지원체계

- 지역공동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를 살펴본 결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의 기본구성요소는 ① 지역공동체 관련 조례 제정, ② 광역집행기관으로써 전담부서 신설 및 역할 제고, ③ 기초집행기관으로서 자치 시·군·구 관계부서(전담부서), ④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 ⑤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 ⑥ 민·관 협치기구 등임
- 지역공동체 관련 조례는 지역공동체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로서 지역공동체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함
 - 지역공동체 관련 조례에는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시행계획, 행정협의회, 전담부서, 주민협의회, 운영위원회, 중간지원센터, 마을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그 외에도 서울시는 마을공간(마을활력소 및 마을배움터), 충남은 연구모임, 인력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충북의 경우 주민협의회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이 없음
- 지역공동체 전담부서는 지역공동체 사업을 통합 지원하고 행정체계를 확립 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자치단체에서 지역공동체 전담부서 운영은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각광받고 있음
 - 실제로 서울시와 경기도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공동체 전담부서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지원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충북은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나, 역할분담 제고를 통해 전문성을 함양하고 지원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많은 자치단체에서 중간지원조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조정·지원하며, 전문적인 안내자 혹은 조력자, 매개자, 교육자 등의 지역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광역중간지원조직을 주축으로 25개 구의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을 지원·관리하고 있으며, 체계를 확립하여 지역공동체 활동을 시단위에서 자치구 단위의 활동으로 추진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 운영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주요 기능 및 역할을 살펴보면 크게 ① 사업지원 및 운영, ② 교육, ③ 상담, ④ 연구, ⑤ 홍보 및 사례 확산, ⑥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⑦ 활성화기반 구축, ⑧ 인력양성, ⑨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등임
 - 충북은 기본계획에 의하면 중간지원조직 설립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례분석을 통해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제고하고 지역공동체 지원체계의 축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행정과 지역공동체, 전문가 등 상호협력과 연계를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관협력기구가 마련되어야 하며, 협력적 거버넌스의 긴밀한 소통과 활성화 정도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
 - 지방자치단체 조례상에는 지역공동체위원회가 명시되어 있으며, 그밖에도 서울시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마을넷 등이 있음
 - 충북은 지역공동체위원회를 조례상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와 마을넷과 같은 민관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추진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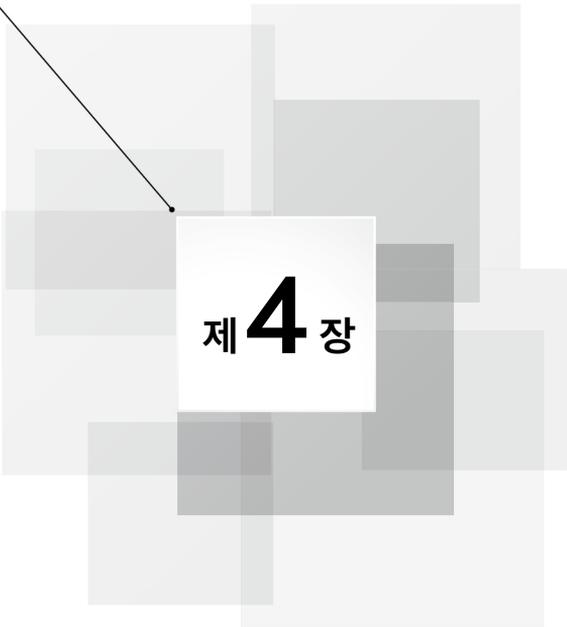
- 지역공동체 지원사업의 단년도 예산·지원방식은 지역공동체의 역량과 이해가 고려되지 않아 일회성 부산물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지역공동체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방식이 요구되고 있음

- 서울시와 경기도, 전라남도의 경우 지역주민의 준비정도 및 형성, 역량, 특성 등에 따라 단계별 맞춤형 지원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특히 충북은 지역간 편차가 매우 크며, 지역공동체의 특성 및 형성정도도 매우 상이한 특성을 고려할 때 단계별 맞춤형 지원방식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에 충북 단계별 맞춤형 지원방식 채택 시 다분히 금액의 차이를 넘어 각 지역공동체 단계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지역공동체 사업이 주민참여, 역량형성부터 사업 계획수립 사업실행 및 투자 등 몇 년이 소요되는 긴 과정일 수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임
- 지역공동체관련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와 경기도, 전라남도는 주민제 안제를 채택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지역공동체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음
- 서울은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커뮤니티 공간 구축 부문, 마을경제 활성화부문, 커뮤니티 활동 부문 등을 지원하고 특히 찾동 마을사업을 통해 주민이 정책 설계과정부터 공론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 경기도는 마을계획/마을의제 수립지원, 전략의제 지원, 시·군 단위 네트워크 사업 등과 공동체 활성화,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하고, 마을활동가 및 전문가인력풀을 통한 연계 지원하고 있음
 - 전라남도는 민관네트워크 활동 및 주민에 의한 마을계획 수립을 통해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공모사업 기반구축, 민관네트워크 활동기반 지원, 지역공동체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교육으로는 일반주민, 마을리더, 활동가 교육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경기도의 경우 공동체 특성을 반영한 희망 교육 분야 교육을 통한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음
- 경기도는 마을활동가 및 전문가의 인력풀을 구축하여 1:1 매칭 연계 지원하고 있으며, 전라남도는 마을활동가를 모집·양성하여 주민교육과 지역공동체 사업의 전과정 밀착·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특히 전라남도의 경우 지역공동체 지원사업 선정 시 마을리더 양성,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수료한 마을을 우선 선정하고 있음

□ 지원절차

- 서울시 지역공동체 지원절차를 살펴보면 연중 주민제안방식 지원절차를 마련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받으며,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실무자 및 공무원의 현장조사를 통해 지원을 판단하고, 찾아가는 마을상담 제도를 통해 제안서 작성·접수를 지원하고 있음
 - 선정 후에는 워크숍 개최 및 회계교육을 통해 사업을 실행하며, 사업 실행 후에는 열린 마을 강좌 수강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음
- 경기도는 지원사업을 신청한 지역공동체에 1:1 멘토를 배정하여 제안서 작성부터 진단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선정 후에는 전문가를 통한 1:1 매칭 사업추진계획 수립을 지원함
 - 지역공동체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전문가의 현장방문 원칙을 통한 컨설팅 및 교육·진행내용 점검 등을 지원하고, 지역공동체 지원 종료 후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및 교육 이후 활동계획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사업 종료 후 공동체별 현장네트워킹을 통한 자원공유 및 사업결과 공유, 연계자원 및 사후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파티(결과보고)를 추진함
- 전남은 공동체 형성 후, 공동체 학습→현장학습→마을자원조사→마을계획 수립→단체설립을 통한 지원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에 마을활동가를 씨앗단계부터 참여시켜 지속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있음
 - 마을주민들이 함께 수립한 마을발전종합계획에 따라 공동체를 형성하고, 행정은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제 4 장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방안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방안

KRILA

제 4 장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방안

제1절 기본방향

- 충북의 지역적 특성과 지역공동체 여건을 반영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충북 지역공동체 생태계 기반을 조성해야함
- 이를 위해서는 첫째, 법·제도적 기반마련, 둘째, 지원체계의 체계화, 셋째, 협력적 거버넌스, 넷째, 자치역량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지역공동체 지원사업을 접근해야 할 것임



<그림 4-1> 충북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 첫째,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주체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토대로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됨
 - 지역공동체가 불필요한 제약없이 원활하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 조례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광역단위의 지역공동체 지원조례를 뿐만 아니라 시·군 차원의 지원조례가 요구됨
 - 충북은 지역공동체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지역공동체 지원사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지역공동체가 정착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시·군차원의 지원조례 재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임
 - 또한 지역과 공동체의 수준과 역량을 고려한 지역공동체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명회, 포럼, 간담회 등 주민과 공동체가 지역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임
 - 그 외에도 전담부서의 역할제고, 충북 시·군 전담부서 신설 등을 통해 전문화된 지원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것임
- 둘째, 지역공동체가 단기적 사업에서 탈피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공동체 맞춤형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체계화해야 함
 - 지역공동체 사업은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형성 및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으로써 공동체 특성상 단기적 성과가 창출되기 어려우며,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으로 지역공동체의 요구와 필요 등을 고려한 지원체계를 확립해야 하며, 지원체계의 전문화 및 체계화가 요구됨
 - 아울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체제를 통한 환류로 지역공동체 사업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활동으로 확산·발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셋째, 지역공동체 사업이 단순한 물리적 사업이 아닌 지역공동체가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함
 - 지역공동체 사업은 지역과 사람을 중심으로 한 연대와 협력이 중요한 요소로써 행정과 민간, 전문가, 중간지원센터, 지역단체 등의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 협력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중간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중간지원센터를 컨트롤타워로서 각 주체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지역공동체의 수준과 역량 등을 고려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각종 자원을 지원 혹은 연계해야 할 것임
 - 또한 행정협의회, 주민협의회, 지역공동체 운영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시·군차원의 행정과 민간, 공동체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해 당사자간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 협력, 갈등 예방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넷째,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지역사회 활력을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및 학습 등이 선행되어야 함
 - 지역공동체 사업은 전문적인 식견과 지역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지 않으면 활동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복력 있는 지역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학습이 전제되어야 함
 - 지역공동체는 기본적인 교육과 학습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상담 및 컨설팅을 통해 원활한 지역공동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그러한 지역공동체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 사업 계획부터 주민과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 전 지역공동체 필수 공동체 교육과 찾아가는 마을강좌, 1:1 전문가 멘토링, 마을활동가 양성 등을 운영할 수 있음

제2절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방안

1. 법·제도적 기반마련 : 조례 제·개정

- 충북도내 기초자치단체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제·개정
 - 지역공동체관련 지원조례는 지역에서 지역공동체를 발굴·육성하고 지역공동체로 하여금 역량·자치력을 고취시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근거로써 반드시 제정·운영되어야 함
 - 충북 지역공동체 사업 추진의 행·재정적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 충북 지역공동체 지원조례는 2018년 현재 제정되어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는 음성군과 증평군, 청주시, 영동군, 충주시 5곳에서 제정하여 시행중으로 45%의 매우 낮은 조례 제정율을 보이고 있음
 - 충북도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며,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조례를 보완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할 것임
 - 음성군과 증평군, 청주시는 마을공동체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충주시의 경우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로 중앙부처의 개별사업에 한정하는 것으로 볼 소지가 있으며, 영동군의 경우 마을공동체에 대한 정의가 없음
- 충북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개정
 - 충북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지역공동체가 정착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조례의 세부적인 부분의 개정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충북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에서 기본계획과 전담부서,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사업지원, 지원신청, 평가 및 포상,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 구성, 중간지원센터 등을 개정하고 주민협의회와 마을발전계획,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사업 선정 등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표 4-1> 충북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개정(안)-개요

구분	내용
제1장 총칙	목적, 정의, 기본원칙, 주민의 권리와 의무, 도지사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장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마을공동체 활성화 전담부서 지정 및 역할,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설치·운영, 마을발전계획, 주민협의회, 모니터링단 운영 , 사업지원, 지원사업 선정 , 평가·보상, 사업비의 환수, 준용
제3장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 회의, 위원의 제적·기피·회피, 관계 부서 등의 협조, 수당과 여비
제4장 다양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등	지원센터의 설치, 지원센터의 기능, 관리 및 운영, 지도·감독, 위탁계약 해제 등, 시행규칙
부칙	-

- (기본계획) 충북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방안의 기본방향은 체계적인 지원 체계와 자치역량강화를 통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체계의 확립과 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며, 자치역량강화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기본계획은 지역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사업의 정책방향과 종합발전계획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충북 지역공동체 지원조례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와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이 요구됨
- 또한 지역공동체 사업을 주민에 의한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 주민의 자치역량을 향상시켜야 할 것임

<표 4-2> 충북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개정(안)-기본계획

지원조례	지원조례 개정(안)
<p>제7조(기본계획)</p> <p>① 도지사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방향 2.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종합발전계획 3. 다양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운영 4. 마을공동체 활성화 협의회 구성·운영 5.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6. 그 밖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p>③ 기본계획 수립 시 충청북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7조(기본계획)</p> <p>① 도지사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방향 2.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종합발전계획 3. 다양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운영 4. 마을공동체 활성화 협의회 구성·운영 5.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6.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7. 마을공동체 활성화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p>③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필요시 전문가 자문이나 전문기관에 의뢰한다.</p>

- (전담부서) 충북 지역공동체 지원조례에는 전담부서 지정 및 역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역할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없어 전담부서의 세부적인 역할에 대한 규정이 요구됨

<표 4-3> 충북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개정(안)-전담부서

지원조례	지원조례 개정(안)
<p>제9조(마을공동체 활성화 전담부서 지정 및 역할)</p> <p>① 도지사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p>	<p>제9조(마을공동체 활성화 전담부서 지정 및 역할)</p> <p>① 도지사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p> <p>②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p>

지원조례	지원조례 개정(안)
② 전담부서는 충청북도 내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관련 정책 수립 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관련 부서와 협력 및 조정 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관련 부서와 협력 및 조정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6. 시·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7. 마을공동체 모니터링단 운영 및 지원 8.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에 필요한 사항

- (주민협의회) 충북 지역공동체 지원조례상에는 주민협의회에 대한 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주민협의회는 지역과 지역공동체사업에 대하여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협의체로서 법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표 4-4> 충북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주민협의회

지원조례 개정(안)-신설
제10조의1(마을공동체 활성화 주민협의회 구성·운영) 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회는 주민회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협의회장을 둔다. ③ 주민협의회는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 사항은 마을별로 정한다. ④ 주민협의회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마을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한다. ⑤ 도지사는 제출한 발전계획에 대하여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 (마을발전계획) 마을발전계획은 지역주민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지역을 잘 아는 지역주민에 의한 계획을 통해 지역을 발전시키고 주민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마을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표 4-5> 충북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마을발전계획

지원조례 개정(안)-신설
제10조의2(마을단위 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 등) ① 마을주민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단위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발전계획 수립과 운영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주민자치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마을단위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마을공동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에서는 마을공동체 간사 또는 사무장을 채용·운영할 수 있다.

- (사업지원) 충북은 시·군의 지역공동체 및 지역발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자치적으로 지역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역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시·군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 구축의 지원을 비롯하여 마을단위 발전계획 수립 지원, 마을공간 지원 등이 요구되고 있음

<표 4-6> 충북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사업지원

지원조례	지원조례 개정(안)
제11조(사업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지역 환경 보전 및 개선 3.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 사업 4. 마을공동체 복지 증진 5. 지역 문화예술 및 역사 보전 6.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교육·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및 교육·연구 조사 7.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1조(사업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지역 환경 보전 및 개선 3.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 사업 4. 마을공동체 복지 증진 5. 지역 문화예술 및 역사 보전 6.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교육·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및 교육·연구 조사 7.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군 중간지원조직 구축 및 활성화 8.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 9. 마을공간 지원 10.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지원사업 선정)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원사업을 선정하는데 사업선정심의위원회 등이 요구되고 있으며, 실제로 충북에서는 사업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위원회에 대한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4-7> 충북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지원사업 선정

지원조례 개정(안)-신설
제12조의1(지원사업 선정) ① 도지사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업선정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충청북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선정심의회의는 주민대표, 관련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세부적인 구성 및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 (평가 및 포상) 충북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이 행정의 일방적인 사업 지원방식이 아닌 주민과 함께 계획하고 주민의 의견과 지역적 특성 등을 반영하고 주민의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원사업의 분석평가에서도 시민 또는 관련단체 등을 평가과정에 참여할 것을 제안함

<표 4-8> 충북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평가 및 포상

지원조례	지원조례 개정(안)
제13조(평가·포상) ① 도지사는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평가·포상) ① 도지사는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시민 또는 관련단체 등을 평가과정에 참여 시킬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분석과 평가의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모니터링단) 충북은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환류를 통해 지역공동체 활동을 개선·발전하여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확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모니터링단 제도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혹은 공공근로 사업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통해 실시할 수 있음

<표 4-9> 충북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모니터링단

지원조례 개정(안)-신설
제13조의1(모니터링단 운영) ① 도시사는 충북 지역공동체 활성화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마을공동체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시사는 모니터링 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구축하고 그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③ 모니터링단의 모니터요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충북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만 20세 이상의 도민 중에 위촉한다. ④ 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2. 마을공동체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사안 발굴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 구성)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한 기구으로써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사무를 담당하고 주도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가 요구됨

<표 4-10> 충북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 구성

지원조례	지원조례 개정(안)
제1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업무담당 국	제1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지원조례	지원조례 개정(안)
<p>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p> <p>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지역별,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p> <p>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p> <p>2. 마을공동체 관련 전문가</p> <p>3. 주민대표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p>	<p>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지역별,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이</p> <p>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p> <p>2. 마을공동체 관련 전문가</p> <p>3. 주민대표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p> <p>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업무과장으로 한다.</p>

- (중간지원센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공동체 관련 중간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공동체를 집중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해서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및 육성, 마을공동체 자원관리, 시·군 중간지원센터 및 네트워크 지원 등의 중간지원센터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표 4-11> 충북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중간지원센터

지원조례	지원조례 개정(안)
<p>제26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p>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p> <p>2. 마을만들기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p> <p>3. 주민 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p> <p>4. 마을만들기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지원</p> <p>5. 마을만들기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p> <p>6. 마을만들기 관련 교육·자문·연수·박람회·세미나·사례현장 국내외 견학 지원</p> <p>7.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p>	<p>제26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p>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p> <p>2. 마을만들기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p> <p>3. 주민 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p> <p>4. 마을만들기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지원</p> <p>5. 마을만들기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p> <p>6. 마을만들기 관련 교육·자문·연수·박람회·세미나·사례현장 국내외 견학 지원</p> <p>7.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및 육성</p> <p>8. 마을공동체 자원관리</p> <p>9. 시·군 중간지원센터 및 네트워크 지원</p> <p>10.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p>

2. 지원체계의 체계화 : 충북 지역공동체 지원체계 구축

□ 충북 지역공동체 지원체계

- 충북 지역공동체 지원체계는 지역공동체가 주민주도적 지역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하게 유지·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방향은 ① 협력적 네트워크, ② 주민참여 여건 조성, ③ 사업 전과정 상담·컨설팅 및 교육·학습 지원, ④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⑤ 차별화된 공모방식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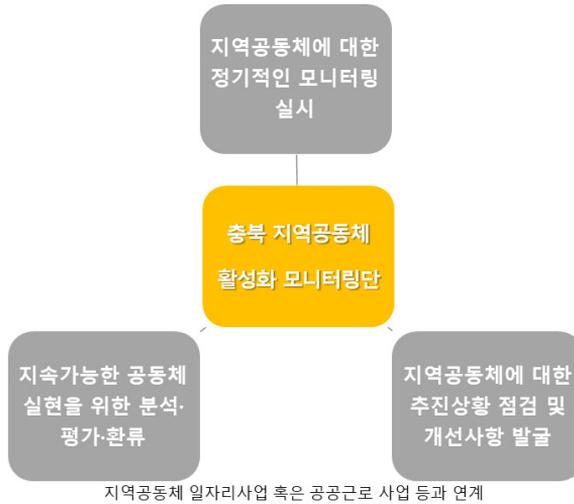
<그림 4-2> 충북 지역공동체 사업 지원체계 추진방향

- (협력적 네트워크) 충북 지역공동체 지원체계는 충북 중간지원센터를 구심점으로 충북 전담부서와 행정협의회, 공동체위원회, 전문가 자문단, 시·군 지원센터, 시·군 전담부서, 시·군 네트워크단체 등과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야 할 것임



<그림 4-3> 충북 지역공동체 지원체계

- (주민참여 여건 조성) 충북은 지역공동체 사업을 행정주도형 사업추진을 지양하고 중간지원센터와 지역주민, 공동체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대등한 위치에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 (사업 전과정 상담·컨설팅 및 교육·학습 지원) 충북 지역공동체 지원체계는 사업의 공모단계부터 사업 전과정에 걸친 교육 및 학습, 상담·컨설팅을 지원하여 지역공동체의 자치역량강화와 학습공동체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단기적 성과위주의 평가체제가 아닌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데이터베이스화 및 환류를 통해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단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지원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임
 - 충북 지역공동체 활성화 모니터링단 : ① 지역공동체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② 지역공동체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사항 발굴, ③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그림 4-4> 충북 지역공동체 활성화 모니터링단 운영

- (차별화된 공모방식 채택) 지역공동체가 주도적으로 마을의제를 발굴하고 마을계획을 통해 지역공동체 수준·여건을 고려하고 공동체의 특성·필요성에 근거한 차별화된 공모방식(정기공모, 수시공모, 특별공모)을 선택·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일반적인 공모방식의 지원사업 이외에 “지역공동체 학습공동체 지원” 및 “지역공동체 공간지원” 등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동을 위해 지역공동체 스스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표 4-12> 충북 지역공동체 지원사업 공모유형

정기공모	수시공모	특별공모
매년 일정한 공모기간을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통상 1년 단위로 한정	일정한 공모기간 없이 주민과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주민사업제 안방식으로 상담 및 컨설팅을 통해 수시로 신청하여 추진	사업의 특성에 따라 연차별 계획을 추가하여 다음연도에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

- 충북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전담부서의 역할을 살펴보면 ① 계획 및 정책수립, ② 네트워크 구축, ③ 지원센터 및 시·군 지원, ④ 사업공고 및 홍보, ⑤ 모니터링단 운영, ⑥ 마을공간 지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계획 및 정책 수립) 5년 단위로 실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함
 - (네트워크 구축) 전담부서에서는 행정협의회 및 공동체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중간지원센터 및 각종 협의체, 지역공동체와의 협력·조정 등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해야 할 것임
 - (지원센터 및 시·군 지원) 광역 중간지원센터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비롯하여, 시·군 중간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시·군의 지역공동체 전담부서가 신설될 수 있도록 권고해야 함
 - (사업 공고 및 홍보) 지역공동체 지원사업의 계획공고 및 홍보를 담당하고, 지역공동체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개선 및 홍보를 위해 각종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해야 함
 - (모니터링단 운영) 지역공동체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지역공동체 활동의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사항을 발굴·환류 할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할 것임
 - (공간 지원) 지역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이 필요한 지역공동체에 대해 마을공간을 지원하여 공동체 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표 4-13> 충북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관별 역할제고

충북 지역공동체 전담부서	계획 및 정책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지역공동체 활성화 관련 정책 수립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군 지역공동체 관련 부서와 협력·조정 • 행정협의회 구성 •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 구성 • 시·군 지역공동체 전담부서 지정 권고
	지원센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공동체 중간지원센터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 시·군 중간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

	사업 공고 및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공동체 지원사업 계획 공고 및 홍보 지역공동체 지원사업 설명회 및 간담회
	모니터링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공동체 모니터링단 운영
	마을공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공간 지원
공동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공동체관련 심의 및 자문 	
행정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사업을 담당하는 충청북도 및 시·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심의 및 자문 	
지원사업 선정 심의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공동체 지원사업 선정·평가·분석 	
기초 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 지역공동체 시행계획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관련 정책 수립 도/시·군 지역공동체 관련 부서와 협력·조정 지역공동체 전담부서 지정 시·군 중간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 지역공동체 사업 계획 공고 및 홍보 지역공동체 사업 설명회 및 간담회 	
충북 지역공동체 중간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공동체 상담 및 컨설팅 제안서 작성에 관한 지원 지역공동체 교육 기초 및 심화 과정 등 운영 충북 지역공동체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지역공동체 지원사업의 기초조사 및 지역자원조사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지원 시·군 네트워크 지원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역공동체 관련 교육·자문·연수·박람회·세미나·사례현장 국내외 견학 지원 지역공동체 활동가 발굴 및 육성 시·군 중간지원센터 설치 운영 지원 	
시·군 네트워크 (마을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의제 수립 및 지역공동체 지원 	
주민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 지역공동체 사업 계획 및 지원 	
전문가 자문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공동체 사업 선정 공동체 분석 및 자문 지역공동체 사업 분석평가 	
모니터링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공동체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지역공동체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사안 발굴 	

□ 충북 지역공동체관련 사업 추진절차

- 충북 지역공동체관련 사업의 절차는 사업계획 수립·공고 → 마을상담 및 교육 → 제안서 접수 → 심사·선정 → 사업비 및 회계 교육 → 사업 실행 → 결과보고·평가의 순으로 추진함

<표 4-14> 충북 지역공동체관련 사업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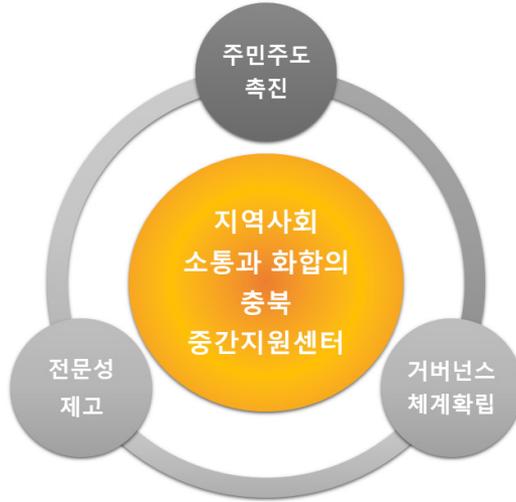
사업절차	내 용	추진주체
사업계획 수립·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협의회 구성 및 간담회 • 공동체 위원회 구성 및 간담회 • 계획수립(사업제안 방법, 제출서류, 심사·선정 절차, 사업평가 및 정산방법 등) • 계획 공고 및 홍보(도, 시·군, 중간지원센터 홈페이지, 신문 등) • 지역공동체 사업 설명회 및 간담회, 포럼 • 충북 지역공동체 전문가 자문단 구성 • 충북 지역공동체 모니터링단 모집·교육 • 주민모임 및 학습공동체 지원 	도 사업부서
마을상담 및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상담 신청 공동체에 대한 상담 및 교육 • 주민제안사업 상담 • 제안서 작성에 관한 지원(사업 계획 수립, 사업비 산정 및 예산서 작성) • 지역공동체 교육 : 기본 및 일반, 심화과정 운영 • 지역공동체 마을리더 및 컨설턴트 과정 운영 • 지역공동체 토론회 및 세미나, 포럼 등 운영 	도 사업부서 중간지원센터
제안서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 지역공동체 활성화 중간지원센터 홈페이지 일괄접수(조건 : 지역공동체 기초교육 필수이수) • 도/시·군 전담부서 담당자 접수·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사업부서 (접수처리 총괄) • 중간지원센터 (시스템 관리)
심사·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계획 수립 및 심사선정심의회 구성 • 1차 서류심사 • 2차 공동체 발표심사(주민참여 심사제에 적용) 	도 사업부서

- 지역공동체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역공동체는 지역공동체 교육 기본과정을 필수 이수할 수 있도록 함
- (제안서 접수) 지역공동체 사업은 지역공동체 기초 교육과정을 이수한 공동체에 한해 충북 중간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일괄 접수
 - 접수된 지역공동체는 시·군 전담부서에서 1차 자격요건 검토를 거쳐, 도 전담부서에서 최종 접수 확인
- (심사·선정) 심사계획을 수립하고 심사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서류심사와 2차 공동체 발표심사를 통해 지역공동체 사업 대상자 선정
 - 단 2차 공동체 발표심사는 주민참여 심사제에 적용
- (사업비 및 회계 교육) 지역공동체 관련 사업에 선정된 지역공동체에는 전문가 자문단과 1:1 매칭 지원하여 지역공동체 진단을 통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역공동체에 필요한 각종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네트워크 지원)
 - 또한 중간지원센터를 통한 사업의 집행과정 및 회계교육 등 지원
- (사업 실행) 지역공동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모니터링단을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중간지원센터를 통한 실행 컨설팅 지원
- (결과보고·평가) 사업 종료 후 지역공동체는 결산서 제출 및 정산, 만족도 조사, 사후관리방안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군에 제출
 - 제출한 결과는 전문가 자문단에 의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공동체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데이터는 충북 전담부서에서 자료 구축 및 환류

3. 협력적 거버넌스 : 중간지원조직 설립 및 역할제고

- 지역공동체 정책이 복잡하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고, 관주도의 정책을 탈피하여 주민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를 이끌어 주민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과 관의 역할과 파트너십이 요구됨

- 지역공동체 정책은 지역의 문제를 주민의 욕구와 필요에 의해 주민주도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활력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관 주도하에서는 실현되기 어려움
- 민관협력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중간 매개자 없이 지역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중간지원조직은 적극적인 유대와 네트워크를 통해 대면적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의 연대와 협업을 이끌어 냄
- 지역사회에서의 적극적인 유대와 네트워크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성을 지닌 영역과의 네트워크가 활발해지면서 효율적이고 유연한 방식과 사고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또한 네트워크의 확립은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민주적 거버넌스가 향상되고 더 많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사회에 연대와 협업을 이끌어 내며, 행정의 서비스를 더욱 용이하게 함
- 이에 충북 중간지원센터 설립은 ① 주민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주민주도 촉진, ② 거버넌스 체계 확립, ③ 지역 맞춤형 전문성 제고를 주요 전략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민간 주도형태(위탁방식)의 조직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주민주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설명회를 비롯하여 세미나, 포럼, 공론장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며, 교육·학습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리빙랩 등과 같은 다양한 연구모임을 지원하여 지역주민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할 것임
-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민·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전문가를 비롯하여 다양한 단체(조직)과의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며, 지역주민과 지역공동체에서의 모임 혹은 네트워크를 지원해야 할 것임
- 지역 맞춤형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간지원센터내 지원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며, 센터 내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 및 다양한 전문가 단체와의 협약체결을 통해 전문성을 함양해야 할 것임



<그림 4-5> 충북 지역공동체 중간지원센터 전략

- 충북도 지역공동체 지원센터설립에 있어서 공동체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간 일부 유사한 기능을 가지는 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설립할 것인지, 각각의 독립된 지원센터로써 설립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충북도의 경우에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지역공동체 지원센터를 지역공동체 사안에 한정하여 전문적인 경험과 성과를 축적하는 것을 지향하고, 향후 지역공동체 지원센터의 경험과 성과가 축적된 후 사회적경제분야의 지원센터와 통합 및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 및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지역공동체는 지역주민에 의한 활동으로 사회적경제적 측면을 배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지역공동체 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는 그 특성상 다른 측면이 명확히 존재하는 바, 초기적 단계에서 지역공동체와 사회적경제 영역을 통합하여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경우 예기치 않은 업무영역간에 갈등이 존재할 수 있을 것임

- 생활공동체(지역공동체)와 경제공동체(사회적경제)라는 측면에서, 2가지의 다소 다른 성격을 가진 분야를 통합된 하나의 지원센터로 설립·운영할 경우, 상호간 협력이 용이하고, 융합적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인가의 관점에서 사안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임
- 이는 결국 하나의 지원센터안에 지역공동체와 사회적경제 분야를 둘 경우, 결국 조직내에 2개의 팀단위로 분리되어 운영될 것인데, 충북도와 같이 공동체 사업의 초기적인 단계에서는 지역공동체나 사회적경제 개별팀이 안착되고, 고유의 업무를 정착시키기에도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음
- 즉, 통합적 운영을 통한 시너지 효과나 협력은 고유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달했을 때, 그간의 일련의 경험과 역량이 어느 정도 성숙했을 때, 그나마 가능할 수 있을 것인데, 시기적으로 초기적 수준의 충북도가 지원센터를 설립할 경우에는 이러한 것을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지역공동체와 사회적경제 영역을 하나의 지원센터로 통합하여 설립 및 운영할 경우에는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경상비 및 기타 인건비 또는 기타 운영비의 일부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이러한 지역공동체 분야와 사회적경제 분야를 하나의 지원센터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의 따복공동체 지원센터인데, 초기 지역공동체 지원센터로 운영해 오다가, 사회적경제 분야를 추가하여 운영해 온 지난 2년 여간의 경험에 대해 내외부적으로 심도있는 논의와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경기도 수원시와 같은 경우는 최근 지역공동체와 사회적경제 분야 등 다양한 중간지원조직의 지원센터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수원지속가능도시재단의 형태로 출범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수원시의 경우 민선 5-6기의 지난 7-8년 동안의 지역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된 정책을 펼쳐왔던 경험과 성과에 기반해서 통합적 운영이 가능하고 융합적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현재 충북도가 지역공동체와 관련한 정책을 추진했던 지난 시기의 경험과 성과가 그리 높지 않은 상황에서는 2개의 지원센터를 분리하여 설립·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며, 향후 개별적 지원센터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일정한 경험과 성과가 축적되고 센터가 안착된 다음에 지원센터들의 통합 및 협력방안들을 논의하고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충북 지역공동체 중간지원센터의 조직은 지역사회와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을 중심으로 교육지원팀과 연구지원팀, 사업지원팀, 경영지원팀으로 구성하고 자문위원회를 둠
- 센터장 1인, 연구기획지원 3인, 교육지원 3인, 사업지원 3인, 경영지원 2인 등 총 12인 내외로 구성하되, 사업 영역 확대 및 시·군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조직 규모와 구성에 대한 조정 필요
-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각 분야별 전문가 채용
- 중간지원센터 자문위원회는 충북 공무원과 지역공동체 전문가 및 활동가, 중간지원센터 센터장, 중간지원센터 팀장 등으로 구성



<그림 4-6> 충북 지역공동체 중간지원센터 조직 구성도(안)

- 충북 지역공동체 중간지원센터의 조직 구성에 따른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음

<표 4-15> 충북 지역공동체 중간지원센터 업무 분장

구분	세부내용
센터장	업무총괄
연구기획지원팀	사업모델 발굴, 지역공동체 전수조사, 지역공동체 사업 기초조사, 지역공동체 자원관리, 마을활동가 양성 및 관리(인력 풀 구축), 전문가 자문단 관리, 전문가 인력 풀 구축, 전문가 및 단체 협력 MOU 체결(전문가 풀 구축),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협력지원, 모니터링 및 보고서 발간
교육지원팀	교육·학습 프로그램 운영(기초 및 심화 역량강화 교육, 공무원 교육, 마을활동가 교육 등), 세미나 및 정책 토론회 기획 및 운영, 상담 및 컨설팅 지원, 지역공동체 연수 및 박람회, 견학 등 지원
사업지원팀	정기 및 수시, 특별 공모 운영, 주민제안사업 운영,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지원, 시·군 중간지원센터 지원, 시·군 협력사업 추진, 도 및 시·군 교류
경영지원팀	홈페이지 관리, 연간자료집 발간, 뉴스레터, 지역공동체 사업 홍보, 아카 이브 구축 및 관리, 행정회계 업무, 지역공동체 기금운영 관리 지원

- 충북 지역공동체 지원조례 개정(안)의 중간지원센터 역할 및 기능은 다음과 같음

<표 4-16> 충북 지역공동체 지원조례 개정(안) 중간지원센터 역할 및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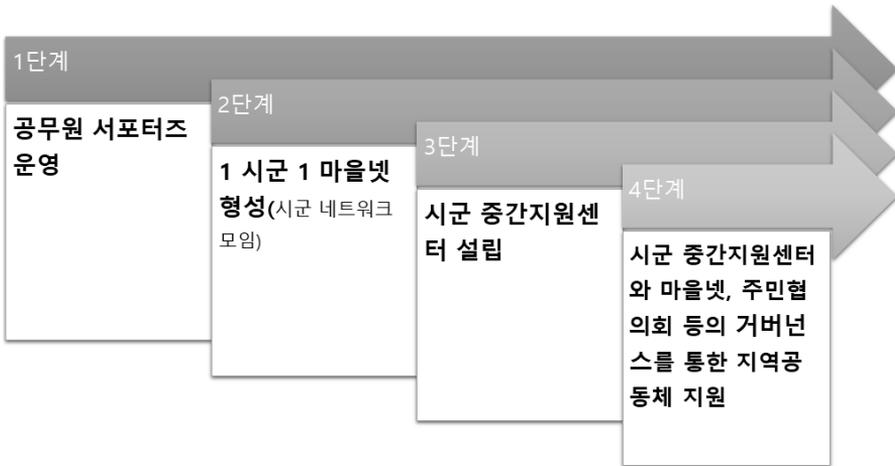
지역공동체 관련 조례상 기능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만들기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3. 주민 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4. 마을만들기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5. 마을만들기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6. 마을만들기 관련 교육·자문·연수 박람회·세미나·사례현장 국내외 견학 지원 7.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및 육성 8. 마을공동체 자원관리 9. 시·군 중간지원센터 및 네트워크 지원 10.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중간지원센터는 광역중간지원센터와 별도로 기초자치단체에서 기초중간지원센터를 설립을 원칙으로 하되, 기초중간지원센터 설립 전 시·군별 네트워크 모임인 마을넷을 형성하여 중간지원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 시·군에서는 마을주민과 지역공동체 활동가, 시·군공무원, 지역공동체관련 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유로운 네트워크 모임인 마을넷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마을 의제발굴을 비롯하여 지역의 지역공동체를 발굴·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마을넷은 현장중심의 지원시스템으로 적시적소에 주민모임을 지원하여 마을이 안정적인 구조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며, 시·군의 여건에 따라 마을네트워크가 시·군 중간지원센터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
- 마을네트워크 형성 이전에는 공무원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지역공동체 및 주민모임을 지원하며, 최종적으로 시·군은 마을넷과 중간지원센터, 주민협의회 등과 협력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

<표 4-17> 충북 지역공동체 활성화 시군 마을넷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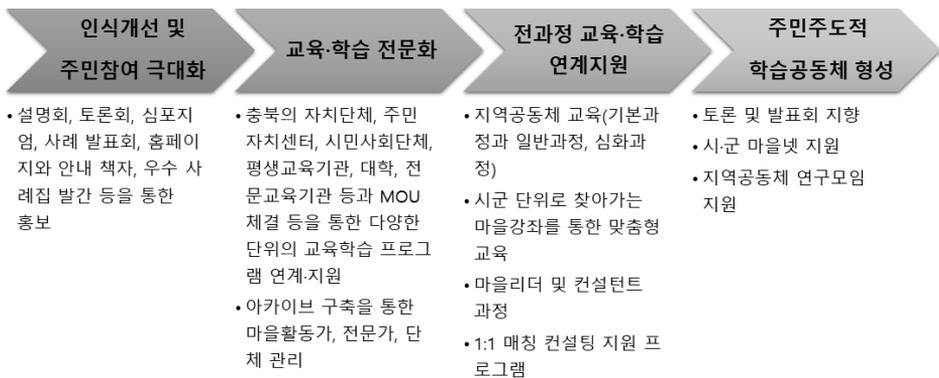
1시군 1마을넷	
구성	마을주민과 지역공동체 활동가, 시·군공무원, 지역공동체관련 단체 등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넷은 시·군의 자율적인 네트워크 모임으로 현장중심의 지원시스템 • 지역의 의제 발굴 및 지역모임, 지역공동체 발굴·지원 • 향후 마을넷을 시·군 중간지원센터로 발전 유도



<그림 4-7> 충북 기초 중간지원센터 설립 방안

4. 자치역량강화 : 주민참여 및 역량강화

- 지역공동체 활동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자립하여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동을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지역공동체의 역량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음
 - 지자체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역주민과 공동체는 상호 이해관계의 유기적 협력의 기제 하에 학습 조직화 되었을 때 상호 수평적인 소통과 협력이 발생할 수 있음
 - 충북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안에서는 주민참여와 역량강화에 초점을 두고 일회적인 교육에서 탈피하여 지역공동체의 이해를 기반으로 지역공동체의 학습·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임
- 충북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및 역량강화 방안은 ① 주민인식 개선 및 주민참여 극대화, ② 다양한 기관과의 연대를 통해 교육과 학습의 전문성 도모, ③ 모든 지원사업 전 과정에 교육과 학습프로그램 연계, ④ 일방적인 교육 프로그램 탈피하여 지역공동체를 통한 주민주도적 학습공동체 형성 등을 기본원칙으로 함



<그림 4-8> 충북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참여 및 역량강화 전략

- (인식개선 및 주민참여 극대화) 지역공동체 인식제고 및 주민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 설명회 및 토론회, 심포지엄, 사례발표회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중간지원센터 홈페이지와 안내 책자 등을 배포하여 홍보해야 할 것임

<표 4-18> 충북 주민참여 및 역량강화 방안 : 인식개선 및 주민참여 극대화

구성	내용
설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사업의 방향과 지역공동체 중요성 홍보 및 교육 • 지원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등 안내 • 각종 지원 및 협력시스템 안내
사례발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주기적인 사례발표회를 통해 지역공동체 지원사업의 성과 및 경험을 공유 • 지역공동체의 자긍심 고취 및 동기유발 • 사례발표와 마을공동체 토론회(포럼) 병행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책자 및 홍보물, 우수사례집 등 발간 배포

- (교육·학습 전문화) 중간지원센터의 인력만으로는 교육·학습을 충당하기 어려우며, 충북의 자치단체, 주민자치센터,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기관, 대학, 전문교육기관 등과 MOU 체결 등을 통해 다양한 단위에서 교육·학습 프로그램이 연계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전문가 및 마을활동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지역공동체 사업에 선정된 지역공동체에 1:1 매칭 컨설팅교육을 지원하고, 지역공동체의 여건 및 필요에 맞는 전문가 지원

<표 4-19> 충북 주민참여 및 역량강화 방안 : 교육·학습 전문화

구성	내용
MOU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의 자치단체, 주민자치센터,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기관, 대학, 전문교육기관 등과 MOU 체결 등을 통해 다양한 단위에서 교육·학습 프로그램이 연계 지원
아카이브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및 마을활동가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 충북내 지역공동체 관련 전문기관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 (전과정 교육·학습 연계지원) 교육·학습은 지역공동체 형성초기부터 지원하여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계형성을 유도함으로 그 과정에서 지역공동체 사업을 발굴하거나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며, 지역공동체 지원사업 종료이후에도 지역공동체가 자립하여 활동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지역공동체 교육은 기본과정과 일반과정, 심화과정으로 구분하며, 지역공동체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역공동체는 기본과정을 필수이수로 함
- 또한 시·군 단위로 찾아가는 마을강좌를 통해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마을리더 및 컨설턴트 과정을 마련하여 공동체 활동가를 양성함

<표 4-20> 충북 주민참여 및 역량강화 방안 : 전과정 교육·학습 연계지원

구성	내용
지역공동체교육 (전문가, 일반주민,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정기교육 실시(기본과정, 일반과정, 심화과정 등) • 지역공동체에 대한 종합적인 학습 및 교육 • 주민제안 사업 발굴 및 우수 마을공동체 사례 안내 • 지역공동체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역공동체는 지역공동체 기본과정 교육 필수 이수
마을리더 및 컨설턴트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마을 상담원, 중간지원센터 전문인력 등) 및 공동체 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과정 • 지역공동체에 대한 종합적인 학습 및 교육 • 지역공동체에 대한 실무 및 회계 포함 • 지역공동체에 대한 그 외 전문적인 학습 및 교육
1:1 매칭 컨설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공동체 지원사업에 선정된 지역공동체에 한해 사업 초기부터 1:1 매칭 전문가 및 마을활동가 지원
찾아가는 마을강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단위로 찾아가는 마을강좌를 운영하여 지역공동체에 대한 종합적인 학습 및 교육 • 주민제안 사업 발굴 및 우수 마을공동체 사례 안내

- (주민주도적 학습공동체 형성) 교육·학습의 방향은 주도적 학습이 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일방적인 교육이 아닌 토론, 발표회 등의 학습형태를 지향하며, 지역공동체 모임 및 학습공동체 형성을 지원하여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스스로 학습조직화 될 수 있도록 함

- 지역공동체 스스로 자립하고 마을의제를 수립하고 지역공동체를 위한 연구 및 공론장을 통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 연구모임을 지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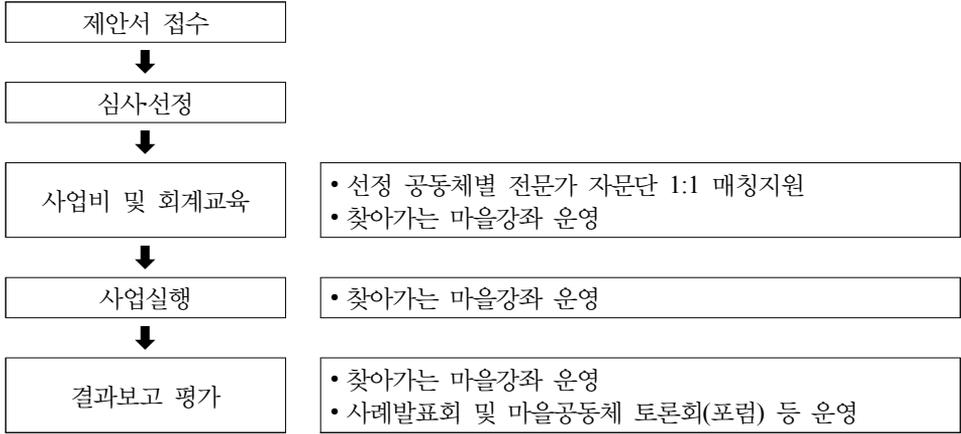
<표 4-21> 충북 주민참여 및 역량강화 방안 : 주민주도적 학습공동체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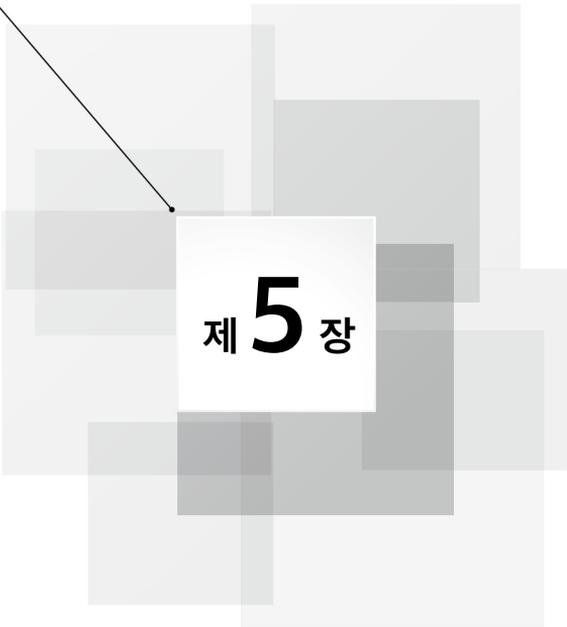
구성	내용
토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공동체 관련 토론회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지역공동체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공동체 스스로 학습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 • 지역이슈 발굴 등 마을의제 발굴을 위한 공론장 • 마을의제 수립, 실행계획 수립, 추진방법 등 주민주도의 지역공동체 활동 방법론 • 지역공동체 정책에 대한 인식향상 및 참여 유도
마을넷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의 자율적인 네트워크 모임으로 마을넷을 통해 지역의 의제 발굴 및 지역모임, 지역공동체 발굴·지원할 수 있도록 마을넷의 형성 및 운영 지원
주민모임 및 학습공동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공동체 연구 모임 및 학습공동체 형성 지원 • 마을자원 및 의제 발굴 지원

- 지역공동체 주민참여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지역공동체관련 사업 추진절차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

<표 4-22> 충북 지역공동체관련 사업 절차에 따른 주민참여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절차	내용
사업계획 수립·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공동체 사업 설명회 및 간담회 운영 • 충북 지역공동체 모니터링단 교육 지원 • 주민모임 및 학습공동체 지원 • 마을넷 지원
↓	
마을상담 및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공동체 교육 : 기본 및 일반, 심화과정 운영 • 지역공동체 마을리더 및 컨설턴트 과정 운영 • 지역공동체 토론회 및 세미나, 포럼 등 운영
↓	





제 5 장

결 론

KRILA

제 5 장

결 론

□ 연구의 목적 및 지역공동체 정책동향

- 본 연구는 충북의 지역적 특성과 가치를 반영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추진방안을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이에 충북의 특성과 주변여건에 대한 이해와 진단을 통해 지역특성 및 환경변화를 반영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또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요인 분석을 통해 요인별 로드맵을 제시하고 체계화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지역공동체 개념 및 필요성) 지역공동체는 생활기반이 되는 지역 혹은 마을이라는 물리적 공간의 범주에서 구성원들이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신뢰, 호혜성, 친밀성을 가지고 유대감과 소속감을 공유하면서 주민 스스로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최소 단위의 지역사회 집단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한 지역공동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지역공동체는 ① 사람과 공동체 가치를 복원하고 ② 지역사회 활력제공, ③ 지역사회 문제해결 주체, ④ 지역공동체 주도의 내발적 발전, ⑤ 지역공동체를 통한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 ⑥ 주민자치 실현, ⑦ 주민수요에 기반한 지역경제 발전 등에 기여하고 있음
- (지역공동체 정책 동향) 지역공동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① 지역공동체의 역량과 이해를 고려하고 장기적 관점과, ② 지역공동체의 공동체성과 공익성, 사업성, 지역성을 기준으로 지역공동체의 성장단계에 맞는 지원, ③ 농촌과 도시공동체의 차별성, 자조조직과 행정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공동체 등 공동체 형성요인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방향 설정, ④ 관에서 민을 지원하는 일방적인 방식이 아닌 지역공동체에 의한 마을의제 발굴 및 사업 추진 지향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임

- (지역공동체 관련 제도분석 : 지역공동체 지원조례) 지역공동체 사업추진의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역공동체 지원조례는 전국 평균 64%의 제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충북 기초자치단체 지원조례의 제정율은 45%로 낮은 수준을 나타냄
 - 일반적으로 지역공동체 관련 지원조례에서는 ① 기본계획(5년 단위) 및 시행계획(매년)의 수립과 ② 행정협의회 구성, ③ 전담부서 지정, ④ 주민협의회, ⑤ 마을단위 발전계획, ⑥ 위원회, ⑦ 중간지원센터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지역공동체 관련 제도분석 : 전담부서) 전담부서는 지역공동체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지역공동체 행정체계를 확립하여 지역공동체 사업을 통합하고 총괄·지원할 수 있으며, 광역 자치단체에서는 전담부서를 9개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고 있음
- (지역공동체 관련 제도분석 : 중간지원조직) 지역공동체 중간지원조직은 지역공동체 사업을 수행하는 일반주민에게 접근방법이나 추진방법, 사업 수행 중 전문적인 안내자 혹은 중간 매개자 역할을 하며, 네트워크 형성지원, 필요자원 코디네이터, 주민역량강화 등 지역공동체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수행하고 있음

□ 충청도 지역공동체 현황 및 타 시·도 지원제도

- (충북 현황 및 여건) 충북은 3개 시와 8개 군, 4개의 일반구로 이루어진 국토의 중심지로써 고령화·저출산 위기로 핵심생산가능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권역간·지역간 격차문제의 심화, 높은 도시 쇠퇴율 등을 보이고 있음
 - 반면 대도시권과 근접하고 청정한 환경 등으로 이주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해결방안 모색 필요
- (충북 지역공동체 현황) 충북 지역공동체의 수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자생적 지역공동체에 비해 중앙부처 지원을 받는 지역공동체 수의 비율이 월등히 높음

- 또한 충북 지역공동체는 농촌관련 사업과 생활밀착형 사업 등을 선호하고 있어,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 주민과 공동체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업을 발굴·확산할 필요가 있음
- (충북 지역공동체 관련 제도) 충북은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2016년에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행정국에 민간협력 공동체과를 신설하여 공동체정책팀, 민간협력팀, 경제공동체팀, 자원봉사팀 등으로 구분하여 지역공동체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충북 11개 시·군에는 지역공동체 관련 전담부서는 없으나, 충주시와 보은군에서 지역공동체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에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농업정책과 혹은 건축과, 행정과, 경제과 등에서 사업별로 추진하고 있음
- (서울시 지역공동체관련 제도 및 지원체계) 서울은 협력적인 네트워크 체계 하에 지역공동체의 자율적 주도방식을 채택하여 종합적인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지역공동체 형성정도 및 역량특성에 따른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지역공동체 사업의 주민제안제 원칙, 주민 네트워크 모임 활성화, 주민 주도 마을계획수립지원 등과 민·관 협치기구로서 전체 25개 자치구에 마을넷과 마을협력소, 마을사업지기 운영 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25개구 중간지원센터(혹은 마을생태계 지원단)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지원하고 있음
- (경기도 지역공동체관련 제도 및 지원체계) 경기도는 시·군단위 중간지원조직육성을 위해 인큐베이터를 파견·지원하고 있으며, 주민제안공모사업을 운영과 마을계획/마을의제 수립지원, 전략의제 지원, 시·군 단위 네트워크 사업 등을 진행하고 마을활동가에 대한 지원과 인력풀을 구축·지원하고 있음
- (전라남도 지역공동체관련 제도 및 지원체계) 전라남도는 민간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심사하는 주민참여제의 도입과 지역공동체 형성초기 및 역량 등을 기준으로 단계별 지원하며, 마을활동가를 모집·양성하여 지역공동체 지원사업의 씨앗단계부터 참여시켜 지속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있음

- (충북 여건 및 지역공동체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충북 현황 및 여건을 분석하고, 지역공동체 현황을 바탕으로 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Opportunities(기회), Threats(위협)의 4가지 상황별, 요인별로 분석하여 전략을 수집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5-1> 충북 여건 및 지역공동체 SWOT 분석을 통한 전략 : <표 3-34>와 동일

SO		S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와 사회적경제) 지역공동체 프로그램 개발·보급→지역주민 관심과 참여 향상 • 청정환경과 다양한 자원 활용 극대화→ 차별화된 지역공동체 사업 육성→지역공동체가 주도하는 내발적 발전 도모 •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주민의 이해와 참여 촉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간 역할분담제고 및 지원체계 조성 → 지역공동체+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 법적 기반 정비,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원기관 확립, 마을활동가 육성→지역문제해결에 원동력 기반 조성 • 지역주민·지역공동체와 협력한 지역 인적·물적 자원 최대한 활용→지역공동체의 참여와 의견 적극 반영한 지역공동체 지원체계 플랫폼 구축
⇕		⇕
OT		W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과 공동체에 의한 마을조사 및 마을의제를 발굴→지역 및 지역공동체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공무원 인식개선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지역공동체 중앙정부 사업을 적극 홍보·활용 • 단기적 지원사업에서 탈피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시각의 접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과 지역공동체의 참여 기반의 지역공동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 거버넌스 구축→민·관 협치를 위한 체계마련 • 지역공동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확립→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 도모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식개선 교육 및 설명회→지역공동체 인식 제고→지역주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모색

- (지역공동체관련 제도 및 지원체계 시사점)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의 기본구성요소는 ① 지역공동체 관련 조례 제정, ② 광역집행기관으로써 전담부서 신설 및 역할 제고, ③ 기초집행기관으로서 자치 시·군·구 관계부서(전담부서), ④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 ⑤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 ⑥ 민·관 협치기구 등임

- 충북은 지역간 편차가 매우 크며, 지역공동체의 특성 및 형성정도도 매우 상이한 특성을 고려할 때 단계별 맞춤형 지원방식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며, 주민주도 활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프로그램과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지원 등이 요구됨

□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

-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방안의 기본방향) 충북의 지역적 특성과 지역공동체 여건을 반영한 충북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공동체 생태계 기반을 조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① 법·제도적 기반마련, ② 지원체계의 체계화, ③ 협력적 거버넌스, ④ 자치역량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지역공동체 지원사업을 접근해야 할 것임
- (법·제도적 기반마련 : 조례 제·개정) 충북 지역공동체 사업 추진의 행·재정적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하며, 충북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며,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조례를 보완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할 것임
- 또한 충북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에서 기본계획과 전담부서,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사업지원, 지원신청, 평가 및 포상,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 구성, 중간지원센터 등을 개정하고 주민협의회와 마을발전계획,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사업 선정 등을 신설할 것을 제안함
- (지원체계의 체계화 : 충북 지역공동체 지원체계 구축) 충북 지역공동체 지원체계는 지역공동체가 주민주도적 지역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하게 유지·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를 위한 추진방향은 ① 협력적 네트워크, ② 주민참여 여건 조성, ③ 사업 전과정 상담·컨설팅 및 교육·학습 지원, ④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⑤ 차별화된 공모방식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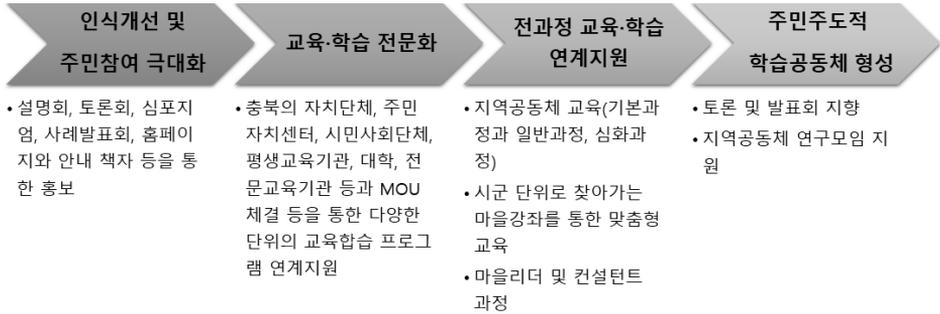
<그림 5-1> 충북 지역공동체 지원체계 : <그림 4-3>과 동일

- (협력적 거버넌스 : 중간지원조직 설립 및 역할제고) 충북 중간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전략은 ① 주민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주민주도 촉진, ② 거버넌스 체계 확립, ③ 지역 맞춤형 전문성 제고를 주요 전략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민간 주도형태(위탁방식)의 조직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중간지원센터는 지역사회와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을 중심으로 교육지원팀과 연구지원팀, 사업지원팀, 경영지원팀으로 구성하고 자문위원회를 둠
- 충북 중간지원센터는 시·군중간지원센터의 설립을 지원하며, 시·군중간지원센터 설립전 시·군별 네트워크 모임으로 마을넷 등을 형성하여 중간지원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며, 마을넷이 시·군 중간지원센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그림 5-2> 충북 지역공동체 중간지원센터 전략 : <그림 4-5>와 동일

- (자치역량 강화 : 주민참여 및 역량강화) 충북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및 역량강화 방안은 ① 주민인식개선 및 주민참여 극대화, ② 다양한 기관과의 연대를 통해 교육과 학습의 전문성 도모, ③ 모든 지원사업 전 과정에 교육과 학습프로그램 연계, ④ 일방적인 교육 프로그램 탈피하여 지역공동체를 통한 주민주도적 학습공동체 형성 등을 기본원칙으로 함



<그림 5-3> 충북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참여 및 역량강화 전략 : <그림 4-8>과 동일

- 충청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은 지역공동체가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자립·발전하여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내실있는 정책추진이 시급함
 - 이에 지역공동체 활동의 근거가 되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며, 지역공동체의 교육지원 등을 통해 학습공동체로의 발전을 통해 지역공동체에 의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충청도내 지역공동체 전담부서 공무원 등의 이해관계자들의 인식개선과 교육지원을 통해 주민주도적 지역공동체 형성 및 발전을 위한 내실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단기적 성과에서 장기적 관점으로 전환하여 행정과 지역공동체, 지역사회, 전문가, 중간지원센터 등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소통, 상생을 바탕으로 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수준과 역량에 따른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참고문헌】

- 강원도교육청, 「궁금해요?강원도형 마을교육 공동체!」
- 김영림 외(2014), 「우리마을 돌아보기, 2014 마을공동체 심층 사례집」,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제 2014-02-005호
- 김주원(2016), 「마을공동체역량진단과 지원체계 구축방안」, 강원발전연구원, 연구보고 16-26, 2016
- 경기도(2014), 「경기도 따복공동체 개념 및 따복공동체 추진을 위한 향후 활동계획」, 경기도 기획조정실 따복공동체지원단, 2014.10.12.
- 경기도(2017), 「2017 주요업무계획 보고」,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단, 2017.2.14
- 남원석(2012),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방안연구」, 경기개발연구원
- 농림축산식품부(2014), 「농촌공동체 활성화방안 온라인 정책포럼 추진계획」,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2014.10
- 류태희(2016),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의 역할과 활동」,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2016.05.27
- 민현정, 「광주시 마을공동체 형성과 강화방안 연구」, 광주발전연구원
- 부산광역시, 「2014년 마을만들기 활성화계획」, 부산광역시 창조도시기획과
- 변혜선(2016), 「충청북도 귀농귀촌 현황을 고려한 정책제안」, 충북연구원, 2016
- 서울시(2012),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2012
- 서울시(2013), 「서울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매뉴얼」, 2013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2017), 「서울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의 마을형 지원체계 연구」,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2017), 「서울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백서 (2012-2017)」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2017), 「자치구 마을센터 업무매뉴얼,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제2017-02-004호
- 서울시(2018), 「2018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 서울혁신기획관, 2018.1.

- 서울시(2018),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 인천발전연구원(2013),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기본계획수립 연구」, 2013.12
- 임경수(2009), 「우리나라 마을만들기 운동의 현황과 과제」,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발표자료집」, 강릉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macul.or.kr)
- 오수길(2015), 「지역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현안과제 해결방안 연구」, 환경부, 2015.05
- 우장명(2010), 「충북 농촌마을개발사업의 실태와 발전방안」, 충북개발연구원, 2010
- 장우연, 「주민과 함께 만드는 지도-커뮤니티 맵핑」, 희망제작소
- 전대욱·최인수·박승규(2012),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전략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전대욱(2018), 「지역공동체 활성화 포럼(2018.5.17.) 발제자료」
- 전라남도(2016), 「2016,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안)」
- 전라남도(2016), 「따복공동체 융복합사업 시행계획」
- 정읍시(2014), 「정읍시 공동체육성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연구」, 2014.12
- 최용환(2017), 「지방소멸시대 충북의 대응 전략과제」, 충북연구원, 2017
- 최은희(2017), 「충북 사회통합지표 분석」, 충북연구원, 2017
- 함창모 외(2016), 「충청북도 산업발전 전략」, 충북연구원, 2016
- 함창모(2010), 「충북지역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활성화방안」, 충북 Brief, No.26, 충북개발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 2010.07.02.
- 충청북도자치연수원, 「2017년 공무원교육훈련계획」
- 충청북도(2018),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 충북 통계연보(2016)
- 최병두(2007), 「지역공동체와 지역정체성을 통한 지역발전 방안과 과제」, 지역문화발전과 지역공동체 형성전략 모색 토론회」, 국토연구원.
- 최인수, 전대욱(2012), 「지역공동체 마을만들기 정책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최인수 외(2014),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재정 지원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최인수 외(2015), 「지역공동체와 리빙랩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체계 도입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5.09
- 통계청(2017), 「장래인구 통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0), 농어촌의 과소화마을 실태와 정책과제
- 한국지역진흥재단(2016), 「지역공동체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연구」, 2016.10
- 행정안전부(2017), 「지역공동체의 이해와 활성화」, 2017.12
- <http://ddabok.or.kr/>, 경기도 파북공동체지원센터
- <http://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city.go.kr>,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도시쇠퇴현황(2017.4.28.)
- <http://www.jnmaeul.kr>,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 <http://www.koreamaeul.org>,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 <http://www.seoulmaeul.org>,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부록 1] 광역자치단체 지역공동체관련 조례 의 사업 및 지원에 대한 규정현황

지방자치단체 지역공동체 관련 조례 구성현황

지자체	조례명	사업 및 지원 규정
서울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마을기업 육성 3. 환경·경관의 보전 및 개선 4.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 5.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6.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지원 7.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8. 마을학교 운영 9.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연구·조사 10.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직업체험 및 문화체험 등 각종 교육과 문화 활동 지원 사업
경기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2. 공동체에 기반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3. 파복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활동가 육성 등 교육사업 4. 생활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 5. 마을경관·생태환경의 보전 및 개선사업 6. 주민의 주거 및 복지증진 사업 7. 마을의 문화·예술 및 전통·역사의 계승 보전 사업 등 지역특성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군 파복공동체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2. 민간단체 및 기관의 네트워크 활성화, 전문가·활동가 파견 및 재능기부자의 발굴·육성 3. 파복공동체 관련 연구·조사·교육 등 4. 자원 관리 및 기록 보관 5. 중앙부처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 사업의 유치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인천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 3. 마을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 육성 4.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사업 5. 마을 문화·예술 및 전통의 계승발전 사업 6. 마을일꾼 육성 및 활동지원과 교육사업 7.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 사업

지자체	조례명	사업 및 지원 규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8.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사업 9. 마을공동시설 개선사업 10.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강원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마을기업 육성 3.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4.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 5.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6.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7.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8.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교육·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9. 마을공동체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연구·조사 10.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대전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2.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마을 순환 경제 활성화 사업 3.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가 육성 등 교육사업 4. 생활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사업 5. 마을경관·생태환경의 보전 및 개선사업 6. 주민의 주거 및 복지증진사업 7. 지역공동체와 관련된 연구·조사 8. 그 밖에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충북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지역 환경 보전 및 개선 3.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사업 4. 마을공동체 복지 증진 5. 지역 문화예술 및 역사 보전 6.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교육·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및 교육·연구조사 7.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충남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계획과 연도별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교육과 홍보, 자문 등 지원사업 3. 연구, 조사사업 및 시범적으로 운영이 필요한 사업 4. 관계 기관·단체에 대한 지원사업 5. 일자리 창출 사업 및 복리증진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	조례명	사업 및 지원 규정
부산	부산광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2. 마을의 역사와 문화 보존 등 특성화 사업 3.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쾌적한 주거환경 및 마을공간 조성사업 5. 주민 교류와 교육을 통한 마을정체성 강화사업 6.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구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2. 마을의 복지증진 및 마을환경 개선, 마을공간 조성사업 3.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의 마을공동체 육성·지원사업 4. 마을의 문화예술 및 역사보존 등 특성화사업 5.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6.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교육, 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7. 마을공동체 자원발굴과 관련된 교육, 연구, 조사 8.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울산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3. 마을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문화나눔 육성 4.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5.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공동협력 활동 6.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7.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8.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관광자원 시설 보전을 위한 지원 9.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교육·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10. 마을공동체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연구·조사 11. 문화나눔 활동에 필요한 결연·후원, 공간의 확보 및 소요되는 실비에 대한 지원 12.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광주	광주광역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2. 마을과 관련된 정책 및 자원 연구·조사 3.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교육, 컨설팅 및 주민역량 강화 4. 마을만들기 민·관 네트워크 구축 5. 마을만들기 관련 박람회·세미나 등 행사 개최 6. 마을 공동 공간 조성 7. 자치구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지원 8. 마을 환경·경관 개선 9. 마을 인권, 복지, 보육, 건강 등 증진

지자체	조례명	사업 및 지원 규정
		10. 마을 문화예술 및 교육진흥 11. 마을기업의 육성 및 활성화 12. 마을 모델 발굴 사업 13. 주민 제안 마을 활성화 사업 14. 그 밖에 마을만들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전북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1. 제5조의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과 제6조의 연도별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연구, 조사 사업 및 시범적으로 운영이 필요한 사업 3.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일자리 창출 운용 사업 4.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단체·기관의 지원 사업 5.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일자리 창출 운용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도 마을만들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1.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시·군 중간지원조직 구축 및 활성화 2. 제8조의 마을단위 발전계획에 의한 주민 소득 확대, 문화 활동, 복지 증진, 관광 활성화, 도시 재생, 공동 시설 조성 및 보수, 정보화 기반 구축 등 3. 그 밖에 별표에 따른 도지사가 마을만들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전남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3.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4. 마을의 복지증진 및 마을환경 개선, 마을공간 조성사업 5. 마을의 문화예술 및 역사보존 등 특성화사업 6.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7.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교육, 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8. 마을공동체 자원발굴과 관련된 교육, 연구, 조사 9.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1.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3. 마을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문화나눔 육성 4.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5.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공동협력 활동 6.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7.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8.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관광자원 시설 보전을 위한 지원

지자체	조례명	사업 및 지원 규정
		9. 마을공동체 만들기과 관련된 교육·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10. 마을공동체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연구·조사 11. 문화나눔 활동에 필요한 결연·후원, 공간의 확보 및 소요되는 실비에 대한 지원 12.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1.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3.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4. 마을자원을 활용한 언론홍보·연구 등의 공동협력사업 5. 마을의 문화·복지 증진 6. 마을만들기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지원 7. 마을의 문화·예술 및 전통의 계승발전 사업 8. 마을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9. 마을만들기 관련 교육·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10.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